

# 第1章 前 文

## 序 文

- 1.1 오늘날 인류의 생활기반인 지구는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인류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제도적 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는 지구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어, 후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바, 『의제 21』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작성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임
- 1.2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계인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명제임. 인류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현세대의 환경오염 피해와 고통 뿐 만이 아니라 장래 우리 후손의 생존기반 까지도 파괴 시킨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함
- 1.3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음. 『의제 21』 제37장에서 국가별 『의제 21』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지구환경보전의 의지를 담은 본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게 된 것임
- 1.4 『의제 21』 실천계획은 향후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의제 21』 실천계획은 『의제 21』 뿐만 아니라 리우선언에서 확인된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제원칙과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92년 6월 5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 1.5 『의제 21』 실천계획은 『의제 21』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서임. 이러한 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의제 21』에서 부과된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임

### 『議題 21』 實踐計劃의 基本方向

- 1.6 『의제 21』 실천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한 계획서임
- 1.7 과도한 자연이용, 산업발전, 인구증가 등에 의한 환경파괴의 심화는 인류의 생존기반인 자연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불가능하게 함. 이러한 환경파괴는 경제활동의 증대와 더불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환경요인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결함과 미비로 말미암아 가중되고 있음
- 1.8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은 세계경제 체제내에서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함
- 1.9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확대·강화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병행 추진 할 것임

- 1.10 향후 경제·사회정책의 모든 분야에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환경적 고려를 각 분야별 계획에서 하나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임
  
- 1.11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차원의 협력(Global Partnership)이 요청됨.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는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의제 21』과 국제환경협약의 충실한 국내 이행은 물론, 개도국의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 1.12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비용은 역사적 책임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할당되어야 함
  
- 1.13 국내환경문제는 지구환경문제의 일부분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국내환경에 대한 정책은 그것이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사국에 일임되어야 할 것임

## 第2章 開途國의 持續可能한 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國際協力

### 序 文

2.1 본 장의 계획분야는 ①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 (시장접근 중심) ② 무역과 환경의 조화(주로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관련된 국제적 원칙) ③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④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경제정책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장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실천하는 것임

2.2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GATT/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이 중요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재정적 압박의 해소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는 개도국제품의 선진국 시장접근 개선 등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計 劃 分 野

#### A.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개발 추진

배 경
-----

2.3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내경제정책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2.4 우리나라 정부는 상품, 서비스에 관한 무역자유화 일정의 단축 등 개방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개방화는 우리나라와 외국에 공동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개방과 선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6년 OECD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목표 및 정책수단

2.5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수입자유화와 함께 관세인하를 추진하여 왔음.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무역자유화율이 1995년 1월에는 99.0%까지 확대되었고, 평균관세율도 1989년의 12.7%에서 1994년에는 7.9%로 크게 인하되었음

2.6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 수출위주의 산업정책을 펴왔으나, 90년대부터는 각종 산업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철폐하였음.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수출준비금제도, 수출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에 의한 보조금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었음. 이와 더불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직접세의 감면, 공제, 이연제도 등 조세지원제도는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유예기간중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2.7 우리나라 정부는 UR 협정의외에도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에 대한 수입자유화와 비관세장벽 철폐, 관세인하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시장접근을 크게 개선하였음.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장개방의 결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향후로도 개도국제품의 시장접근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임

## B. 무역과 환경의 조화

### 배 경

- 2.8 오늘날 국제무역은 인류 경제활동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각국의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문제와 관계가 있는 무역조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환경과 무역관계의 여러 유형과 성격, 이에 대한 정책적 문제 등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국제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9 우리나라는 WTO라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기구가 출범한 것을 환영하며, WTO가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함
- 2.10 현재 WTO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우리 정부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될 무역-환경관련 10개 의제를 부처별로 할당하여 분석 및 정책연구를 행하고 있음

### 목 표

- 2.11 각국의 국내환경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는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새로운 환경요건을 부과할 경우라도 이러한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이 되거나 위장된 보호무역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함

2.12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무차별성, 최소무역제한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무역과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규범은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그리고 각국의 상이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립되어야 할 것임

정책수단

2.13 국민의 환경욕구 증대에 따라 국내의 환경규제와 수입품에 대한 환경요건을 강화하고 무역-환경문제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임. 주요내용은 WTO의 논의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 ② 환경부과금 및 세금, 포장 및 표시 등 상품요건과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 ③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등으로서 WTO 등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될 것임

C.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배 경

2.14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민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임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신규 및 추가재원의 공여가 검토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함

2.15 우리나라는 1967년 제정된 과학기술촉진법에 따라 대 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하여 1972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케냐 등에 농업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977년부터 외국인 교육생을 초청하고 개도국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음

- 2.16 1986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1987년에 개도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1991년에는 기술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치하여 환경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2.17 우리나라는 재정능력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경제협력을 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임
- 2.18 우리나라는 지역개발은행 중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가입하였으며,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을 추진중임

목 표
-----

- 2.19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의 일원이나, 향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담능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대 개도국 지원을 행할 것임.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후발개도국에 전수할 계획임

정책수단
------

- 2.20 우리정부는 향후 정부의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국제개발 협회 기금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2.21 우리나라는 1994. 5. 11 제2기 지구환경금융(GEF)에 가입하였으며, 1995~1997년 기간중 560만달러를 출연할 예정임

2.22 우리나라는 이와 더불어 각종 국제환경협약과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약속한 바에 따라 납부할 예정임

2.23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지역환경협력을 위하여 월경성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체계의 수립과 함께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D.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경제정책

배 경
-----

2.2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경제정책의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에 필요한 자원확보와 확보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이 매우 중요함

2.25 우리나라는 국내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환경재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환경재원의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되고 있음

2.26 우리나라는 환경보전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환경재원 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을 도입·실시하고 있음. 현재 실시중인 경제적 수단은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등이 있으며,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임

## 목 표

2.27 지금까지의 수출주도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한 경제정책을 추진함

## 정책수단

2.28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경제개발계획 (제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 각종 개발정책 수립시 환경요인의 고려 ㉡ 환경기술 개발의 적극 추진과 환경산업 육성 ㉢ 환경기반시설의 대폭 적인 확충과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 강화 ㉣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 등임

2.29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경험을 후발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개발연찬사업 등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공무원을 초청,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대하여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자문을 행하여 오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로도 후발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거시경제운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第3章 貧困退治

### 序 文

3.1 소위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절대빈곤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였음. 절대빈곤율은 1965년 40.9%에서 1995년 현재 전국민의 3.9% 임

3.2 이들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정부차원의 빈곤대책,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단체의 빈곤대책 등임

#### (a) 정부차원의 빈곤대책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교육비지원과 함께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형주택공급, 전세금 융자, 장학금제공 등 각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b) 빈곤퇴치를 위한 민간사업

빈곤퇴치와 관련한 사업들이 민간기업의 복지재단, 종교단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정부의 사업규모에 비해 크게 미약함

#### (c)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사업

지역수준에서 취로사업, 영세민 주택건설, 직업훈련 및 알선 등 각종사업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

3.3 다양한 빈곤대책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및 민간단체 등에 의해 전개되고 있으나 절대빈곤을 퇴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절대빈곤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보호수준이 미흡하고 자립지원대책의 효율성이 낮음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문적 개별적인 지원은 미흡함

3.4 이와같은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국가적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빈곤 퇴치 정책이 부분적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임.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빈곤대책(직업훈련, 교육보호)과 환경보전을 고려한 정책(취로사업)이 있음

3.5 따라서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목표는 경제성장,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기적으로 절대빈곤 인구를 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절대빈곤의 퇴치 및 상대빈곤 감소에 중점을 둘 것임

-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방향속에서 복지수요의 전망에 대응한 빈곤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95년)에 따른 주민의 복지욕구 분출에 대비한 지역단위의 빈곤대책을 활성화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심화될 상대적 빈곤 해소대책도 수립할 것임

## 計 劃 分 野

### A. 저소득층 빈곤대책

배 경
-----

- 3.6 가구원 1인당 월 평균소득 20만원이하, 가구재산 2,5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는 전국민의 3.9%에 해당하는 176만명(59.9만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전 국민의 4.4%인 199만명에게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음
- 3.7 현행 공적부조제도의 프로그램들은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애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취로사업 등이 있음
- (a) 거택보호대상자 31만명과 시설보호대상자 8만명에게는 '95년 월 1인당 각각 78천원, 72천원 상당의 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있음
- (b)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보호 및 직업훈련은 “저소득 → 저학력 및 저기능 → 저소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장기저리(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 연리 6%)의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3.8 한편 공적부조는 중앙정부의 주요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취로사업, 생계보조, 학비지원, 영세민 주택개량 지원등 각종 빈곤대책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보장 및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3.9 이러한 공적부조제도는 공적부조의 기본원리인 최저생활보장 원칙에 따라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지원등의 자활프로그램들을 하나 또는 두가지 이상 중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조장하는 것임

목 표

3.10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및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함

정책수단

3.11 보호수준의 향상 및 보충급여제도의 도입

(a) 보호수준의 향상 : 현재 최저생계비의 약 70%에 머물고 있는 보호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98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함

(b) 보충급여제도의 도입 : 최저생계비와 소득간의 차액만을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제도 도입

3.12 주거보호제도의 도입

저소득층의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주거보조비 제도 도입

### 3.13 생활보호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체계의 확립

(a) 생활보호사업 평가체계의 확립

(b) 생활보호사업 사후관리체계의 확립

### 3.14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

(a)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제 도입

(b) 의료보호지정기관 확대

(c)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고가장비 급여확대

## 第4章 消費形態의 轉換

### 序 文

- 4.1 소비형태의 전환에 관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4.2 소비형태의 전환은 비환경친화적 소비형태로부터 지속가능한 소비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소비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소비·폐기의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오염물질의 배출, 자연자원 및 유해물질의 사용을 극소화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라고 정의할 수 있음. 즉 소비형태의 전환은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4.3 우리나라는 최근 소비 및 생산형태가 다생산, 다소비, 폐기물다량발생의 선진국형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각 경제주체의 자원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대책을 추진중임

### 計 劃 分 野

#### A. 에너지이용 합리화

배 경
-----

- 4.4 1980년대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에너지가격과 소득증대에 따른 편익

성의 추구로 1989년부터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상회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 수송, 가정 등 주요 에너지 소비분야에 대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 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목 표

- 4.5 산업구조 및 수송체계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편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하여 조기에 실용화

## 정책수단

- 4.6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체를 에너지 다소비업장으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투자를 유도할 계획임. 업종별 에너지 설비개발 및 보급을 추진함
- 4.7 에너지절약형 승용차 개발을 지원하고, 소형차 보급확대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강화하며, 도시계획과 연계한 수송체계확립을 통하여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함
- 4.8 가정부문의 불필요한 냉·난방 에너지이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토록 유도

## B. 수자원의 보호

## 배 경

4.9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 및 공업용수 수요는 약 290억톤, 공급은 약 310억톤 이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자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음

## 목 표

4.10 댐건설, 지하수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와 더불어 낭비적인 수요의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정책수단

4.11 용수가격을 현실화하고 절수형 용수기기를 확대 보급하며 범국민적인 절수운동을 전개함

4.12 중수도제도를 활성화하고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함

### C.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 촉진

## 배 경

4.13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여 1970년대부터 폐기물처리문제가 부각되었음.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86년에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 1993년에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목 표

4.14 폐기물 발생의 감량화와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유도함

## 정책수단

4.15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케하는 쓰레기종량제를 '95.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음. 앞으로 쓰레기봉투의 재질, 수거방법 등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함

4.16 제품의 생산공정 개선 및 발생된 폐기물의 체계적인 재활용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함

4.17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의 효율을 단계적·차등적으로 현실화하고 대상품목을 합리화함

4.18 환경마크의 지정요건을 개선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함

4.19 종량제 실시에 따라 급증한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 주력함

## 第5章 動態的 人口問題와 持續可能性

### 序 文

- 5.1 우리나라는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1960년에 3.0퍼센트에 달하던 인구증가율이 1990년에는 0.93퍼센트로 하락하였음. 이러한 인구증가율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인구가 5,060만명이 되는 2021년에는 인구성장이 정지될 것으로 전망됨
- 5.2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 균형상태에 진입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0여년간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구 대치수준 이하의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노령화, 노동력공급 둔화, 학령인구 감소 등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음
- 5.3 유소년인구의 감소, 노년인구의 절대수 및 비율의 증가, 생산연령층 인구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각종 사회보험의 재정부담 증가, 노동력 공급기반의 약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투자의 재조정, 남아선호관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 등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됨
- 5.4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함께 도시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지역의 인구 밀집 현상이 심화되어 이들 지역에서 교통체증, 주택부족, 환경오염, 부동산투기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반대로 농촌지역은 탈농현상의 심화로 인해 점차 공동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5.5 이에 따라 각종 인구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구와 환경문제, 그리고 개발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5.6 인구동태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계획분야는 다음과 같음.

(a) 인구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간의 연계성에 대한 지식의 개발 및 보급

(b) 인구변화를 고려한 환경 및 개발의 통합정책 수립

(c) 지역단위에서의 인구변화를 고려한 환경 및 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 計 劃 分 野

A. 인구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간의 연계성에 대한 지식의 개발 및 보급

배 경
-----

5.7 인구의 변화는 각종 부존자원의 활용과 에너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중의 하나임. 전체적인 인구 규모의 변화 뿐만 아니라 특정 도시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은 해당지역에서의 주택난, 교통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게 됨. 이와 같이 인구의 규모나 특성, 분포 등의 변화

는 환경변화, 개발문제 등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나 환경, 개발중 어느 하나만을 고려한 정책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물론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됨

5.8 인구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수립자들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인구정책, 환경정책, 여성정책 등 각 분야를 통합한 종합적인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각 해당분야의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5.9 아울러, 연구보고서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입안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의 결과가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저널이나 대중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인구와 환경문제, 그리고 개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목 표
-----

5.10 인구,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이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활동의 강화, 지역별 혹은 국가간의 정보교환 증진을 도모함

A) 연구 프로그램의 강화

- 5.11 인구, 환경 및 개발에 관한 폭넓은 사회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문 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각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들 사이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강화함. 여기에는 관련 민간연구기관 및 대학,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 관련 기업들의 지원을 유도함
- 5.12 인구의 규모, 구조, 특성의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복지, 환경, 문화, 가족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영향을 통합한 이론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정책효과 의 극대화는 물론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시킴
- 5.13 노동력 수급, 주택수요, 교통, 생활환경, 사회복지 등은 인구변화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인 만큼, 이러한 인구변화의 영향을 감안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해당분야의 관련 연구기관들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시킴
- 5.14 대량생산과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와 같은 경제체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과 이를 통한 환경의 보전이 선결과제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자원은 물론, 주어진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도 중점을 둘 것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연령층 인구의 증가율이 저하되면서 여성, 노인 등 유희인력의 활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5.15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구문제는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취업증대를 위한 연구를 더욱 강화함
- 5.16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인구과밀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가장 큰 인구문제중의 하나임. 이로 인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택, 교통 등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생활 정주권으로서의 개발이 크게 뒤떨어지는 실정임. 이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해 인구분포와 관련한 생태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인 연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시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부의 도시관리 능력 제고, 농촌개발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둠
- 5.17 복지의 증진은 복지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연구도 주요 연구분야의 하나로 추진함

#### B) 정보관리 및 공공 환경의식의 고취

- 5.18 인구 및 환경 관련 정보와 통계를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자료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여 전문적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결정자나 일반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용이하게 함
- 5.19 정책수립자와 전문 연구기관들 사이에 연구보고서 교류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반영도와 활용도를 제고함. 특히 인구, 환경, 개발문제 등

각 분야별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간의 교류를 다원화하고 민간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함

5.20 인구문제나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의 결과를 각종 저널이나 세미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보급함

### C) 연구능력의 제고와 공동협력의 강화

5.21 국가단위에서의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시키고 국가간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나 관련국들간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정보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함

5.22 유엔인구활동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훈련에 인력을 파견·훈련시키는 등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함

5.2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 수립, 추진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능력을 증진시킴

## B. 인구변화를 고려한 환경 및 개발의 통합정책 수립

배 경
-----

5.24 인구의 변화는 소비패턴, 생산, 생활양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이러한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제 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이나 신경

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미 인구동태의 변화가 개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인구변화 요인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5.25 인구의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은 물론, 이와 동시에 인구의 변화 그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5.26 특히 인구분포와 관련하여, 이미 인구과밀 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5.27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한 지역 생활권역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5.28 또한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생산년령층 인구증가율의 둔화, 핵가족화의 진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노인복지 부담의 증가, 노동력 공급 감소, 여성의 역할 변화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각종 개발계획 및 사회·경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목 표
-----

5.29 인구변화의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책수단

### A)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의 평가

- 5.30 인구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인구규모와 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택, 환경, 자원활용 등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및 평가활동을 강화함
- 5.31 인구이동의 원인, 그리고 도시인구 집중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강화함
- 5.32 정책 또는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인구적인 영향의 평가를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시함. 사업의 진행과정에서의 근로인력과 가족의 유입, 그리고 개발사업의 사후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 등을 평가하고, 개발사업의 주체로 하여금 생활환경과 시설을 조성토록 유도함
- 5.33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별로 무분별한 개발 경쟁을 지양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단기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
- 5.34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인구의 변화는 향후의 지속적인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취약계층 인구의 변화추이, 발생원인,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안에 대해 연구를 강화함

## B) 인구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와 정보망의 구축

- 5.35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인구자료를 환경관련 자료와 통합하여 지역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환경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5.36 현재 추진중인 국가행정전산망이나 초고속정보망을 활용하여 지역별 인구 및 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국민들에 대한 정보의 보급을 촉진함

## C) 인구요인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

- 5.37 우리나라의 인구노령화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절대적인 복지 부담의 증가와 아울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내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로 공공 부문의 노인복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버산업 등의 성장과 소비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며, 생산연령층 인구 증가율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둔화도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을 감안한 각종 개발계획, 인력양성 및 활용 계획 등의 수립을 강화함
- 5.38 젊은층의 이농향도(離農向都 : rural-to-urban)) 인구이동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점차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서울 등 수도권지역과 대도시지역에서는 인구과밀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향후의 인구분산

정책은 수도권에서는 집중억제를 위한 행정규제의 내실화와 인구의 분산 촉진을 위한 유인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생활환경의 개선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은 물론 수도권 인구의 자연적 분산을 촉진함

5.39 공단개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과 환경 관련요인을 사전에 고려하여 개발지역 선정에 반영하는 한편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함. 농촌지역을 생활정주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추진함

5.40 소년소녀가장 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복지 및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함. 출산력의 감소,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등 인구·사회적인 변화는 여성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음.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등 유희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취업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강화함

5.41 이러한 정책들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분야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환경, 개발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

C. 지역단위에서의 인구변화를 고려한 환경 및 개발 프로그램 추진

배 경
-----

5.42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인구, 환경, 개발과 관련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강조되고 있음

5.43 지역내의 인구 규모, 연령구조, 특성 등 인구학적인 여건과 산업기반, 사회간접자본, 생활여건 등 개발수준,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5.44 이러한 정책의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내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능력의 증진이 요구되고 있음

목 표

5.45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을 통해 지역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함

정책수단

5.46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기반, 사회간접시설 및 환경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부문별 정책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5.47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내의 여성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와, 지역사회 지도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단위에서의 학술활동, 세미나, 공청회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 5.48 지역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추진방향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함
- 5.49 지역환경 문제는 해당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지역 혹은 국가 전체의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사업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함

## 第6章 人間保健의 保護增進

### 序 文

- 6.1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의 실현, 의료시설 및 인력의 확충,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사회발전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상승하고 영아 사망률은 저하되어, GNP 대비시 국민보건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됨
- 6.2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 도시화,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력 저하, 만성 질환 위주의 질병양상 변화, 국민의 건강요구 증대와 다양화 및 생활 환경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증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개발, 보건 및 환경분야의 통합된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 진료 서비스 위주의 방식에서 진일보 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적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6.3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96년)의 보건부문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a)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대책의 개발 (b)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주민, 농어촌 주민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확대 (c)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및 자원의 효율성제고 (d) 건강위해요소의 제거 및 보건의료 소비자 보호 (e) 대외개방과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처한 의료기술, 신약개발 및 조직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6.4 이러한 국가 보건정책방향에 토대를 두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채택한 계획분야(Program Areas)는 다음과 같음

- (a) 농어촌지역 일차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공공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안전한 음용수 공급, 식품위생 및 생활환경개선, 지역사회 보건기획능력 향상과 관련 연구개발
- (b) 전염병 관리를 위한 면역확대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예방관리의 효과증진, 전염병 관리정보체계 구축, AIDS 예방관리
- (c) 영유아와 아동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적 서비스의 보험급여 확대, 영아 및 임산부 사망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적 여건 개선, 어린이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책 강화, 건강한 육아지원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조화방안 강구
- (d) 도시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의료욕구 충족,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예방 및 관리, 청소년보건관, 환경오염 및 위해에 따른 건강위험요인 감소 등

## 計 劃 分 野

### A. 농어촌 지역의 일차 보건의료 증진

배 경
-----

6.5 농어촌지역은 40세이상 인구비율이 높으며, 특히 60세이상 인구비율은 전국수준의 2배 이상이므로, 노인 보건의료대책이 중요하게 대두됨. 농어민들의 이환율 역시 도시인보다 높으며, 특히 만성질환이환율은 도시인의 1.9배에 이룸에도, 주민들의 건강관리실천율은 도시인보다 낮음

- 6.6 군부의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 도농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하에서 보건의료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농어민들의 의료이용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기관의 일차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강화가 요구됨. 또한 진료 서비스 등 의료적 요인보다는 환경 및 생활양식 관련요인이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건강요구에 기초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6.7 농어촌지역은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설치율이 낮으며, 농약, 축사의 오물 및 공장의 폐수 등이 안전한 수질의 보전을 위협하므로써 건강상 위해요소로 대두됨

목 표
-----

- 6.8 일차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연령, 성 및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리적,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장애요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6.9 건강한 생활양식을 통하여 건강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연령별 건강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전 주민이 스스로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며, 건강 위험대상은 건강검진(Screening)을 통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건강생활을 실천(운동, 영양섭취, 휴식 및 보건교육 등) 함으로써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6.10 보건기관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함

- (a)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간의 일차진료, 검사 및 환자관리를 위한 역할 설정과 기술지원체계 확립
- (b)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및 기타 각종 사고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관리를 위하여 보건기관, 군단위 병원 및 2차 의료기관과의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
- (c) 일차 진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정기적 기술교류 및 환자진료 평가 실시

#### 6.11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

- (a) 보건기관이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시설을 보강
- (b) 영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 보건기관, 민간 의료기관 및 학교보건 서비스의 포괄적·지속적 제공체계 개발
- (c) 40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하는 만성퇴행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사업 개발과 시행을 위한 보건요원의 다목적 활동 및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

- (d) 노년기의 이환 및 일상생활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인건강 증진사업의 개발과 가정간호사업, 중간층 보건의료시설 확립, 노인전문요양소 및 치료센터, 지역사회 자원봉사인력의 확보 및 극대화
- (e) 보건기관에서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을 개발, 실시할 수 있도록 영양사 배치 및 기존 보건인력 재교육, 영양지침서 개발, 영양지도실 설치 및 지역사회 영양개선과 식품산업기관과의 유대 확립
- (f) 체계적이고 다양화한 보건교육 실시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보건교육 자료개발센터”를 중앙정부단위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대주민 보건교육 실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 6.12 건강관리 기획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관리함

- (a)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기획 및 평가능력 향상
- (b) 고위험 건강집단의 모니터링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개발

#### 6.13 안전한 음용수 공급, 식품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과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함

- (a) 안전한 음료수 확보를 위한 상수원의 오염차단, 수질의 정기적 감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민간감시 및 관리기구 구축

- (b) 안전한 식품생산, 유통 및 공급은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유해식품 생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생산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안전식품생산에 참여하도록 함
- (c) 생활쓰레기, 생활하수, 축산폐수 및 생산공장의 유해가스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와 관리를 위하여 주민 환경교육 실시, 홍보강화 및 환경개선의 실천유도

## B. 전염병 관리

배 경
-----

- 6.14 최근 경제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항생제와 예방백신 개발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염병은 계속적 감소추이를 보임. 폴리오, 발진티푸스, 재귀열, 공수병, 디프테리아, 파상풍, 말라리아, 일본뇌염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음. 최근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등의 수인성 전염병도 안전한 상수보급 및 하수처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환경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발병감소가 예상되나, 공중보건측면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6.15 결핵관리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 1990년 유병율이 1.8%로 감소되었고 1995년에는 1.4%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되나, 결핵예방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감소추세가 완만해 지거나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국내 발생율이 높은 B형간염 및 보균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전략수립이 요구됨. 이러한 관점에서 예방접종사업은 국가보건사업의 필수적 요소로 계속 강화되어야 함

6.16 198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확인된 이래 지속적인 감염자의 증가로 1995년 10월말 현재 모두 497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16명이 환자로 발병함. 대 국민 홍보와 교육 및 상담 등 예방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특히 이러한 노력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접근도가 높은 민간단체 및 유관단체를 통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것임

6.17 현행 전염병 신고제도를 보완, 능동적 질병감시체계를 병행운영하는 등 전염병관리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예방노력을 지원토록 함

목 표
-----

6.18 효율적 질병감시체계와 전염병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현재 적용을 90%이상인 면역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수인성질환(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등)과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들(홍역 및 이하선염의 접종시기 개선)을 중점 관리하고, 주요 만성전염병인 결핵 유병율을 조기에 1% 이하로 감소시키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및 0세아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및 에이즈 예방관련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기함

정책수단
------

6.19 효율적인 전염병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함  
전염병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 법정 전염병

보고방식 개선, 전염병 발생 정보관리·분석 담당기구 지원 및 활성화, 법정전염병 신고의 임상적 기준 표준화, 전염병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개발 등

## 6.20 전염병의 예방관리를 강화함

효율적인 예방교육 강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의 예방접종사업 효과증진, 효과높은 백신의 개발 지원,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소아 예방접종지침의 재조정, B형간염의 정기 예방접종, 결핵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국제 교류의 증대로 인한 유입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 체계 운영

## C. 취약계층의 보호 : 영유아와 아동의 정기검진

배 경
-----

6.21 전인구의 약 30%에 이르는 영유아 및 아동(0-17세 인구:1990년 32%, 1995년 29%)은 건강상 취약대상일 뿐 아니라, 이들의 건강보호가 곧 차세대 국민의 보건증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

6.22 그간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아동보건도 상당수준 개선되는 성과(영아사망률 12.8, 시설분만을 99%, 체격향상 등)를 이룩하였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자면, 건강한 신생아의 출생을 위한 산전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 조기 건강관리를 통한 고위험요인 관리, 적기 집중관리전략을 통한 장애 및 후유증 발생의 최소화, 산업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지원 및 정서발달 도모, 아동의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안전관리, 아동의 자질향상을 위한 포괄적 보건복

지 서비스 제공, 영유아 사망 및 건강정보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에  
역점을 두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목 표

6.23 영유아 및 아동기의 예방가능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질병  
및 건강증진적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21세기 건강하고 건  
전한 영유아 및 아동을 육성하여 평생건강을 확보하고자 함

정책수단

6.24 주산기의료의 지역화를 통한 효율적인 고위험신생아 관리  
최근 영아사망의 절반 정도는 선천이상 및 저체중과 관련된 장애에  
기인하는 데, 특히 고위험신생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은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  
래하므로 주산기의료의 지역화를 통한 미숙아 및 저체중아 집중관리,  
심신장애아를 위한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6.25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적 서비스의 보험급여 확대  
산전관리, 선천이상 스크리닝 검사, 기본 예방접종등의 예방 서비스  
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에 포함되도록 하며, 영유아 정기검진이 의무  
화 되는 제도적 장치도입과 함께 보험급여에 포함되도록 함

6.26 모유수유실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모유수유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신생아를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출생후 신생아

가 완전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분만의료기관에서의 일정병상에 대한 모자동실제 의무화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종합병원 서비스 평가제”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

#### 6.27 영유아보건과 학교보건과의 효율적 연계

국민학교 입학시 기본예방접종을 포함한 영유아기 건강관리기록 제출(모자보건수첩 활용)을 의무화하여, 학교보건과 연계시킴으로써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의 토대로 활용함

#### 6.28 학령기 어린이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책 강화

사고로 인한 이환은 어린이 연령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며, 5-14세아의 사인 1위는 ‘불의의 사고’인 점으로 감안하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취업모 자녀의 안전한 육아환경(조성)관리, 사고위험이 큰 학생들의 안전관리 및 지도 등 예방대책을 강구함. 또한 어린이 체력단련 시설을 지역단위에 설치토록 하여 안전한 전용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6.29 보건의료망을 통한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정보 관리체계 도입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표설정

의료기관과 보험자는 영유아 보건정책수립상 주요자료인 출생 및 이환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보험체계를 활용하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역보건소가 영유아 이환수준 등 각종 건강관련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장애아동 관리 등) 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유효적절한 정책개발과 함께 구체적 건강증진 전략개발을 위하여(관련)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함

### 6.30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정부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사회적 관심제고에 역점을 두고, 아동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96년)에 포함시켜, 일반아동의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사업의 확대, 아동상담기능의 확충, 어린이 애호사상의 함양, 아동건강 위해환경의 제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아동전용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음

### 6.31 아동에 관한 국제협약조항과 조화를 이루는 아동건강정책 실천

앞으로 아동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항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포함한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예정임

### 6.3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가정,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로부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건전한 아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역학적, 행동적, 환경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지원체제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 건강관련 가용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하며 적절한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건강상담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유도함

고위험아동(선천이상, 장애아 및 저체중출생아 등)의 경우 방문 서비스 실시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관리, 광범위한 자가건강관리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도록 함

## D. 도시지역 보건문제 대응방안 개발

### 배 경

- 6.33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20년까지는 도시화율이 90%에 이르러, 도시가 가장 보편적인 생활환경이 되면서 도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과 아울러 도시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임
- 6.34 도시화, 현대화에 따라 보건의료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즉 (a) 도시빈민지역의 높은 만성질환, 장애발생 및 정신질환 등의 보건의료 요구도를 고려한 서비스 확충 (b)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유병 및 사망 양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근원적 대책 (c) 교육 및 취업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높은 도시유입과 급격한 사회변동 등과 관련 청소년 성문제, 성병감염, 약물중독, 사고 및 자살 등 각종 건강위험요인이 증가하므로 사회교육 및 보건서비스를 통한 청소년 보건대책의 지속적 개발과 사회지원 프로그램 및 건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 증대 (d) 산업화 및 도시인구 집중에 따른 환경오염과 가공식품의 발달에 따른 식품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건강위해요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적극적 소비자 보호운동과 보건교육 및 사회적 규제가 요청됨

### 목 표

- 6.35 도시빈민 보건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체계의 개편과 일차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도시보건소 하부조직 설치근거 마련 및 의료

보호체계의 내실화와 사고 및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강화 및 무재해 실현을 위한 유인시책을 확대함

- 6.36 청소년 보건증진을 위하여 건강위험행위 억제를 위한 건강교육 강화와 교육기술개발 및 사회교육 접근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과 효율증대를 위한 관련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청소년 성문제, 성병감염, 약물복용, 인공임신중절 및 미혼모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 6.37 환경보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각종 환경보건 서비스를 보건정책과 연계하여 개발토록 하며, 환경오염 유발과 관련된 상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점차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

정책수단

- 6.38 도시빈민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욕구 충족
  - (a) 도시지역의 보건체계를 개편하여 새로운 도시보건문제에 대처하도록 함(예 : 보건소 기능에 빈곤대책, 정신보건, 청소년보건, 약물복용관리 등을 추가)
  - (b) 빈민밀집지역에는 미국의 이웃 보건소(NHC)와 같은 의사 및 보건간호사를 배치한 1차보건의료사업소(또는 관할보건소의 분소)를 설립하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보건교육 및 방문간호사업 실시
  - (c) 적십자사, 민간 사회교육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 유인책을 통해서 도시의 복합적인 보건문제를 완화시키는 보건, 사회 및

## 환경의 통합적 접근 시도

### 6.39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

- (a) 유아원, 학교 및 산업장에서의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보건 교육과 기술 습득의 강화
- (b)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관리 의식의 강화
- (c) 무재해기업 및 지역에 대한 각종 사회지원책의 우선적 실시
- (d) 아동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민학교 근방의 교통속도제한 구역 설정
- (e) 기업체의 안전보건 시설확보에 대한 지원과 산업장교육,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실시
- (f) 산업장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기획참여 및 실행기술 개발
- (g) 학교 및 시민단체의 안전 캠페인 참여의 활성화

### 6.40 청소년 보건관리

- (a) 학교, 산업장에서의 보건교육과 성교육 내실화 및 전문화와 교육 기술의 개발 보급
- (b)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건강 및 성교육 기회의 확대
- (c) 지역단위로 사회교육기관 및 종교단체의 청소년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며 기술과 정보교환을 위한 청소년회의 권장과 지원

- (d) 성병치료 및 인공임신중절, 미혼모 발생시 지원프로그램의 접근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관련 복지시설 확충
- (e) 청소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각종 체육 및 레저시설의 확충
- (f) 청소년 보건문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의 상호협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공동사업의 활성화
- (g) 청소년의 각종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실시

#### 6.41 정신보건관리

- (a) 정신질환자의 예방, 재활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소의 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
- (b)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시설 및 전문인력의 활동

#### 6.42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위해 관리

- (a) 도시지역 보건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환경오염과 건강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연계를 갖는 체제로 전환
- (b) 의사, 간호사, 기술자, 관리자 및 기타 보건인력의 환경보건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과 보건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도시지역 보건환경 서비스의 확충
- (c)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및 환경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보 및 기술의 상호 교류활동 지원
- (d) 식품, 의약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립보건원의  
기능 및 기구확대 추진(FDA와 유사기능)

- (e) 소비자의 식품안전,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 (f) 정책입안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과 보건 및 사회에 관한 자료  
생산 및 연구수행 강화

## 第7章 持續可能한 人間定住 開發增進

### 序 文

7.1 인간정주개발의 목적이 경제·사회개발 및 환경의 질 개선에 있음을 인식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각종 지역 개발계획에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증진을 위한 각종 전략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A.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7.2 1970년부터 3차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국가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적정주거공급, 도시정비, 효율적 토지이용과 관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개선, 교통망의 확충, 재해관리대책, 수자원개발 등 인간정주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7.3 1991년에 수립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1-2001)은 지역균형개발의 바탕 위에서 생산적·자원절약적 토지이용체계의 구축,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조성 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7.4 아울러 도시·지역개발정책, 주택공급정책, 교통정책 등 각종 개발계획에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7.5 또한 생활 및 문화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낙후지역의 빈곤문제해결 및 안정된 인간정주를 위하여 특정지역을 개발촉진구로 지정하고 개발촉진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정비에 노력하는 한편 조세지원, 개발절차 간소화등으로 민간개발을 활성화

하여 안정적인 인간정주를 유도하고 있음

7.6 이밖에 각종 지역계획이나 농어촌정주권계획, 오지개발계획 등을 통해 안정된 인간정주개발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B. 신경제 5개년계획

7.7 '93.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을 경제시책의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생활의 질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7.8 경제성장과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주택, 교통, 환경분야 등 국민생활의 기본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주택난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대도시 교통난의 완화, 깨끗한 환경의 조성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計 劃 分 野

### A. 적정주거공급

배 경
-----

7.9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88년 이후 GNP대비 주택투자율이 6%이상으로 확대됨

7.10 이러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택 부족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대도시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음

7.11 또한 소득계층별, 지역별로 주거수준의 격차가 심하고,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7.12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핵가족화의 진전, 가구소득의 증대로 인한 주택의 양적·질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광역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함

7.13 이에 따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신경제5개년계획 등 주택관련 계획에 다양한 적정주거 공급 계획 및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목 표

7.14 질 좋고 다양한 주택을 안정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택의 절대량 부족을 완화하고, 국민소득 수준에 알맞는 인간정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정책수단

7.15 2001년까지 주택보급율을 92.8%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이중 일정물량을 영세민등 사회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7.16 주택공급체계의 합리화, 택지공급제도의 개선, 주택건설 기술개발 및 자재수급 원활화, 주택건설노동력의 확보, 기존 주택의 이용효율제고, 주택 금융제도의 개선 등 적정주거공급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기

## 반을 조성함

7.17 무주택서민과 근로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서민용 주택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함

(a) 저소득층과 무주택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매년 25-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임

(b) 2000년대초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수준으로 제고하고, 도시영세민용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7.18 적정주거공급을 위해 택지공급계획 및 주택자금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

(a) 2001년까지 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지역에 신규택지를 조성함

(b) 주택건설투자규모를 GNP대비 6%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택금융 및 재정지원규모를 확대함

## B.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배 경
-----

7.19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촉진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도시화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7.20 또한 도시인구는 지난 30년간(1960-1990년) 1.51배 증가하였으며, 대도시도 급속히 늘어나 50만 이상의 도시가 1960년에 3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 들어 11개로 증가함

7.21 이와같은 도시규모의 확대 및 도시인구증가로 대도시 주변지역으로의 도시확산문제가 심각하고, 주택난, 교통난 뿐만 아니라 자원 및 에너지의 소비집중문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도시와 농어촌지역이 침체되고 있음

7.22 이러한 도시집중 및 각종 도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산형 정주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목 표

7.23 대도시의 집중과 과밀을 방지하고 지방도시를 육성하여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민정주공간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둠

## 정책수단

7.24 수도권 자체의 합리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방도시와 농어촌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7.25 대도시와 그 직접 영향권인 일정 주변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설정, 광역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함

(a) 산업배치, 교통, 유통,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종합적·광역적 관리제도를 도입함

- (b) 도시생활의 쾌적성과 문화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도시의 전통, 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의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
- (c) 방사·순환형 광역 교통망을 건설하여 지역간의 교통문제 해결과 환경의 질에 대한 개선에 노력함
- (d) 도시내 토지부족문제에 대응하고 교통난의 완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시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촉진하며 시가지 환경을 정비함

7.26 지방중소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주력산업 육성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중소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 대도시 인구집중 압력을 해소함

7.27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의 육성과 신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실현함

- (a)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의 확대에 필요한 가용토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적절한 도시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

- (b) 배후주거기능, 대학기능, 관광위락기능, 첨단산업기능 등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신도시에 부여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 직주접근에 의한 교통·에너지 문제해결을 통해 쾌적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 (c) 이를 위해 인간정주회의(Habitat)의 “The Sustainable Cities Programme”과 WTO의 Health Cities Programme등의 기술지원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등의 경제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함

7.28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틀을 형성함

C. 환경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의 촉진

배 경
-----

7.29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국토이용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

(a) 전 국토의 65.3%가 산지, 21.4%가 농경지, 4.4%가 공업용지, 공공용지, 대지 등 도시적 토지로 구성되어 있음

(b) 우리나라는 도시적 토지용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한정된 토지를 집약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음

7.30 지속적인 도시화의 진전으로 주거용지, 공업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토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증대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오픈스페이스 및 위락공간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경지 및 산지의 도시용지로의 전환 압력이 증가될 전망이다

7.31 따라서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가중과 생태계 파괴, 지역주민간의 마찰을 극소화하기 위해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촉진해야 함

## 목 표

7.32 토지자원은 인간생활체계의 기본이며 토양, 에너지, 수자원 및 모든 인간활동에 기회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하여 자원절약적, 환경보전적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토지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둠

## 정책수단

7.33 국민에게 기본적인 주거와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용지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급격차를 해소하며, 공급용지의 질적수준을 제고하여 쾌적한 생활 및 생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7.34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노력함

(a) 이용목적의 토지와 보전목적의 토지의 합리적 구분과 체계화로 효과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함

(b)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토지이용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을 촉진함

7.35 토지의 소유, 거래, 이용, 가격, 자연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지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a) 토지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적과 등기자료의 일원화를 추진  
함

(b) 정기적인 국토실태조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토지정보  
망과 각종 건축물 대장자료를 접목한 부동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함

7.36 토지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자  
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공중 및 지하공간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확대함

#### D. 환경기반시설의 확충

배 경
--------

7.37 도로, 항만, 주택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우리나라의 환경기반  
시설투자는 전 국토에 걸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a) 상수도보급율은 비교적 양호한 실정이지만 상수원의 수질오염  
등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b) 하수처리율과 폐기물위생처리율이 저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7.38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환경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목 표

7.39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모든 거주지에 적절한 환경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책수단

7.40 환경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저감시키고 쾌적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함

7.41 하천과 호소의 오염원 관리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시설을 확대보급 함

(a)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제고하여 대도시의 용수공급난을 해결함

(b)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위생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

(c) 광역상수도과 지방수도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

(d) 물이용효율증진 및 수자원절약을 위해 중수도등 절수형 시설을 보급함

7.42 하수도정비 및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위생적인 정수환경을 조성함

(a)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고 하수망을 건설하여 하·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

(b) 농·어촌지역에 알맞는 하수처리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함

7.43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의 재활용 제고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함

(a)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함

(b) 광역위생매립지 및 지역위생매립지를 설치하여 위생매립율을 제고함

#### E.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및 교통체계 개발

배 경
-----

7.44 1965년 4만대에 불과하던 자동차가 1994년말 현재 740만대 이상이 되어 에너지소비증가, 교통혼잡, 대기오염, 소음, 교통안전 등에 대한 제반문제가 심화됨

7.45 도시환경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체계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교통량을 줄이는 수요관리의 교통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 시설확충을 통한

공급부문에 치우쳐 있음

7.46 따라서 교통이 에너지소비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고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을 종합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개발이 시급함.

목 표

7.47 에너지 절약적, 환경보전적 교통체제구축을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수단

7.48 에너지 절약적 지역·도시구조를 구축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저감시킴

7.49 대중교통수단 및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이용의 억제를 유도함

(a) 지하철을 확충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여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함

(b)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정비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함

7.50 우회도로 및 환상도로의 건설과 정체, 혼잡구간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함

7.51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함

## F. 재해다발지역내의 정주계획 및 관리의 향상

### 배 경

7.52 자연재해는 인명피해 및 시설의 파괴 등 인간정주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함. 우리나라는 우기인 6-9월에 년평균 강우량의 2/3가 집중해서 내리고 있으며, 매년 7-8차례의 집중호우 및 3~4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a) 풍수해로 인해 연평균 17,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0여명이 사망·부상하고, 92,000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액이 GNP의 0.2%에 달하고 있음

7.53 이에따라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수자원개발정책 및 하천개수, 치수대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나, 최근 다발하고 있는 자연재해 및 인재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7.54 각종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인간정주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책수단

- 7.55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조직하여 재해에 대한 안전의식(culture of safety)을 제고하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계획 및 사후 복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음
- 7.56 앞으로 홍수예·경보 시설을 현대화하고 홍수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함
- 7.57 다목적댐 및 준규모댐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수통제능력을 제고 함
- 7.58 하천개수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해상습지를 개선 함

G. 환경에 부합되는 건설산업 활동의 조장

배 경

- 7.59 건설활동은 주거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고용기회 창출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자연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개발지역내 인간정주의 훼손, 건축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킴

목 표

- 7.60 건설활동이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 내지 제거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건설활동을 위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건설분야의 고용 창출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정책수단

- 7.61 신경제5개년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환경관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여 국가기반시설을 확충함
- 7.62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정책이 경제성장, 물가, 수출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함
- 7.63 건설활동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는 환경과 조화된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함.
- 7.64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 H. 국토개발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자질향상 유도

## 배 경

- 7.65 우리나라는 한정된 토지를 집약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고 3차례에 걸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오면서 국토개발관련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있음

## 목 표

- 7.66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목표를 둠

정책수단

7.67 국토개발관련 각종 정책개발분야의 연구원, 공무원, 기업계 및 개발도상국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 함

## 第8章 意思決定에 있어서 環境과 開發의 統合

### 序 文

- 8.1 인간의 경제활동은 환경과피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임. 따라서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라는 두 요소를 의사결정과정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이룩하는 전제조건이 됨
- 8.2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및 집행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경제적 수단 등 시장원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과 경제의 통합회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8.3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환경·경제통합회계체제의 구축, 정부내 의사결정체계의 개선등이 필요함

### 計 劃 分 野

#### A.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환경·경제통합회계체제의 구축

배 경
-----

- 8.4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에 도입되어 1993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됨. 동 제도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임

## 목 표

- 8.5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현재 일부 공공 및 민간사업, 그중에서도 단위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 그 대상을 정책 수립단계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정책수단

- 8.6 오염저감대책에 중점을 둔 관리중심적인 평가보다는 특정사업의 포기(no action alternatives)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중심의 평가제도로 확대함
- 8.7 이와 더불어 평가대상사업은 사업완료 이후에도 그 환경영향을 계속 추적하여 평가기법 및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에 이러한 기능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8.8 정확하고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환경·경제통합회계체제(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를 구축함

## B.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체계의 개선

## 배 경

8.9 정부의 정책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를 철저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목 표

8.10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관련 정책수립시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함

## 정책수단

8.11 중앙정부의 경우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율을 수반하므로 이러한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정기구 내지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함

8.12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그리고 지자체 상호간에 환경과 개발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후적인 분쟁조정제도를 정비·개선하고 사전적인 이해조정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함

8.13 사전적 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이 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간 정보의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개발로 인한 환

경오염은 오염자부담원칙에 기초하여 지역내 책임처리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사업이 타지역에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최대한 억제할 것임

8.14 사후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등과 같은 협의조정 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임

## 第9章 大氣保全

### 序 文

- 9.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단위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하고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제하여 왔으며, 기준강화에 대한 예시제를 도입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한 단계별 강화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 (a) 기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저감 유인책으로 먼지, 황산화물등 10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해 오고 있음
- (b) 연료공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경유와 B-C유의 황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지역을 확대하여 왔으며, '87년부터 무연휘발유를 생산·공급해오고 있음
- 9.2 이러한 일련의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힘입어 아황산가스와 먼지등의 대기오염물질은 개선되는 추세로, 아황산가스(SO<sub>2</sub>)의 경우 '93년에 0.023ppm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장기환경기준 권장치인 0.03ppm을 달성하였음
- 9.3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연료전환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오염배출총량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9.4 또한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이 공장·빌딩에서 자동차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정장애, 오존(O<sub>3</sub>) 등 2차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음
- 9.5 현행 배출부과금제도는 연료개선, 방지지설의 효율증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유인효과가 미흡하며,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오염처리 한계비용이 대기업에 비하여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함
- 9.6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지구환경위기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등이 시행 또는 시행예정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물질의 규제와 환경라운드의 가시화에 따른 국내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OECD 가입에 따른 회원국 권고사항인 경제적 규제수단의 적용확대가 검토되어야 함

## 計 劃 分 野

### A.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부과금제도 개선

배    경
--------

- 9.7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83년부터 배출부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환경용량이 고려되지 않아 개별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대기배출 시설 및 배출오염물질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9.8 또한 현재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처리부과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본부과금의 경우 오염배출량과 무관하게 책정되어 있고 기준 위반시에만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업자의 자발적 오염억제 효과에 미흡한 점이 있음

목 표

9.9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환

정책수단

9.10 부과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규 개정을 추진중이며, 배출부과금액은 오염물질 처리비용으로 하되,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우선 실시하며 대상오염물질도 초기에는 아황산가스, 먼지에 한하여 실시하며, 소규모 영세업자·경유나 LNG와 같은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최상의 방지시설(BACT) 설치 운영자에게는 부과금을 면제하며, 징수된 부과금은 방지시설 설치비, 연료개선 비용 등에 지원토록 함

## B. 환경규제 기준의 선진화

### 배 경

- 9.11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은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여 아황산가스 및 먼지의 경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음
- 9.12 또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95~'99년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이 선진국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거나, 허용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도 있음

### 목 표

- 9.13 대기환경기준은 WHO 권장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키며,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항목도 허용기준을 마련함

### 정책수단

- 9.14 아황산가스, 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로 강화함
- 9.15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선진 각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기술 여건을 종합평가 한후 이를 관계법규에 반영함

## C. 대기오존경보제 시행

### 배 경

9.16 오존(O<sub>3</sub>)은 주로 이산화질소(NO<sub>2</sub>)가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농도가 높을 경우 시정장애, 인체 및 식물에 영향을 미침

(a) 오염 표준지수에 따르면 오존(O<sub>3</sub>)은 0.1~0.2ppm수준의 농도(1시간)에서 인체에 유해, 0.2~0.4ppm 수준의 농도에서 매우 유해, 그리고 0.4ppm이상의 농도에서 인체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b) 우리나라의 경우 '90년이후 자동차의 급증과 일사량 등 기상현상으로 오존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단기환경기준 초과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목 표

9.17 오존 오염심화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존 오염도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함

### 정책수단

9.18 주요 대도시별 측정망 기상관측자료 등을 망라한 경보망을 구축하고 경보발령지역내의 경보단계별로 주민의 행동요령, 차량운행 자

제 권고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a) 경보단계 및 조치사항

- 1 단계

- 주의보 ㄱ 실외운동경기 참가 권고
  -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자제권고
  - └ 불필요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권고
  - └ 대중 교통시설 이용 권고

- 2 단계

- 경 보 ㄱ 실외 신체적 활동제한 요청
  -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억제요청
  - └ 당해지역 인근 유치원, 학교의 실외활동 제한권고

- 3 단계

- 중대경보 ㄱ 실외 신체적 활동억제 요청
  -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불필요한 활동중지요청
  - └ 당해지역 인근 학교, 유치원 휴교 권고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당해지역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도록 권고요청

(b) 경보기준은 오존의 인체유해도, 외국의 기준 등을 참작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

## D. 기후·생태계변화의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

### 배 경

9.19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 및 대기중 농도증가에 따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가능성이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에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6.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음

1994.3월 정식으로 발효된 동 협약에서는 공동의 차별적 책임원칙에 따라 선진국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없이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9.20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93.12월 기후변화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개도국으로서 온실가스의 직접적 배출규제의 의무는 없으나,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인 에너지 분야의 정책추진에 있어 기후변화문제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아 에너지 소비절약, 온실가스 저감형 에너지 공급구조로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 및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됨

## 목 표

9.21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능력형성에 주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 유지의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적정화, 환경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효과적이며 경제적 편익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감축수단을 개발함

## 정책수단

9.22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효율개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전체의 거시적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억제와 함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a)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낮은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로의 조정 및 에너지다소비 업체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속적 추진

(b) 에너지가격구조를 수요관리 위주로 개편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c)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소에 의한 집단에너지 보급의 확대 등

9.23 석유, 석탄 등 고탄소 화석연료의 비중을 점차 감소시키면서 저탄

소 청정연료 및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수급구조 조정 : 장기에너지 수급계획 및 장기전력 수급계획 등을 조정, LNG 등 저탄소 연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원별 구성비(Mix)를 개선하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착실히 확충함

9.24 태양열, 태양광, 풍력, 폐기물에너지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 추진

9.25 기후·생태계변화 오염물질에 대하여 발생억제를 위한 제어기술개발 등 장·단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배출사업장이나 연료에 대하여 부과금부과, 사용제한 등의 방안을 강구함

#### E.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 추진 등

배 경
-----

9.26 우리나라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저유황연료의 공급,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9.27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은 계속하여 늘어날 전망이며, 자동차의 급속한 증대로 인하여 대도시의 대기오염원이 아황산가스에서 질소산화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됨

## 목 표

9.2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연료로의 전환 및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대도시의 대기오염도를 WHO 권고기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함

## 정책수단

9.29 B-C유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배연탈황시설(FGD)을 설치토록 하거나 경유, B-A유, LNG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함.

(a) 또한 경유의 황함유량도 강화하며, 선박용 B-C유에 대하여는 국제적 권고기준을 준수해 나감.

(b)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을 현재의 수도권, 부산, 대구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광주, 대전 등 광역시급 이상과 울산 등 공업도시로 확대함.

9.30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96년부터 저NO<sub>x</sub> 버너의 사용을 의무화함

## F.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적정처리

## 배 경

9.31 석유정제시설, 유류저장시설, 도장시설, 주유소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

성 유기화합물(VOCs)은 옥시단트(O<sub>3</sub>)의 원인물질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제되고 있지 않아 옥시단트 오염도가 증가되고 있음.

## 목 표

9.32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적절한 관리방법을 준수토록 함

## 정책수단

9.33 유기화합물별 환경오염 및 유해성 정도, 회수시설설치의 기술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규제대상 유기화합물 및 시설의 범위와 적절한 관리기준 및 일정을 설정, 추진해 나감

## G.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 배 경

9.34 최근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가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등장함. 이중 대형 경유차는 오염물질 배출비율이 전체 등록차량과 비교하여 크게 높음. 또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미국과 비교할 때 아직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

## 목 표

9.35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 및 경유 소형차는 미국수준, 경유대형차는 EU 수준으로 강화함

## 정책수단

9.36 차량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현재의 정지상태(Idling)에서 운행상태(Chassis-dynamometer)로 개선하고, 검사의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 발휘까지 점검토록 함. 검사의 주기는 차종, 차량에 따라 6월~2년으로 하며, 검사기관은 현재의 차량 안전 검사기관이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로 확대

9.37 경유사용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일정규모이상의 운수업체 소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유도함

9.38 경유차 차량배출가스의 경우 소형차량은 미국수준으로 대형차량은 EU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며,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승용차 수준으로 연장함

9.39 자동차용 연료물질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도록 노력

## H. 도시교통체계 개선

## 배 경

9.40 '80년 중반부터 자가용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와 과도한 운행으로 대도시의 경우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목 표

9.41 도시교통망을 자가용승용차 등 개별교통수단 보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확충과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도시대기오염을 개선함

정책수단

9.42 2000년대초까지 6대도시에 지하철을 추가건설하고, 시내버스의 이용편의를 위한 전용차선을 확충하고, 차량을 고출력화 하며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심야좌석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대 추진함

9.43 자가용승용차의 과도한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별·시간대별 주차요금을 차등적용하고, 통근버스운행 등 자가용운행 감축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 도심혼잡통행료부과 등 보다 적극적인 교통수요억제 방안을 강구함

I.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연구

배 경

9.44 국내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과 주변국의 산업화 영향 등에 따라 강우중의 산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강우의 산성화에 대한 주변국의 대기오염물질과의 관계규명이 이루어져 있지 못함

목 표

9.45 한·중·일간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상태 및 피해를 조사하고, 지역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함

정책수단

9.46 산성우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해안 일대에 측정소를 설치하며 황사현상시 먼지농도, 중금속 유입여부를 조사함

9.47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공동연구 및 정보의 상호교환체제를 마련함

(a) 정부간 또는 민간차원의 기술교류 및 연구사업을 지원

(b) 오염물질 다량배출산업에 대한 오염제어 기술지원 및 환경정화 시설 설치 유도

## 10章 土地資源의 統合的 企劃 및 管理

### 序 文

- 10.1 토지는 사용방법에 따라 그 성질이 변화되는 한정된 자원이나 인간의 수요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부적절한 방식의 토지이용이 만연되고 있는 바, 앞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한 토지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관리방식이 적극 도입되어야 함
- 10.2 우리국토의 특수성과 제약을 감안하여 그동안 토지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는 바, 10년을 단위로 하는 2차에걸친 국토종합개발계획, 신경제5개년계획등을 통해 토지자원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의 효과성 확보를 경주하여 오고 있음
- (a) 제1차(1972~1981), 제2차(1982~1991)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국토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양측면을 고려한 조화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생산기반 구축, 교통망 정비확충, 수자원종합개발, 국민생활 환경개선,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왔음
- (b)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를 목표로 '93.7월 확정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음
- 10.3 국토종합개발계획등 장기정책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수도권계획, 도시계획등 각종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을 운용하고 있음
- (a) 1976년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토를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지정하고 있음

(b)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도모코자 동 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음

(c)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동 구역을 세분하여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10.4 기타 토지 문제를 개선하고자 토지거래규제제도, 유희지제도,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공개념제도등 각종 토지관리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10.5 상기의 장단기계획들이 개발과 보전의 균형있는 조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왔으나 그간의 국내외적인 사회·경제 및 환경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의 개선·강화가요구되는 바, 특히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적인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강화, 보전할 토지에대한 합리적 이용과 관리, 토지종합정보체계의 구축에 역점을두어야 할 것임

## 計 劃 分 野

### A.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적인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강화

배 경
-----

10.6 지난 70년대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국토이용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바,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이용계획체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10.7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하여 기본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목표를 설정하고, 동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전국토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맞게 이용·관리를 하는 국토이용계획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농지·산지·도시토지등 개별토지는 해당 법령에서 그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토지용도를 지정하여 개발과 보전이 서로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용하고 있음
- 10.8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과 함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토개발기반이 물적·양적 시설의 공급에서는 크게 확충되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고, 국가계획·지방계획등 각종 계획간의 유기적 통합부족으로 혐오시설 기피, 지역·집단이기주의(NIMBY 현상)등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산·광물·에너지·공간등 자연보고인 해양에 대한 관심고조와 '92리우환경회의등 지구환경의 중요성 대두로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리체계 정립의 대두에 부응한 종합적인 국토이용계획 체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10.9 특히 최근들어 개발의 개념이 경제성장과 좋은 환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기조로 하면서 개발은 친환경적·친자연적 개발을 유도하고 보전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토착적·지역적 특성을 살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목 표
-----

10.10 토지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관련정책을 보완·정비 하여 토지자원 이용·개발·보전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그 의사결정과정에 관계되는 개인·집단·지역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보장 하면서 환경과 조화된 토지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보전적 국토이용정책을 보다 활성화함

정책수단

10.11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92 ~ 2001)을 통해 국토의 양적 개발보다는 질적개발 을 중시함으로써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남북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여 국토공간의 균형성·효율성·쾌적성을 제고함

(a) 지방도시와 농어촌 및 취약지역을 그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주택·상하수도·여가시설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b) 수도권집중을 억제하는 등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

(c) 국토개발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 민간부문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통합체계를 구축

10.12 국토건설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도건설종합계획과 이의 세부실천수단으로 군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토지관리체계를 운영함

10.13 신경제5개년계획('93 - '97)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기조로 하여 국민생활 환경여건의 개선을 경제시책의 주요핵심과제로 삼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과 환경을 개선함

10.14 친환경적·친자연적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으로 전국토를 지역과 토지의 특성에 적합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함으로써 토지가 그 지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a)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정비·개량등을 시행할지역등은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여가선용·관광휴양시설용지 등으로 이용할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b) 준도시지역은 그 개발취지 및 목적에 따라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 묘지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함

(c)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준농림지역에서는 그 지정목적 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환경 오염방지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함

10.15 토지수급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제3차 국토종합계획기간동안 필요한 대지, 공장 용지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지역계획을 감안하여 용도지역별.공급원별 가용토지 공급계획, 용도지역변경계획등을 내용으로 하여 5년단위의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자원을 무계획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함

10.16 국토의 절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

(a)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사이에 녹지등 완충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b)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설계등 입체계획 수립기법을 적극 활용

(c)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기타 계획상의 자연공원·상수원 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d) 자연생태계가 보전되는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환경관련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철새도래지·원시림·갯벌·희귀동식물 서식지등에 대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

(e)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녹색계획(Green-Plan)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써 환경시범도시를 건설하는등 환경친화적 개발 (Eco-Development)을 정착

(f) 생태계의 균형과 동화능력, 재생가능자원, 문화유산등의 유지를 고려한 개발을 선택

(g) 토지를 단순한 보전이 아닌 그 보전목적에 맞게 친환경적·친자연적 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자연과 인공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함

10.17 토지시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집단·주민등의 욕구를 수렴코자 의사결정과정을 하부에 위임하고 개발사업 및 보존사업에 대한 토론회·공청회등을 텔레비전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활성화함

(a)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강화

(b)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관계된 개인 및 집단간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법령 및 제도상으로 의사수렴과정을 지속적으로 정착

(c) 혐오·기피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의 지원방안 강구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10.18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 관련단체의 활동 지원 등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함

10.19 범정부적으로 해양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보전할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함

- (a) 해양환경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등에 대한 사전실태조사 실시
- (b) 가칭 "연안역관리법"의 제정 및 연안역 개발·이용·보전을 위한 장기기본 계획의 수립 검토

## B. 보전할 토지에 대한 합리적 이용과 관리

배 경
-----

10.20 농지와 산지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관리가 필요함

10.21 1960년대 이후 공업화 및 도시화가 확산됨에 따라 농지와 산지가 타용도로 계속 전환되고 있고, 주거 및 공업용지의 개발, 도로·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으로 토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지 및 임야의 감소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됨

10.22 환경보호 및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로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UR타결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라 보전해야 할 농지·산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목 표
-----

10.23 토지이용계획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 농지와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보전해야 할 농지와 산지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생태계보호 및 다양한 환경구성요소에 대해 합리적으로 관리함

정책수단

10.24 지형·기후등 자연적 조건과 인구·산업등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농지와 임야로 보전해야 할 토지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개발하여야 할 토지는 용도 지역 지정등 토지이용계획으로써 토지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함

(a) 생산성이 높은 토지 및 보전해야할 임야는 농림지역으로 지정

(b)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생산성이 높은 경작토지 및 우수한 임지는 타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및 토지의 여건상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토지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개발을 추진하는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

10.25 농지이용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토환경 보전 및 안정된 식량공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개발·보전하는 제도를 정립함

(a) 경자유전원칙을 확립하여 농민이 필요한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농지 제도 정비

(b) 대규모 간척농지를 개발하고, 경지정리등 농업기계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지를 집단화하여 생산성 제고

(c)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로 보전해 나가고 영농단지 조성 및 전업농 육성

## 10.26 토지이용체계의 개편을 추진함.

- (a) 현행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있는 산지이용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생산임지, 공익임지 및 산업임지로 재편하고 임지별 이용원칙을 세워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산지이용제도 정비
- (b) 인공조림의 확대, 목재축적도를 제고하는 등 목재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산림의 생산성 제고
- (c) 산지자원화계획에 의하여 산림의 경제림화, 소득원화 및 국민휴양 공간화를 실천
- (d) 산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지 조성, 산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등을 추진

## C. 토지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배 경
-----

10.27 기존의 토지관련정보는 각 부처가 해당부처의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자료의 내용이 중복될 뿐 아니라 각각의 행정목적에만 적합한 단편적인 정보가 많아 자료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결정의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10.28 그간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사회 각 분야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이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정보도 나날이 복잡·전문화

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국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축적·관리하고 이를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종합적 국토정보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 목 표

10.29 토지의 특성과 잠재력, 환경생태계내에서의 기능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토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토지정보를 효과적으로 축적 하고 이를 개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지정보데이터 베이스 및 종합자료(Master File) 기반을 구축함

## 정책수단

10.30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사업, 지적전산화사업, 자연생태계조사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a)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 및 자원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

(b) 지형도 전산화사업에 대한 충실화 및 체계화

(c)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기전산화된 지적·지가 및 주민등록을

동시에 활용토록 추진

- (d) 전국산림을 대상으로 정밀산림토양조사를 실시하는등 종합적인 산림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

10.31 토지자원의 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종합 환경정보망을 개발함

10.32 국토에 관한 속성정보와 도형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리 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함

- (a) 종합적이고도 완벽한 국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으로서의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실용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추진
- (b) 많은 수요기관이 중복투자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기본도의 조속한 전산화 및 보급
- (c) 지도제작, 시스템사양, 자료DB구축에 대한 표준화
- (d) 기술개발 및 축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한국형 GIS 개발

## 第11章 山林荒廢 防止

### 序 文

- 11.1 산림은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대표적 육상생태계로서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원임. 그러나 세계산림은 무절제한 개발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림경영으로 인해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지구적 차원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산림황폐는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할 것임
- 11.2 우리나라 산림은 한국동란(1950-1953)을 거치면서 극도로 황폐되어, 농토의 유실, 한발과 홍수등 빈번한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등 오늘날 일부 개도국에서 겪고 있는 바와 같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바 있음
- 11.3 1960년대이후 시작된 경제개발정책과 병행하여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치산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므로써 오늘날 황폐산림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졌음. 이와같은 대규모 치산녹화사업의 성공배경에는 치산치수를 국가경영의 근본으로 여기는 전통적 자연관,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 및 온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임
- 11.4 치산녹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988년부터 산림을 경제적자원으로 육성할 목표로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 산림은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11.5 황폐산림은 복구되었으나 쓸모있는 나무가 적고 그나마 30년생이하의 어린나무가 90%를 점유하는 등 수확가능한 자원이 극히 빈약한 실정임. 한편 목재수요는 국민경제발전에 따라 급증하여 총 수요량의 90%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산림이 수확기에 도달하는 향후 30~40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 11.6 사회적으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쾌적한 휴식공간, 야생동식물자원의 보호등 산림의 다양한 생태적기능의 발휘가 요청되고 있음
- 11.7 이와같이 우리나라가 당면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보다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해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산림의 성장잠재력을 꾸준히 육성하고, 다양한 기능을 고도로 발휘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11.8 산림은 토지, 대기, 수질등 '의제21'의 대기보전(제9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제13장), 생물다양성보전(제15장)등과 관련되며, 특히 『산림원칙성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의 실천계획분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a)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b) 산림의 보호, 보전 및 다양한 기능유지
- (c)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 (d) 산림경영체의 육성 및 민간참여확대
- (e) 관련제도강화 및 능력형성
- (f) 국제협력의 강화

## 計 劃 分 野

## A.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배 경
-----

- 11.9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좁은 반면 산림이 전국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공장, 도로, 농경지등으로의 전용이 진행되어왔으나 최근 인구증가율의 둔화, 유휴농지의 증가, 전용기준의 강화등에 따라 산림감소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임. 앞으로는 산림 총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 11.10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경영여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임도밀도가 낮아 기계화도 매우 부진하며 최근 노임의 급상승등으로 인해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11.11 또한 최근에는 산림의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국민적수요가 증대되면서 산림자원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림, 육림, 경영기반 구축등 체계적이고도 집약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11.12 이러한 경영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국단위의 산림기본계획, 시도단위의 지역산림계획, 개별 임지단위를 대상으로 한 영림계획등 산림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1993년에는 UNCED정신을 반영하여 산림정책의 기초를 “산림의 경제적 자원화”로부터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달성”으로 수정하였는바 이의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관련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목 표

11.13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과 동시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함

## 정책수단

11.14 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이용체계를 입지 여건과 경영목적에 따라 생산임지, 공익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재편함으로써 전용에 따른 산림감소를 최소화하고 산림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또한 그린벨트등 전국 모든산림에 대한 기능별 관리를 통하여 생태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집약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제정 시행코자 함

11.15 생산임지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보속생산이 가능한 임분구조로 개량하기 위하여 형질이 불량한 산림은 생산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조림 해나가며, 공익임지는 도시공해방지, 수원함양, 국토보전, 경관조성, 휴식처 제공등 각기의 기능에 적합한 산림관리 방법을 개발적용해 나갈 계획임

11.16 산림의 온실가스의 흡수, 저장 능력을 제고하고 생태적 건전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공림은 조림후 벌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육림작업을, 천연림은 이용가치가 높은 활엽수림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육림관리를 실행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여 나갈 것임.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임분조성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11.17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산주 소유산림을 적정 규모의 협업체를 조직, 공동생산·공동판매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독립가등 중·대규모산주들은 자영이 가능하도록 세제, 금융, 기술등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수익율을 제고토록 유도함
- 11.18 한편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고 그 경영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공·사유림과의 교환 또는 사유림매수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아울러 국유림경영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원의 강화와 임도등 경영기 반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고자 함
- 11.19 산림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기능을 고도로 발휘케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산림을 선정하여 모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B. 산림의 보호, 보전 및 다양한 기능 유지

배 경
-----

- 11.20 우리나라 국민은 전통적으로 자연애호사상이 강하고 과거 산림황폐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한 바 있어 산림보호 및 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휴식공간등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산림의 보호, 보전 및 다양한 기능의 유지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11.21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산림보전을 위해 사방 및 조림사업을 실행한 바 있으며 수원함양, 풍치보전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림, 천연수목의 보호를 위한 천연보호림,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조수보호구 그리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 및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또한 산불 및 병해충방제를 위한 산림항공대의 운영, 생물다양성의 현지의 보전을 위한 산림박물관, 수목원 및 야생동물원을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음. 또한 국민의 야외휴양처 제공을 위해 자연휴양림 및 임간수련장을 조성 운영하여 오고 있음

11.22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지세가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있고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어 산사태와 토양유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천이 초기단계의 산림이 대부분이고 임내에 낙엽등 연소재료가 많이 축적되어 병충해와 산불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최근 산업발달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도 우려되고 있음

11.23 따라서 이와같은 피해요인에 대처 산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태계로 유지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정책강화가 필요함

목 표
-----

11.24 산림의 생산력을 유지증진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휴식공간의 제공등 산림의 환경기능제고를 위하여 산림생태계관리를 강화함

- 11.25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보전기능의 항구적 유지증진을 위하여 황폐 산림의 우선복구와 황폐우려지에 대한 예방사방을 강화하고 기시공지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재황폐화를 방지함
- 11.26 산림자원의 유전자, 종, 생태계등 생물다양성 실태파악을 위한 산림환경생태조사를 실행하며,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개발함. 또한 야생동식물등 생물다양성의 현지내보전제도로서 천연보호림, 조수보호구등과 현지의 보전시설로서 산림박물관, 수목원, 야생동물원의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충함
- 11.27 산불피해는 산불감시조직 및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조기 진화체제를 구축하며 특히 산림항공대의 조직과 장비를 강화해 나감. 산림 병해충은 예찰조사 및 발생예보제를 운영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를 도모하며 가능한 한 저독성약제의 사용 또는 천적등 자연생태계보전 위주의 방제를 견지함
- 11.28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성우 등 대기오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오염에 의한 토양, 식생등 산림생태계 변화과정을 파악하며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방지 및 회복을 위한 실연사업을 추진함
- 11.29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수질오염 및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원지역 산림을 수원함양림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함(이 내용은 제13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됨)

- 11.30 도시와 공단주변의 산림을 생활환경보안림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소음, 분진등 환경오염피해를 줄이고 도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 11.31 자연휴양림등 산림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한편 산림의 자연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11.32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림은 풍치보안림으로 지정관리하며, 도심과 도로변에는 향토성이 뛰어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함
- 11.33 산림의 타용도 전용시 적용할 산림전용타당성평가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폐경지등 한계농지의 산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산림감소에 대처하고 산림의 환경가치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이에 대한 계량화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

### C.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배 경
-----

- 11.34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유령림으로서 주벌에 의한 대경재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간벌, 수종갱신벌채, 피해목벌채에 의한 소경재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11.35 전국의 평균 임도밀도는 0.9m/ha로 낮은 편이나 대부분의 산림이 기계화가 어려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작업 여건과 수집체계

가 매우 불리함. 더우기 소경재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최근 이농현상으로 인한 임업노동력의 부족, 노임의 급상승등으로 임목생산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11.36 그러나 목재수요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증가하여 총수요의 90%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나 목재도입여건은 세계적인 환경보전추세의 확산과 주요목재수출국의 자국 목재산업육성정책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목재자급율 제고를 위한 국내 산림육성 및 목재이용도 증진이 요청됨

11.37 한편 수실류, 버섯, 산나물등 비목재 임산물생산이 농산촌의 단기소득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육성되어야 함

11.38 이와같은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목재자급도의 향상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당면 주요과제가 되고 있음

목 표
-----

11.39 산림에서 산출되는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판매등 제 여건을 개선발전시킴으로써 목재자급도를 제고하는 한편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정책수단
------

11.40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도시설을 2010년까지 10m/ha로 늘려나가고 임업기계화를 촉진함

- 11.41 우수한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임업기능인 훈련제도 및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양성된 기능인을 중심으로 국유림 및 민유림 작업단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이들을 산림작업 및 산촌지역개발의 주 인적자원으로 활용함
- 11.42 목재가공산업의 신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임산물집하장을 확대설치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한편 임업협동조합에 목재시장정보망을 구축하는등 유통체계를 확립함
- 11.43 소경재, 간벌재등의 이용촉진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용도 및 새로운 수요창출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목재소비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목재이용도를 증진함
- 11.44 수실류, 버섯류, 산채류, 분재, 야생화등 단기 임산물의 신제품 육성, 재배기술의 개발보급등을 통해 임업소득을 제고함

D. 산림경영체 육성 및 민간참여 확대

배 경
-----

- 11.45 사유림의 경우 영세한 소유구조로 인해 경영단위에 크게 미달할 뿐만아니라 노임은 급상승한 반면 국내산 목재가격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산주의 경영의욕은 크게 떨어져 있음
- 11.46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은 국토녹화의 조기달성을 위해 온국민을 참여케 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왔음. 산촌민의 지역산림보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부락단위로 산림계를 조직하여 주변산림을 보호케 하는 대신 송이, 임산연료등 산림부산물 채취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식목일과 육림의 날을 제정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학교, 회사, 각급 민간 단체들이 조림과 육림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11.47 한편 산주들의 경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대규모 산주들을 대상으로 독립가를 선발 육성하는 한편, 소규모 산주들에 대한 협업경영사업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과거 관주도적으로 조직된 산림조합을 순수한 산주들의 조직인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 산주들의 자발적인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11.48 그러나 소유규모의 영세성, 경영기반의 취약성, 임업생산의 저조 등 사유림경영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상존해 있으며,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산주 및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목 표

11.49 전국 산림, 특히 사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조장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산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국민들의 산림보호 및 육성에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함

## 정책수단

11.50 영세산주들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협업체를 조직,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임업협동조합의 기본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협업체 가입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목

재생산은 물론 표고, 산채, 분재, 양봉등 단기소득사업과 연계된 다각적 경영을 유도하고 세제, 금융, 기술등 지원을 강화함

11.51 중·대규모 산주와 전업임업종사자를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로 선발 육성하고 이들의 경영임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임업협동조합에 배치된 기술지도원으로 하여금 경영기술 및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등 종합지원체제를 마련함. 아울러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경영실태의 분석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11.52 조림, 육림 및 산림보호활동에 일반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식목일 및 육림기간 행사시 조림 및 육림대상지의 알선, 대국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유림분수림제도의 개선등 일반국민의 산림경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함

#### E.관련제도강화 및 능력형성

배 경
-----

11.53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종래의 황폐산림복구와 목재생산위주에서 앞으로는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림편익을 고도로 발휘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정책입안, 계획수립, 사업실행 및 평가의 각 단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업종사자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11.54 우리나라 산림행정 및 관리조직으로는 중앙정부에 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산림청이 있으며, 그 산하에 영림서 조직이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시·도에는 산림국 또는 산림과가, 시·군에는 산림과 또는 녹지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11.55 산림 및 임업관련 연구기관으로는 중앙에 임업연구원과 임목육종연구소가, 각도에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으며, 임업공무원 교육기관으로는 임업연수원이 있음. 또한 전국 20여개 대학에 임학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임업협동조합조직으로는 중앙회, 도지회 및 각군에 임업협동조합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유림협업경영지도소가 각도에 설치되어 있음

11.56 한편 산림관련 주요 법규로는 산림자원의 보호, 보전 및 육성 등 산림업무전반에 걸쳐 규정한 산림법, 황폐지복구를 위한 사방사업법, 야생동물의 보호·육성을 위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산주의 권익보호와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한 임업협동조합법등이 있음

11.57 최근 산림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림청과 임업연구원에 산림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93년에 야생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야생조수의 보호·육성제도를 강화하였음. 또한'94년에 산림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산림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제도의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의 국내산림여건의 변화 및 사회적 요청과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증대되고 있는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산림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으로 새로운 정책환경에 걸맞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목 표
-----

11.58 산림관리조직, 법규등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임업종사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제를 확립함

정책수단

11.59 국가기관의 정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림의 다양한 편익을 고도로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구조를 합리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특히 국유림 확대정책에 걸맞는 국유림 관리조직을 강화함

11.60 산림의 보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림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함

11.61 산림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되도록 사유림 산주에게 재정, 세제지원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관련분야 연구가 심화발전되도록 산·학·연이 연계한 공동연구 체제를 강화함

11.62 임업종사자의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능력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임업교육을 강화함. 특히 산림업무가 동태적인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어느 분야보다 현장기술이 중요 하므로 일선경영자 및 전문인력(임업기능인)의 육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임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 운영함

11.63 사유림 산주에 대한 임업기술 및 산림경영 전문지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기함

## F. 국제협력의 강화

배 경
-----

- 11.64 개별국가의 산림황폐는 그 악영향이 해당국가는 물론 인접국과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산림의 보호,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국제협력은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수적임
- 11.65 우리나라는 그간 한·독 임업기술협정 체결, 한·인니 임업협력협정의 체결등 국가간 임업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일본, 중국과의 전문가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와 1991년에 임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등 국가간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음
- 11.66 1980년대부터는 조림, 사방, 산림보호, 산림경영등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의 임업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오고 있음. 또한 FAO, ITTO 등 산림관련 국제기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 11.67 리우회의 이후 지구적 차원의 산림문제해결을 위하여 산림원칙 성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지식, 정보등의 교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국가간, 지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림관련 각종 협약의 이행과 국제기구 활동에 계속 참여하면서 산림원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할 것임

## 목 표

11.68 산림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림의 보호,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함과 아울러 지구적 차원의 산림보전에 기여함

## 정책수단

11.69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산림관련 각종 협약 및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범 세계적 합의 형성에 기여함

11.70 우리나라의 산림황폐방지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하르로서 지구산림보전에 기여함. 이를 위해 앞으로 개도국에 동분야 전문가의 파견등을 적극 모색함

11.71 목재도입방식을 구매도입위주에서 해외조림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양자간, 다자간 임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림분야 지식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아국 및 관련국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임업발전에 기여함

11.72 국제협약의 기본정신에 반하여 임산물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세계적으로도 임업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경영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임산물 교역이 촉진되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적극 지원함

## 第12章 沙漠化 및 旱魃退治

### 序 文

- 12.1 사막화 및 한발은 건조지역, 반건조지역 및 건조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황폐화 현상의 하나로서 이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인간의 활동과 극심한 기상이변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음. 사막화는 전세계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토지생산력이 약화되어 전세계 육지면적의 4분의 1과 세계인구의 6분의 1이 영향을 받고 있음
- 12.2 기상이변등 자연재해로 인한 토양유실과 사태, 산림환경의 악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농목축분야에서 토지의 남용등으로 인한 토지황폐화는 해당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따른 토지이용 및 토지생산력의 감소는 농작물 생산 및 축산활동을 제한하고 토양보호 및 복구사업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게 됨
- 12.3 과거 우리나라는 한국동란등 사회경제적 변동기에 극심한 산림파괴로 인해 산사태, 한발, 홍수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그러나 제11장(11.2 및 1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황폐산지의 복구등 치산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80년대에 들어서는 산림황폐로 인한 토양 악화문제는 해결하게 되었음
- 12.4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 도시화의 확대로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산업폐기물 증가에 따라 토양생산력이 악화되면서 농지등 토지 황폐화 발생 가능성이 있음
- 12.5 또한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 토지이용 상황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바, 폐경지·휴경지의 증가, 공장, 택지, 도로 및 각종 레저·스포츠시설에 따른 산림의 타용도 개발 및 대기오염등에 의한 토양황폐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계절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한발현상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2.6 우리나라는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토양황폐화 방지 분야에 있어 경험, 기술, 정보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량을 우리나라의 능력범위내에서 사막화 및 한발 피해가 심각한 국가 및 지역에 제공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7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막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지는 않으나 국지적, 계절적 토양황폐화 현상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접국으로부터의 대기이동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장에서의 계획분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a) 황폐지 복구 및 생태계 보전

(b)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計 劃 分 野

## A. 황폐지 복구 및 생태계 보전

### 배 경

12.8 우리나라는 산사태나 한발 등 여러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황폐지 복구를 위하여 조림 및 사방사업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온국민의 참여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국이 되고 있음. 황폐지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황폐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황폐 가능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보완조림 및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예방단계에 이르고 있음

12.9 그러나 성공적인 조림 및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기상이변 등에 의한 한발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악화 및 황폐지의 발생은 감소한 반면, 고도경제성장 및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의 타용도 전용과 대기오염에 의한 토양악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또한 사회경제적인 구조변화와 농·산촌의 이농현상에 따른 폐경지 및 한계농지의 황폐화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12.10 특히 우리나라는 산악국가로서 경사가 심한 지역이 많으며 기후적으로 토양침식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지니고 있어 산림생산력 저하 및 토양악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12.11 토양황폐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분산 황폐지에 대한 복구와 황폐가능

지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토지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안정화를 도모함

정책수단

12.12 소규모 분산황폐지 및 황폐가능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이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복구방안을 수립 시행함

12.13 황폐복구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필요시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황폐 현상을 방지함

12.14 황폐복구지의 토양을 안정시키고 생산력을 유지 증진하는 한편, 황폐가능지에 대한 예측 및 예방기술 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특히, 대기오염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토양악화방지를 대처하기 위하여 산성비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생태계 복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함

B.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배 경

12.15 사막화현상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특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적 문제이나 이들 지역에 있어서 사막화의 진전은 자국의 환경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인접국과 세계환경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12.16 그러나 사막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으로서 재정, 기술등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지구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러한 인식하에 『의제21』(제12장 12.40)에서는 94년 6월까지 국제협약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된 바 있음. 따라서 각국은 국제기구에 협력하여 사막화방지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12.17 우리나라는 과거 치산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황폐지 복구를 위한 조림, 사방분야에 있어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왔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은 사막화를 겪고있는 국가의 문제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능력범위 내에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은 물론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목 표
-----

12.18 사막화 및 한발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황폐지 복구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확대 지원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함

정책수단
------

12.19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사막화방지협약의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동 협약정신에 따라 사막화 및 한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함

12.20 동북아시아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 감 .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양자간 협의 채널을 활용해 나가는 한편, 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역내 국가간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모니터링 센터의 설치등을 모색함

12.21 우리나라의 능력범위내에서 사막화와 한발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의 황폐지 복구를 위한 조림 및 사방 등 생태계 복원, 대체에너지 개발, 연료림 조성 등 산림관리분야 및 농지용수개발 관리분야등에 대한 기술 및 정보제공을 확대함. 이를 위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능력형성을 위해 관계관을 초빙, 기술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전문가를 이들 국가에 파견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第13章 持續可能的 山地開發

### 序 文

- 13.1 산지는 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주요 지역임. 그러나 산지는 경사가 심하여 토양침식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생태계 일뿐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극히 민감한 지역임. 또한 경작과 접근면에서 불리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임
- 13.2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지림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산악국가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은 산지를 대표하는 산림과 이를 배후 자원으로 살아가는 산촌민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음
- 13.3 제11장(11.2 및 11.3)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산림황폐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온 국민이 합심노력하여 산지 생태계를 회복시키므로써 앞으로는 이를 경제적으로 가치높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 13.4 이와같이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나가고 객관적인 산지관리를 도모하려면 자연생태계로서 산림자원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임. 토양, 수자원 분포, 동식물상등 산림자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과학적인 산림관리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주택, 공장, 도로, 레저, 스포츠시설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시 많은 경우에 있어 보전과 개발문제가 양립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식수원 오염문제와 더불어 맑은 물 공급 기반의 확충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의

증진이 요청되고 있음

13.5 지속가능한 산지개발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산지 지역 주민의 문제임. 60년대이후 지속된 고도경제성장은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면에서는 공업우선정책을 택함에 따라 산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지역,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음. 따라서 이 지역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하고 심각한 인구유출로 인해 산지관리의 주체를 상실하게되어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을 달성할 수 없음은 물론 국토관리비용의 증대와 함께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

13.6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산악국가로서 산림이 산지를 대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은 산림황폐방지(제13장)분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장에서의 실천계획분야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a) 산림생태계 관리체계 구축
- (b) 수원함양기능증진을 위한 유역산림관리강화
- (c) 산촌지역사회 개발 촉진

## 計 劃 分 野

### A. 산림생태계 관리체계 구축

배 경
-----

13.7 우리나라 산림식생은 졸참나무와 신갈나무등 참나무류와 서어나무류, 단풍나무류를 주로 하는 온대낙엽활엽수림대에 속해 있으나 침엽수

인 소나무가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음. 그러나 남해안 및 도서지방에는 상록활엽수가 자라고 있고 고산지대와 북부지방에는 한대침엽수가 자라고 있음

- 13.8 한반도는 온대기후대에 속하며 우기가 있는 계절풍의 여름철과 몹시 추운 겨울철로 구분됨. 연평균 기온은 섭씨 3~16도이며, 연강수량은 600~1600mm분포를 나타냄. 지층의 약 66%가 신생대에 형성되었으며 화강암과 편마암이 모암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변하기 쉬운 대륙성 기후와 여름철의 폭우로 인해 토양은 풍화작용과 침식이 일어나기 쉽고 산림토양의 대부분은 산성의 사양토임
- 13.9 산림생태계관리에 있어 과거는 산림황폐가 큰 이슈가 되었으나 근래에는 봄·가을철의 빈번한 산불, 솔잎혹파리등 산림병해충방제가 주요과제가 되고 있음. 아직은 공단등 일부지역산림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하나 산성우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사회발전에 따른 산림의 타용도 전용시 적용할 보다 객관적인 기준정립이 요청되고 있음.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수원함양, 대기정화, 휴양, 야생동식물보호등 산림의 환경기능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되어 산림자원의 과학적인 관리가 요청됨
- 13.10. 식생환경이 다양하고 토양 및 기후조건상 취약한 산림생태계를 각종 피해요인으로부터 안정되게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지개발을 도모하려면 산림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함

목 표
-----

- 13.11 산림생태계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와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자원의 양·질적 변화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감시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산림생태계관리체계를 구축함

## 정책수단

- 13.12 과학적 산림관리의 기반이 되는 산림자원조사를 강화함. 우리나라는 10년 주기로 전국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여오고 있으며 매년 산림병해충예찰조사 및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여오고 있음. 또한 지난 '94년부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림동식물 자원의 항구적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음. 한편 '95년부터는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입지조사(정밀산림토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13.13 산불, 병해충, 대기오염등 각종 재해요인으로부터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제방법 및 피해예측모델, 산림의 타용도 전용시 적용할 산림영향평가방법, 원격탐사기술을 응용한 산림자원조사방법,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저장능력, 맑은 물 공급 및 휴양등 다양한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산림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함
- 13.14 산림생태계의 양·질적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감시하고 산림경영 및 산지개발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의 조사 및 연구개발결과와 지리정보시스템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산림생태계관리체계를 구축함

### B. 수원함양기능증진을 위한 유역산림관리 강화

## 배 경

- 13.15 국민경제의 성장과 산업발달에 따라 물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

으나 환경악화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13.16 현재의 용수공급 가능량을 수요증가량과 비교하면 21세기에 용수 부족현상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용수공급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3.17 그러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천은 길이가 짧고 급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강우량의 집중현상이 존재하며 댐건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 용지수몰로 인한 가용토지의 감소, 수질악화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음

13.18 용수공급량을 확대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의 항구적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제고하는 산림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목 표
-----

13.19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강유역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감으로써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에 대처, 맑은 물 공급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함

정책수단
------

13.20 전국 주요 강유역의 취수장을 중심으로 깨끗한 물 공급에 직접 관련 있는 산림을 수원함양림보안림으로 확대 지정하여 특별관리함

13.21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형, 지질, 산림상

황등을 고려하여 수원함양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함

13.22 산림조성은 수원함양효과가 높고 유역특성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택 하고 육림, 벌채등 산림관리기술개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함

13.23 수원함양보안림내에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도입을 차단하고 토양유실이 우려되는 능선부, 급경사지, 계곡부등에 산지사방, 사방댐, 야계사방등 유수관리시설을 확충함

13.24 산림의 수원함양기능평가 및 계량화를 위해 이수댐등 유량측정시설을 확충하고 관련분야 연구를 강화함

13.25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산림사업비의 보조등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감. 이를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및 물 수요기관등이 협력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는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 발전 시킴

### C. 산촌지역사회개발 촉진

배 경
-----

13.26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도시거점중심의 공업우선정책을 선택하므로써 고도경제성장은 이룩하였으나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도시지역은 과밀화된 반면 농산촌지역은 과소화현상을 초래하였음

- 13.27 더우기 60-70년대 농업정책은 주곡증산에 목표를 두고 많은 산지를 계단식 전답으로 개간하였으나 경지가 소규모 분산 배치되어 있어 신기술 도입과 규모화에 한계가 있음
- 13.28 산촌지역은 지리적 험준성, 입지적 벽지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대표적인 조건불리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지형 및 자원여건상 산림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생활환경 및 하부기반시설이 열악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인구 유출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임
- 13.29 이러한 산촌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지의 황폐화를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산촌지역개발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목 표

- 13.30 산촌지역의 산림과 한계농지등 부존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다목적 소득원을 개발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 정책수단

- 13.31 산촌지역의 자원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림업, 목축등 다양한 지역특산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을 주산단지로 지정하여 생산, 저장, 가공, 유통등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함. 이 지역에서 개발가능한 품목으로는 목재생산을 포함하여 밤, 개암, 호도등 수실류, 표고,

송이등 버섯류, 양봉, 분재및 야생화 재배, 취나물, 고사리, 더덕등 산채재배, 가축 및 야생동물의 임간방목등이 있음

13.32 한편 산촌지역의 최대부존자원인 산림을 관광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도시휴양수요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함. 일반관광지와 달리 자연경관을 유지증진하고 수려한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함

13.33 산촌지역이 가지는 국토보전, 농림업경영등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 유지가 중요하므로 주택개량, 상하수도, 도로망의 확충, 의료, 교육시설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정주기반과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13.34 이와같은 산촌지역개발을 위해 '95년에 시범산촌마을조성을 추진하고 전국산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확대해 나갈 계획임

## 第14章 持續可能的 農業 및 農村開發

### 序 文

- 14.1 농업은 식량 등 인류의 기초 생필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산업으로 농촌사회의 주된 산업이며, 부수적으로 농업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유지·발전되고, 환경보전 문화적 전통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보전·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14.2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의 근본 목적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식량생산성을 증가 시키는 것인 바, 이를 위하여 농업생산에 대한 교육 및 경제적인 동기부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상업적 영농을 위한 기술의 개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고용과 소득원의 창출, 적절한 자연자원 보존 활동과 환경보호 등을 포함함
- 14.3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인구의 감소와 부녀화·노령화, 타 산업분야와의 상대적 소득격차 등으로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요는 점점 다양화 되면서 증가추세에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그동안 유지해온 농업보호 장치가 상당폭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있어 농업의 안정 생산기반 유지에 더욱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
- 14.4 또한 그동안의 농업정책은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증산이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수확 품종의 개발보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료·농약사용의 확대, 축산업의 육성, 기계화의 촉진 등이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러한 정책이 농업과 농촌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이었음. 최근에 이르러서야 주로 축산폐수 배출규제 등

제한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속개념이 반영된 종합적인 농업·농촌환경 보전형 농업정책은 구체화 되지 못한 단계임

14.5 이러한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4년 2월에 농어민,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구성, 농정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1994년 6월 14일 지속개발 개념을 반영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방안”을 수립 발표하였음. 이 계획에는 우리 농업도 개방화 시대의 국제경쟁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유지·육성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과 농어촌 생활환경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음

14.6 본 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의 실천계획은 (a) 생산자원의 효율화, (b) 농업기술개발과 자원의 보전이용, (c) 지속개발 생산수단강구, (d)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추진과 주민참여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計 劃 分 野

### A. 생산자원의 효율화

#### A)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

배 경
-----

14.7 농지제도는 식량생산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본 제도임.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1950년 농지개혁 이래 가족농 보호에 중점을 둔 농지 취득 제한과 1972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용제한을 근간으로 규제위주로 운용되어,

(a) 농가간의 형평유지와 주곡자급 달성에는 기여 하였으나,

(b) 농정의 과제인 규모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을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미흡하였고,

(c) 농지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 또는 불필요한 규제에 국민을 불편을 초래하였고,

(d) 농지제도 운용에 대한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운용되어 왔었음. 이에 따라 기존 농지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소유 및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 표
-----

14.8 농지가 식량생산의 안정성, 생산 작목체계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농지제도를 새로이 정립하고,농지이용 체계를 개편토록 함

정책수단
------

14.9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을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의 주체로 육성해나가기 위하여,

- (a) 농민과 농업법인에 의한 농지 소유원칙을 정립하고,
- (b)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토록 하며,
- (c) 자기가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부과, 농지 임대차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혀나갈 계획임

14.10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안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 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 시행토록 하고,

- (a) 농지의 소유권 이전, 교환, 분합, 임대차 등을 통한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추진 하고,
- (b)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로 보전해 나가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다양한 토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용규제를 완화하며,
- (c) 준 농림지역중 2, 3차 산업으로의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농어촌산업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농지 이용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B)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수자원 관리

배 경
-----

14.11 식량생산의 지속성은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크게 의존함. 수자원

의 개발과 관리방법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경종농업 뿐만 아니라 가축의 물 공급, 내수면 양식업, 수생 생태계 보전 등 농·수산업 뿐만 아니라 한발,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14.12 이러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종합적인 농업용수 개발과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목 표
-----

14.13 농어촌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로 식량생산의 안정성을 기하고 농업용수 공급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함

정책수단
------

14.14 농어촌 다목적 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 농어촌지역을 수계별 용수구역으로 구분하여 농어촌 용수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대의 물 수요를 추정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룬 개발계획을 수립 할 것임

14.15 항구적인 농어촌 용수를 확보하기위하여 논에 대한 용수개발과 경작로 개설 등의 생산기반을 정비토록 함

14.16 농업용수의 오염원에 대한 규제와 지역주민의 감시 활동을 통하여 적정

농업용수를 보호 관리해 나가고,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대폭 확충, 농업용수 조사결과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임. 아울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수자원관리 관련사업을 통하여 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농어촌 지역의 소득원 개발과 환경개선을 조화시킨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C) 영농 및 농외 취업기회의 다양화

#### 배 경

14.17 앞으로의 농업은 미래의 식량수요 증가에 부응하면서 한계지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함. 화학비료 등 외부생산 자재를 다량 사용하고 있는 현존 영농체계는 환경파괴 및 시장불안을 조장할 위험이 크므로 환경 위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농업의 내부생산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생산체계를 다양화 해야하고, 이러한 영농체계의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한계상황이 존재할 경우, 농민의 소득증대는 농외취업을 통하여 보완되도록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14.18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적 방법에 의해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업생산의 다양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농외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함

정책수단

14.19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앞으로 식량작물 품목의 수입을 신규로 허용할 경우 작목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 식생활 수요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생산의 다양성이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논·밭 전환, 성토, 질토 등 농지의 이용도를 저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질변경을 자유화 하므로써 농업생산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기해 나갈 계획임

14.20 아울러 우리의 농업현실은 농업생산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농공단지를 확대하여 농촌 노동력의 취업기회를 늘려 나가고, 재촌(在村)취업이 용이하도록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대할 계획임. 또한 농어촌지역 자연경관과 부존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한 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D) 생산성 증가를 위한 농촌에너지 전환

배 경

14.21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의 보급·확대와 농어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농촌 에너지의 소비구조도 유류와 전력 등 고급에너지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 온실 재배 면적 증가와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난방용 보일러의 사용 증가 등에 따라 농촌의 유류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태양에너지 등 자연에너지와 바이오매스를 농촌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 일부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음.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촌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혼합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목 표

14.22 환경조화형 농업 육성을 위해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과 이용의 촉진 및 농촌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농작업기술의 개선으로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효율을 높혀나가고, 농가 및 농업관련 산업의 농촌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체제를 확립토록 함

## 정책수단

14.23 농촌에너지 정책은 대기, 토양 및 수질환경 보전 등 여러 분류에 걸친 종합적인 에너지 공급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농촌에너지 사용은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음의 실천계획을 통하여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 (a) 태양에너지, 지하수 등 자연 에너지를 농업생산과 수확후 작업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 온실이용 농작물 재배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온·습도 관리 등 재배관리 방법을 개선
  - 농산물 건조·저장 시스템의 효율화 및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건조·저장 방식의 개발
- (b) 가축분뇨 및 깔짚 등 농축산 폐기물의 퇴비화와 메탄가스 활용 등 대체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 (c) 농용 엔진개량 및 경운작업방법 개선 등 작업기술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및 이용 효율 증대
- (d) 농업, 농가 및 농업관련 산업에 소요되는 농촌에너지의 수급상황과 수요 변화에 관한 정보관리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 (e) 농촌지역에 부존하는 지역자원 관리의 체계화 및 실용화기술을 개발
  - 토지자원, 수자원, 에너지 자원등의 자원관리 시스템 확립

## B. 농업기술개발과 자원의 보전·이용

### A)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배 경
-----

14.24 식량공급의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지속개발여건이 조성되기 위하여는 비용을 적게 들이는 농업생산체계의 확립이 선행조건이 될 것임. 이를 위해서 적절한 농업기술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그동안 농업기술개발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었고, 비 농업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시켜 활용하는 연구체제도 미흡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농업기술개발은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비료·농약 등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투입재의 생산·보급, 국내농업환경에 적합한 신품종과 종축의 개발육성, 생산수단의 합리적 방법과 효율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균형된 기술개발이 요구됨

<p>목 표</p>
------------

14.25 기술집약적 농업,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 (a) 품종개량, 한국형 시설자동화, 환경농업등 자원개발과 생산공정 부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농업기술개발을 추진하고,
- (b) 유전공학, 전자제어, 기계설비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업기술 혁신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관 분야별로 동시에 협동연구하는 연구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 (c)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농어민과 전문가가 현장에서 공동 연구하는 실용기술 개발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임

B)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 배 경

14.26 농업용 식물 유전자원은 인류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태임

14.27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쉽게하는 방법의 개발, 보전지역간 정보망 구성, 보호지역 이외에서의 유전자원 수집과 유전자은행 이용방법 등 종합적인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계획 수립이 요구됨

## 목 표

14.28 항구적인 농업생명과학 연구의 기초자료 확보 및 농업생산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내외 유전자원의 현황파악, 조사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용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함

## 정책수단

14.29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a) 국내 식물생태계 조사 및 국외 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연구

- (b) 외래종의 유입상황을 감시하고 그 영향을 평가
- (c) 유전자원의 보존시설 완비와 효율적인 자원 저장법 개발
- (c) 수집자원의 심도있는 특성 평가로 식량작물로써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식물체를 농업체계에 도입하여 증산 및 재배 식물의 다양화 도모
- (d) 식물육종과 종자생산 능력을 강화
- (e)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전산화 구축

C) 동물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배 경
-----

14.30 축산물의 질적·양적인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명공학의 농업생산 체계에의 도입과 현존 동물의 다양성을 보전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국민의 육류 등 축산물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로 생산성·경제성이 고려된 축산발전 정책으로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개발 사업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특히 재래종의 경우 사회, 문화적 가치 외에도 적응성, 질병 저항성, 특정 용도에 대한 이용가능성 등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존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 목 적

14.31 축산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가축의 품종을 목록화하여 이들의 자원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동물과 재래종 가축의 보전대책을 강구토록 함

## 정책수단

14.32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실천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a) 모든 가축의 품종 목록조사, 유전특성 규명 및 정보전산화 구축
- (b) 동물유전자원의 품종 육성전략 및 관리계획수립
- (c)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과 재래가축의 정보기반구축, 보전대책 강구

D) 오존층 파괴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배 경

14.33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 단파장 자외선의 투과가 증가할 경우 식물의 생육이 왜소화 되고, 엽면적이 감소되며, 엽록소의 파괴로 광합성의

효율저하, 핵산 및 염색체 단백질의 파괴 등을 유발, 전체적인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상공의 오존량 감소에 대비한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영향과 그 대책은 연구되지 않고 있으나 2000년대말에 오존층 파괴가 최대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등을 고려할때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의 투과량이 증가할 경우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연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목 표

14.34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층의 파괴에 의한 자외선의 투과 증가가 동·식물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음

정책수단

14.35 현재 우리나라 상공의 오존전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CFC 가스배출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이 더욱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선진국 및 관계 국제기구의 연구결과의 활용, 자외선 투과량 변동에 따른 농작물 및 동물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체계를 보강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

C. 지속개발 생산수단 강구

## A) 토양의 보전 및 복구와 지력증진

### 배 경

- 14.36 토양의 황폐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심각한 환경문제임. 염류화, 배수불량, 토양오염 및 토양 비옥도의 저하 현상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토양 황폐화 문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식량·연료의 수요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 생산력 저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큼
- 14.37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 황폐화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의 증가, 농공단지·폐광·도시지역·공장지대 폐수의 농경지 유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나 정확한 농경지 오염 현황과 그 원인이 조사·연구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목 표

- 14.38 토양의 황폐화 진전지역, 범위, 정도 등 토양보전 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황폐화 토지의 복구, 지속개발을 위한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함

### 정 책수단

- 14.39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 오염도 조사, 전국 주요지역의 관개수질, 시설재배지 지하수질, 농경지역 강우성분 조사 등을 통하여 농경지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농경지오염원 유입 근절대책과 오

염된 농경지의 개선 또는 작목전환 등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

14.40 황폐된 토양의 개선 및 토양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

(a) PH 6.5 미만의 산성밭, 유효규산함량 130 PPM 미만의 논을 대상으로 석회 및 규산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

(b) 모래질 논, 습한 논 등 생산력이 떨어지는 논, 병해충 및 재해상 습지, 채소·원예 연작지역 및 토양환경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한 객토 사업을 지원

(c) 농약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맹독·고독·발암성 농약, 작물·토양잔류 및 수질오염성 농약 등은 농약 품목고시 대상에서 제외

- 농약안전 사용 교육 및 홍보 추진

(d) 환경보전형 비료의 개발·보급

(e) 유기질 비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

-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로 부산물 비료 생산 확대

- 축산분뇨 등 농업부산물의 비료화를 적극 활용

- 미생물을 이용한 비료의 개발 추진

B) 종합병해충 관리

배 경

14.41 세계 식량수요는 2000년까지 50%가 증가하고 2050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병해충에 의한 수확전과 수확후 작물손실은 약 25 ~ 50%에 이룸. 가축의 건강을 해치는 병해충도 상당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농업 병해충의 구제수단으로서 화학적 방제가 일반화 되어있으나 이의 과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이 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음. 생물학적 방제, 기주식물의 저항성 증대, 적절한 재배법의 도입과 농약사용의 감소로 이루어 지는 종합병해충 관리체계의 확립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임. 종합병해충 관리는 수량성 보장과 비용절감, 환경 보존, 농업의 지속성 유지에 기여할 것임. 종합병해충 관리는 특히 유독하고 분해가 힘든 농약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농약관리 제도의 발전과 병행하여 발전되어야 함

14.42 우리나라도 병해충 방제시 대부분 화학농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ha)당 사용량도 계속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소비자의 농작물 안전성 요구는 계속 증대하고 있음. 화학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해충 종합방제 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목 표

14.43 작물 생산성의 감소와 병해충 방제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화학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과 대농민 방제기술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

## 정책수단

14.44 병해충 종합 관리사업은 저독성 농약의 저가 개발과 농민이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인식과 실행여부에 달려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고독성 농약의 생산규제와 저독성 농약의 개발촉진, 공동.항공방제, 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 체제를 과학화하는 등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을 정착시켜 나가 고, 한편으로는 농민 스스로 저독성 농약의 선택과 최적의 방제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농약의 보관, 살포, 처리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D.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추진과 주민참여

#### A) 농어촌대책의 수립

## 배 경

14.45 우리 농업은 쌀 농사 중심의 영세한 영농규모와 질 보다는 양을 우선으로 하는 증산위주의 생산방식에 중점을 두어온 과정에서 생산기반, 기술개발, 수급변동 등을 감안한 농업경영과 유통체계 등이 비농업부문의 발전수준보다 뒤떨어지고, 국제적인 개방화 추세를 따르지 못한 결과, 농업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14.46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 (a) 농업 구조개선을 통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시켜 기초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생산방식을 국민의 변화된 수요에 부응토록 고품질 생산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재생 가능한 생산여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 (b) 농민의 농촌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농민의 영농활동에 자신감과 자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목 표

14.47 농어촌 대책은 우리농업을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음. 아울러 이 농어촌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생산부와 농어촌 생활환경 분야에 반영하여 국내농산물 수요를 균형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기반을 유지토록 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 정책수단

14.48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의 최우선 목표는 식량안보의 달성이며,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임.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는 농산물 공급선이 확대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인구증가와 이를 따르지 못한 식량공급원의 제약으로 장기적으로는 식량공급의 불안정성도 상존함. 국민의 식량공급은 가용자원의 기반 정비,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내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특히 우리나라의 기초식량인 쌀의 경우, 경지정비와 이를 통한 기계화의 조기실현,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영규모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한 생산·가공·유통의 일관화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기해 나갈 계획임

14.49 농업생산의 주체는 농민임. 우리 농업을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는 프로정신을 가진 가족중심의 전업농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이를 위하여 쌀, 과수, 축산 등 분야별로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정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농·수산 전문학교 설치, 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수산 고교 육성 등을 통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중 임

14.50 아울러 지속개발 개념이 반영된 농업·농촌개발 종합대책에는 다음의 실행계획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획 각 분야 실천계획에 제시되어 있음

- (a) 농민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계열화로 농업을 1, 2, 3차 산업의 복합산업으로 육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
- (b)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단위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농공단지 종말처리시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연자원의 보전기반을 구축
- (c) 농업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관련 산업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 종합 정보망을 구축
- (d) 농어촌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환경보전형 농업 및 농촌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정책, 생산·가공·유통 등에 농민과 농민 단체의 참여를 확대

#### B) 지속적 농업을 위한 주민참여 장려

배 경
-----

14.51 지역사회의 보유자원에 대한 관리영역을 넓히기 위하여는 경제 및 인적자원에 대한 유인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함. 동시에 지역사회의 장단기적 요구를 일관되게 충족 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부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농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용자 단체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조능력이 강화되도록 농촌지도

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 적

14.52.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공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위하여 농촌지도 조직의 운영능력 강화, 의사결정 체제의 분권화를 촉진하는 데 있음

정책수단

14.53 농림수산 행정조직을 지역사회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인 농정지원 체계로 운영함

(a) 농어민 불편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농어민의 불편사항을 연중 청취하고, 이를 농정시책에 최대한 반영

(b) 농어민의 여론을 정기적으로 수검하고 농정추진상황을 확인·점검

14.54 농림수산 관련 행정조직을 개방화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게 운용할 계획인 바,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등 관련조직을 지방화의 추세에 맞도록 농어촌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시·도와 시·군 등 지방행정 조직의 농어촌발전 계획수립과 조정기능도 시·군의 농어촌발전 심의회 등을 활용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며, 관련 정부투자기관과 단체의 기능도 농어촌발전 관련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 운용할 계획임

- 14.55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농업 10대 실천과제를 선정, 우선 농촌지도 공무원에 대한 환경농업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농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第15章 生物多様性保全

### 序 文

- 15.1 우리에게 필요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는 유전자, 종, 개체군, 생태계의 다양성과 변이성에 의존하며 생물자원은 우리들에게 의, 식, 주와 의약품 및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함.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은 대부분 자연생태계에 포함되어 있음. 논, 밭 등 농경지는 생물다양성의 저장소로서 중요한 반면 유전자은행, 식물원, 동물원 및 배형질 저장소는 그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함. 최근의 생물다양성은 주로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15.2 한국의 생물종수는 비슷한 생물지리학적 조건을 가진 다른나라의 생물종다양성과 비교할 때 적은 숫자로서 향후 이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때 많은 생물종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됨
- 15.3 그 동안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보전은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수산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1992년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을 근간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 15.4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으로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과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조수보호구, 천연보호림, 천연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규정한 현지내보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우리 전체 국토중 보호대상토지를 선정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

여 보호·관리하고 있음

15.5 특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민통선지역) 일원은 1953년 휴전이래 약 40여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희귀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연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음

15.6 감소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희귀동·식물 및 생태계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종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야생동·식물” 및 “야생조수”를 각각 지정하여 보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15.7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과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음. RAMSAR협약은 1996년 가입을 목표로 국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B)”프로그램과 지역 및 국가간 환경협력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지구환경보전에 동참하고 있음

15.8 그 간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은 그 동안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하여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호랑이, 표범 및 서호납줄갱이 등 180여 생물종은 멸종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곤충류 및 하등생물은 아직 조사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으나 많은 수의 생물종이 위협에 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됨

15.9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생물다양성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증대 등으로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2년 생물다양성보전의 근간이 되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동법에 의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의 기반을 마련함

15.10 정부에서는 국내의 생물다양성 현황파악이 생물다양성보전의 선결문제임을 인식하여 국내 관련전문가의 총체적인 참여하에 제1차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를 1985부터 5년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제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이 밖에 전국산림 및 야생동물의 서식 실태조사와 습지 생태계 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5.11 향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a) 생물다양성보전 국가전략의 수립
- (b)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사업 추진
- (c)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계획 추진
- (d) 현지내 보전능력 강화
- (e) 현지외 보전능력 강화

(f)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

(g) 생물다양성정보의 관리체계 구축

## 計 劃 分 野

### A. 생물다양성보전 국가전략 수립

#### 배 경

- 15.12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에서는 협약당사국에 대하여 자국의 특수한 상황 및 능력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계획을 국가의 정책결정과 통합시키도록 하고 있음
- 15.13 우리나라의 유사한 계획으로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1994년도에 수립되어 있으나 그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의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15.14 생물다양성보전은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업무는 여러기관, 단체에서 분산·수행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목표, 정책방향, 실천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목 표

15.15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함. 여기에는 생물다양성의 유지·연구·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목표, 정책방향등이 포함될 것임

정책수단

15.16 정부의 정책결정자 및 생물다양성 전문가 등으로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략수립을 추진함. 추진협의체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계되는 모든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 전문가등이 전략수립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최종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함

15.17 1992.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우리나라가 서명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학술단체등 약 60여개 기관·단체 150여명의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음. 향후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보전전략은 이를 토대로 정부의 관련정책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의무사항등을 종합하여 생물다양성보전 국가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15.18 생물다양성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됨. 아울러 국가전략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국가전략에 반영토록 할 것임

(a) 생물다양성의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b)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종, 유전자, 생태계등)의 유지를 위하여 각종

현지내보전지역의 확대와 동·식물원, 유전자은행, 종자은행 등의 현지외보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생물다양성 유지에 관한 사항

(c)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원이용에 따른 편익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사항

(d) 기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생물다양성 관련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체계의 구성등에 관한 사항 등

## B.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사업 추진

배 경
-----

15.19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학적·물리화학적·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연구·조사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만이 생물다양성보전 전략 및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

15.20 그 동안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하여 1986~1990까지 전국토를 대상으로 제1차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를 실시하였음.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조사 프로그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시 법령에 반영되어 정부의 주관하에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였음. 그 밖에도 각 대학, 연구소 및 관련단체에서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생물다양성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5.21 그러나 이러한 조사·연구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연구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로 인하여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수립과 프로그램개발에 애로가 있

음.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경제적인 편익분석 및 계량화는 경제적인 유인수단의 개발에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동참을 위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도 필수적인 사항임

목 표
-----

15.22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생물다양성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도·기술 등을 개발하여 생물다양성보전 능력을 강화함

정책수단
------

15.23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사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각 기관·단체별로 소관분야의 연구를 추진하되 상호연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결정토록 함

- (a)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 (b) 생물다양성보전의 경제적 편익분석 및 계량화를 통한 개발과 보전의 비용비교평가기법 및 경제적 유인수단 개발
- (c) 유용생물자원과 전통적인 방법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이용방법의 발굴, 보존 및 개발
- (d) 자생지 복원을 포함한 현지내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e)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즉 각종 개발사업, 환경오염, 외래종, 생명공

학에 의해 변형된 생물체(LMO)등에 관한 조사·확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f) 식물원, 동물원, 유전자은행, 종자은행, 생물자원보존관 등을 통한 현지의 보전능력 및 기술의 개발

15.24 국내의 생물다양성조사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실시되는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각 생물분류군별 생물종에 대한 연구사업과 멸종위기종, 유용생물종에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 생물다양성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함

15.25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7 프로젝트를 통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생물다양성의 경제적인 편익분석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함

15.26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연구사업은 분야가 넓고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가지이므로 여러학문분야간 공동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연구프로젝트는 규모가 매우 클 뿐더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C.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계획 추진

배 경
-----

- 15.27 자연환경의 질적 악화 개선이 시급함. 즉 산·농지 등에서는 서식지 파괴, 오염심화, 화학물질 과다사용 등으로 인하여 생물종이 멸종되거나 감소되고 있고, 도시는 건물밀집, 도로포장 등에 의한 생물종 서식공간 상실과 오염심화로 인하여 점차 회색화되고 있는 실정임. 하천은 점차 시멘트 구조물화되어 쾌적성과 생태적 건전성을 상실하고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습지(늪, 간석지 등)가 점차 매립되거나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15.28 범세계적 자연정책이 “사람과 생물의 공존·공생”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다가올 21세기에 요구될 과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부터 대응해 나가야 함
- 15.29 선진국의 중복 투자 경험을 교훈삼아 개발사업 추진을 합리화 함. 일단 훼손된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과다 소요됨. 선진국에서는 인공화된 도시, 농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비오토프」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 15.30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부터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도하여 소중한 자연유산의 보호를 전제로 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함
- 15.31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이 자연 및 생물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국토의 자연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대시켜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구상이 요청됨
- 15.32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 국토의 주요 구성요소인 산, 도시, 하천·습지, 평야 및 해안을 단지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 내고자 (창조)하는 적극적 자연정책으로 전환하되 이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15.33 또한 국토개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식생과 물이 조화되는, 자연성과 쾌적성이 높은 도시와 농어촌 및 하천 등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의 방향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함

목 표
-----

15.34 선진국의 하천관리에 있어 실패경험을 거울삼아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공공사업과 민간개발사업에 있어 사람에게 친근하고 야생생물이 서식가능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창조하는 등 자연과 생태계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새로운 국토이용 및 토지이용질서를 구축함

15.35 도로 등으로 인한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초래를 방지하고,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 속에 부족해진 자연공간을 확보하며 생태적으로도 건전한 환경으로 유도함. 또한 하천의 직강화와 호안정비, 습지의 매립, 댐의 건설 및 간척지의 매립에 따른 어류서식지의 소실과 이동 제한을 시정하고 새로운 서식지 확보 및 자연화를 추진함.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해 오염된 농지에서의 생물서식지 개선 및 새로운 서식지 확보 등 ‘우리 동·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15.36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습지, 저목림 등을 도시, 학교, 농지 등에 조성하고, 새·나비·반딧불이 찾아오는 생물서식공간을 창조하며,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더욱 증가되고 있는 자

연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명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등 자연성을 선호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친자연적 공간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자연을 만들어 냄

15.37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자연과 생태계를 적극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계획이 되도록 유도하고, 공공사업과 민간개발사업에 있어 야생생물이 서식가능한 생태공간을 조성하도록 만들며,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자연관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자연의 “보호”만이 아닌 파괴된 자연의 복원·창조 개념을 우리나라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함. 또한 아직 남아 있는 인공화되지 않은 하천 등의 자연공간을 생물다양성이 높게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발전시킴으로써 신규 개발사업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도함

15.38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비무장지대를 생태적으로 보존하면서도 건전하게 이용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 하천, 평야 및 산지를 구상하는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한반도 모습을 제시함

정책수단
------

15.39 원칙적으로 다양한 추진주체 및 참여자의 이해를 전제로한 자율참여를 권고하고, 전국 「그린 네트워크」화 계획의 추진에 따라 반영·개선되어야 할 각종 계획 및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감

15.40 중앙정부는 「그린 네트워크」 계획의 구상, 지침, 조성기법을 개발·지원하고 「그린 네트워크」화에 제약이 되는 규정의 개정 및 촉진 근거 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우리 고유의 모형개발, 종합적 공동연구체제 구축, 민간기업의 관련기술 개발 지원,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함

#### D. 현지내 보전능력 강화

배 경
-----

15.41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을 근간으로 관리되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각 개별법에서 각종 보호지역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과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를 들 수 있음

15.42 최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개발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가 서식지의 감소로 이어져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음. 이러한 서식지의 감소가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15.43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서식지보전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보호지역의 지정을 포함한 현지내 보전능력 강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임

목 표
-----

15.44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및 지역공동체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구축함

정책수단

15.45 제1차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시 자연원시림, 희귀동·식물서식지등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밀조사결과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임

15.46 자연공원,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각종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같은 보호지역 개념 도입을 검토하여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

15.47 보호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생태관광을 포함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분배 등의 경제적인 유인수단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15.48 산림, 농지, 습지등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생물다양성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E. 현지의 보전능력 강화

## 배 경

15.49 생물자원의 현지의 보전은 현지내 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생물자원을 인공적인 환경에서 보전하는 방법을 말하며, 최근 생명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생물 및 유전자원의 확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목 표

15.50 생명공학산업발전에 필요한 생물 및 유전자원 확보와 자연상태에서 취약한 재래종·사육종·감소종·위기종등의 적절한 보전 및 복원 기반 구축

## 정책수단

15.51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등 야생동·식물의 현지의 보전시설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단계적인 시설보강을 통하여 동·식물 자원의 보전능력을 강화하고 농업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 재래종, 자생종, 국외유용자원등 농업생물유전자원의 수집과 종자은행의 보강등 현지의 보전능력을 제고함

15.52 생명공학연구 및 생물산업에 필수적 생물소재인 유전자원 및 유용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생명공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전자은행 보유균주와 유용생물자원의 보유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은행사업을 확대 추진함.

기타 생물표본의 보존관리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국립생물자원보존관 설립을 추진함

#### F.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

##### 배 경

15.53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환경영향평가임.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1981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1993년에는 별도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였음

15.54 그러나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자료 및 관심부족 등으로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실화가 요구됨

##### 목 표

15.55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법개발·자료확보·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 정책수단

15.56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93. 6.11)으로 그간 시행해 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기반을 구축하여 사전에 환경적 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하

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대상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

15.57 특히 생물다양성 부문의 평가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생물다양성정보의 축적 및 자료의 보강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임. 아울러 생물다양성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임

#### G. 생물다양성 정보의 관리체제 구축

배 경
-----

15.58 생물다양성 정보는 그 구성요소의 분포, 현황, 특성, 가치, 위협요인, 보전기술, 이용등 광범위한 분야에 산재해 있음. 이러한 정보는 정부기관, 국·공립연구소, 대학, 학술단체 및 개인등에 분산 수용·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는 연구가 부족하여 정보축적이 취약한 실정에 있음

15.59 생물다양성보전의 효율적인 추진이 정확한 정보의 확보에 있음에 비추어 볼때 정보의 축적과 관리는 중요한 과제임.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는 정보의 손쉬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때에 가능하므로 정보의 효율적 관리체제의 구축은 생물다양성보전에 긴요함

## 목 표

15.60 국내 생물다양성 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수단

15.61 정부의 국가기간전산망인 초고속통신망에 연계하여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환경정보시스템의 한분야로서 생물다양성 부분을 포함시킴. 이 시스템은 GIS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종합적인 생물다양성 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보장함

15.62 이러한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은 생물다양성 관련기관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국가의 주요전산망으로 운영함

15.63 생물다양성정보는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축적하며, 각종 연구단체 및 관련자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체제를 마련함

## 第16章 生命工學의 環境安全管理

### 序 文

- 16.1 생명공학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바, 정부는 생명공학적 기술의 이용 증대를 통하여 기존의 공해과다 배출산업을 대체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며 공해에 의하여 파괴된 생태계와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제반정책을 확대하고자 함
- 16.2 저공해 생물농약의 개발 및 이용기술 등이 환경오염방지나 생태계의 보존뿐만 아니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동·식물자원을 이용한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기술이 농업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함
- 16.3 보건·의료 관련 연구도 생명공학기술의 응용에 의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 및 산·학·연 협동체제로 난치병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신바이오 의약품 및 관련 의료장비, 인공장기, 생물재료를 개발하고 기초 의학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16.4 환경보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개발 사업에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부문의 환경기술개발을 활성화할 것임
- 16.5 생명공학에 의해 변형된 생물체가 생태계의 안정과 인간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생명공학과 변형생물체 및 환경방출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16.6 생명공학적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및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생명공학관련 기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고자 함

16.7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와 관련된 이 장에서의 계획분야는 다음과 같음

- (a) 식량 및 사료, 재활용가능 원자재의 생산성 제고
- (b) 국민보건 증진
- (c) 환경보호 증진
- (d) 생명공학의 안전성증대 및 국제협력체제의 구축
- (e)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안전적용을 가능케 하는 체제의 구축

## 計 劃 分 野

A. 식량 및 사료, 재활용 가능 원자재의 생산성 제고

배 경
-----

16.8 좁은 국토면적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식물자원을 이용한 농축산물 생산성 제고기술은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로 간주됨. 또한 환경오염을 피할 수 있는 저공해 천연물 유래 생물농약의 개발 및 이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6.9 따라서 부존자원의 현황과약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동·식물 생태계 조사와 동·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관계 법규, 제도 및 보존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16.10 관련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 및 인력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 표

16.11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농·축산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반제도를 개선 정비함

정책수단

16.12 질병등 각종 생물학적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지닌 작물을 형질전환 기법으로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환경오염 유발성 농약의 사용을 대폭절감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을 지원함

16.13 각종 불리한 환경에 대한 내성기능을 강화한 식물의 개발을 위해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사막화 등), 대기오염물질, 산성비에 대한 적응 구멍 및 환경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자원식물 개발을 통하여 경작가능 지역을 확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지원함

16.14 또한 주요작물에 새로운 기능성 유전자를 도입하여 고기능성 작물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함

16.15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이 출현하거나 급속히 확대될 수 있는 가축의 질병에 관한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이 출현하는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병원 규명, 백신 등의 예방법 개발, 초기 진단용 시약과 치료제 개발을 추진함

16.16 가축의 소화 효율 및 가용사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축산물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가축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함

16.17 생명공학적인 형질전환 기법을 이용하여 가축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축을 유용인체생리활성 물질의 생산체계로 이용하려는 연구를 활성화 함으로써 축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함

16.18 기존 유기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유래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및 미생물 유래의 농약 개발과 경제적 생산방법 및 대량생산 공정기술 개발을 촉진함

## B. 국민보건 증진

배 경
-----

16.19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성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입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의학분야 연구기반의 취약, 국내의 신약개발 경험 부족과 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 평가 기술의 미비 등으로 의약품 개발 관련 생명공학기술의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임

16.20 따라서 국내 고유의 의약용 천연자원의 보존, 전통한방·민간요법의

발굴·보존 및 대량재배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국민적 다발질병, 질환에 대한 기초의학연구 지원 강화 및 예방, 진단,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연구개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16.21 또한 환경을 해치지 않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생명공학기술개발에 의한 신약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

목 표
-----

16.22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신약개발 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 기초의학 연구기반의 확충 및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각종 질병의 국가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

정책수단
------

16.23 암 등 국내 다발질환의 생명공학기술 연구, 유전질환 및 노화, 신경질환에 관한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관련 전문가집단간의 연계성을 유도함으로써 기술개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함

16.24 신약개발, 생리활성 선도물질 탐색, 복합 면역백신 개발 등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16.25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의 육성을 통한 국내 백신연구활성화 및 대학 부설 암연구소간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 지원함

16.26 국내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간염 및 간암의 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역학조사와 효과적인 간염 및 간암치료제 개발을 적극 추진함

### C. 환경보호 증진

#### 배 경

16.27 우리나라는 최근 몇십년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내의 환경오염상태가 심각하여 전국의 오염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연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16.28 이를 위해서는 생물체의 재순환, 에너지 회수, 폐기물량의 최소화를 통한 천연자원의 최적이용 및 생산공정개발, 오염된 토양 및 수질의 개선을 위한 bioremediation기술개발, 폐기물처리, 토양보전, 조립, 지력회복 등에 관한 생명공학 이용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16.29 또한 생태계에 안전한 생명공학 기술, 생명공학관련 제품 생산 및 응용기술개발과 생명공학관련 환경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마련되어야 함

#### 목 표

16.30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환경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산·학·연 및 국민간의 정보기능 확대와 보급망체계를 확립함

## 정책수단

- 16.31 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폐수 처리기술의 고급화, 고도정수처리기술 및 폐기물의 생명공학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함
- 16.32 생태계 및 인체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물학적 대체물질(예;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적극 유도함.
- 16.33 난분해성 유기독성화합물, 합성농약, 세제, 중금속, 염료, 폐유 및 유출유 등에 의해 오염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응용확산을 위해 오염토양 처리기술, 오염지표수 처리기술, 오염지하수 처리 기술, 오염해양 처리 기술 및 관련 미생물의 발굴탐색과 개량기술 등 환경의 공익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사업을 환경오염방지 기금 등의 활용에 의해 적극 추진함
- 16.34 환경감시 및 환경영향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생물학적 환경 모니터링 진단기술개발을 촉진하며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
- 16.35 환경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체계를 확립하여 환경기술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보기능 확대 및 보급망체계의 확립을 추진함

#### D. 생명공학의 안전성 증진 및 국제협력 체제개발

##### 배 경

16.36 생명공학기술은 농축산물 생산, 보건·의료, 환경보호를 위한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로서 이를 광범위하게 발전 육성시켜야 함. 그러나 생명공학 관련 실험 및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의 환경방출은 인간 건강과 생태계를 위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에 기초한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16.37 정부는 각 부처 참여하에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이용, 변형생물체 사용·이동 취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부처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임

16.38 또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안전 규제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임

##### 목 표

16.39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일된 지침의 제정·시행 및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체제를 확립함

## 정책수단

- 16.40 생명공학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규의 제정에 관한 사전조사작업, 선진국의 법규와 국제조약의 현황 및 국제조류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 학계, 산업계, 연구계, 언론계 등 관계 전문가 집단으로 “종합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16.41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 법규의 작성 및 이행에 필요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조정회의 개최, 부처별 업무분담을 통하여 총체적 법규 및 규제장치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범 부처적으로 “생명공학 안전성 정책조정 협의회”를 구성함

## E.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안전적용을 가능케하는 체제의 구축

## 배 경

- 16.42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생명공학 관련 연구와 제품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및 적절한 안전성평가와 위험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16.43 또한 생명공학의 지속적 개발에 따라 파생되는 이점과 해로운 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가간의 과학자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 16.44 생명공학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선진국, 개도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생명공학의 환경안전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함

정책수단

- 16.45 정부는 생명공학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함
- 16.46 생명공학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개도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생명 공학을 환경보전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 할 신규조직의 신설 및 선진국과의 생명공학 안전성에 관한 협력을 증대함
- 16.47 이를 위해 국내 산·학·연 생명공학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개도 국과의 기술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추진과 우수인력 활용을 위해 정 부차원에서 “생명공학기술훈련센터”의 설치를 추진함
- 16.48 국내·외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생산, 보급할 수 있는 생명공학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산·학· 연에 필요한 생명공학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 화된 “생명공학 정보센터”의 설치를 추진함

## 第17章 海洋 및 海洋生物資源 保護

### 序 文

- 17.1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국가임에도 해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양 및 해양생물 자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집행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 17.2 연안역 공간은 복합적 이용을 고려한 장기계획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의 대상이 되어야 함
- 17.3 연근해 어업자원의 보호, 무분별한 연안간척의 방지, 불법적 해양생물 자원의 이용 금지, 연안해양오염의 저감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청됨
- 17.4 특히, 주요 항만 및 임해도시 주변 연안해역의 경우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17.5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음
- (a)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연안역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
  - (b) 해양환경보호
  - (c)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 (d) 국가 관할권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 (e)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리에 있어서 주요 불확실성 극복
  - (f)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 및 조정 강화

## 計 劃 分 野

### A.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연안역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

#### 배 경

- 17.6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할 수 있는 연안 국가로 개발이 비교적 용이한 수심 20m 이내의 수역만도 국토의 1/4에 해당하는 2만 1천 km<sup>2</sup> 로 추정되고 있어 연안역의 개발 잠재력은 어느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17.7 1980년대 이후 원양어업의 침체와 연근해 어업생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로 연근해 어업생산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국민수요의 증대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리라 추정되나, 간척·매립, 산업폐수, 폐기물, 유류 등에 의한 연안어장 및 생태계의 축소·파괴, 불법어업에 의한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연근해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반폐쇄성 해역인 우리나라의 잠재적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태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 인접국의 연안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이 해역의 생태계 및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 목 표

- 17.8 협소한 국토면적의 대체공간으로서의 해양의 개발 또는 이용은 연안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태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육역관리와 대등한 통합적 해역관리체제하에 수립·추진

17.9 연안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통합관리 체제 개발

- (a)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안역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안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b) 특정연안 생태계의 생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연안역 통합관리체제 개발
- (c)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적 역량 및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연안역 지리정보시스템, 연안환경 위해도 추정기술 및 연안환경 수용능력 조사, 연안자원의 가치평가와 같은 연구사업 수행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17.10 연안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관리 : 연안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연안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정보의 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해역별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함

17.11 국제적, 지역적 협력 및 조정

- (a) 연안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적 협력은 현재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북서태평양 지역 실천계획(NOWPA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된 연안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통합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용하여 실행함

- (b) 선진 연안국에서 기존에 개발된 연안역 통합관리기술을 우리나라에 이전·적용하고 국제회의, 워크샵에 적극 참여함

## B. 해양환경보호

### 배 경

17.12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었고 새로운 도시의 형성과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산업폐수와 도시하수가 미처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유입되어 일부 연안에서 자정능력 한계를 초과함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음

17.13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출사고는 어업활동이 활발한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출사고방제 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역해 차원에서 긴급계획과 공동방제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목 표

17.14 해역환경관리기능 강화, 해양오염의 예방기능 향상, 오염사고 발생시 대응능력 제고, 해양오염피해 보상체제 확립,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보전하도록 함

#### 17.15 육상기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 (a) 육상기원 오염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수질모델 등 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
- (b) 총량규제실시, 수질기준강화, 자동감시체제 구축 등을 통한 육상기원 오염배출의 규제 및 감시체제 구축
- (c)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위험예측 등 예방조치 강구
- (d) 간척매립, 산업시설 유치 등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평가체제 강화
- (e)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 해양생물의 분포현황목록, 환경민감도지도(Environmental Sensitivity Map), 습지지도(Wetland Map)등 작성

#### 17.16 해상기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 (a) 해상유출사고시 조기대응체제를 갖추고 이를 전담하는 해상유출사고 방지센터를 설립하고 방제선박 및 장비를 현대화하며 방제기술을 지원하는 과학적인 지원체제 구축
- (b) 항만내에 폐유, 유해물질,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해양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

- (c) 각종 유출사고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복원기술 개발
- (d) 해저유전 및 해저광물 채굴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e) 선박도료중에 함유된 유기주석계 부착방지제의 사용규제, 오염피해 조사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

C.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배 경

17.17 공해에서의 조업이 인근 연안국(혹은 국제관할수역)을 왕래 하는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연안국(혹은 국제관할수역)의 자원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17.18 이에따라 원양 회유성 어종(highly migratory species)과 경계성 어종(straddling stock)의 관리에 관하여 1995년 8월 유엔에서 관련협정이 채택된 바 있음

목 표

17.19 공해에서의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해어업자원 조사·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적정어획량 추정에 대한 과학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해 자원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국제기여도를 높임

정책수단

17.20 우리나라는 일본·미국 등의 14개국과 양국간 어업협정을 맺고 있고, 8개의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해 있음.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변동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체제의 수립이 요청됨

(a) 우리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국제기구 가입을 검토하고 공해어업 관련회의에 적극 참여

(b) 과학적인 공해자원량 평가와 관리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의 공조체제를 결속할 수 있는 기구 결성 추진

(c) 각 분야별, 해역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를 세분화시키므로써 국제적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D. 국가 관할권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배 경

17.21 1977년 미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이후, 공해 생물자원의 배타적 이용이 새로운 해양질서로 정착함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개발방향이 원양에서 연근해로 이동해 오고 있음

17.22 해양생물자원은 광물자원이나 수자원과는 달리 스스로 회복하는 자율갱신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여하에 따라 영속적인 국가 재산으로 보존하기가 유리한 자원이므로 국가 관할권내 미이용 해양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차원에서 식별 관리되어야 함

목 표

17.23 국가관할수역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효용성을 규명하고 수산자원을 경제적 자원 뿐만 아니라 레저자원, 휴양자원, 문화적 자원으로 개발함

정책수단

17.24 해양생물자원의 어종별 자원량 및 해양생물자원의 잠재생산력을 추정하고 어종별 적정어획량의 과학적 결정 및 국가 관할권 해역의 구조적, 생태적 특징 파악

17.25 어장 환경오염의 근본원인 파악 및 방지방안을 설정하고 어업통계자료 신뢰도 증진방안을 강구하며 자원남용성 어구의 허가량 제한 또는 사용금지

17.26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멸종위기종, 희귀종 지정 및 보존대책 수립과 아울러 가입과정(recruitment)의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미기록 자원의 계속 탐색

E.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리에 있어서 주요 불확실성 극복

## 배 경

- 17.27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계는 북서태평양 해양계 및 아시아 기후계와 에너지 그리고 물질을 교환하고 있으므로 전지구적 환경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조직을 통한 공동협력이 필요함
- 17.28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환경과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전지구적, 중규모적(basin-scale), 지역적 관점에서 조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상을 야기시키는 여러 해양과정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예측능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세가지 규모에 맞는 기본정책의 방향과 세부실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17.29 중규모적(basin-scale) 해양현상 및 이의 예측은 전지구적 현상과 연계하여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국제공동 연구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더 나아가 전문가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

## 목 표

- 17.30 해양환경 및 기후관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지구적, 중규모적(basin-scale) 및 지역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예측능력을 확보함

## 정책수단

- 17.31 북서태평양 해양계, 아시아 몬순기후계와 주변해역 해양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쿠로시오 해역과 동중국해의 해양순환 연구의 수행 및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세계기상기구(WMO) 주관하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프로그램중 세계해양대순환실험(WOCE), 전지구 해양물질순환(JGOFS), 전지구해양생태계역학(GLOBEC), 세계해양관측 시스템(GOOS), 아시아몬순실험계획에 적극 참여
- 17.32 황·동중국해 해양환경의 구조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중-일-북한 해양정기조사, 황해-동중국해의 물질순환, 황·동중국해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추진
- 17.33 동해 해양환경의 구조와 변동 그리고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구명하기 위하여 지역국가(북한, 일본, 러시아)간 공동조사·연구 추진, 국가실무위원회 설치 및 국내 관련기관 협력증진, 자료와 정보의 수집·배포 및 연구성과의 종합 관리

#### F.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 및 조정강화

배 경
-----

- 17.34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해역은 생물자원, 광물자원과 주요 해운항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수산물생산 및 해상수송의 3분의 1 이상이 이 해역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석유매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동북아지역은 산업화 활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곳의 하나로서 앞으로 수산업, 광업, 해운산업, 연안역 개발 등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동북아해역에 대한 해역특성, 자원부존 및

오염환경에 대한 과학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따라서 동북아해역에 관한 지역 및 국제적인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북태평양, 적도 및 남극을 중심으로 하는 남반구 해양(Southern Oceans)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목 표

17.35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에 필요한 지역국가간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인한 새로운 해양질서의 형성에 적절히 대응함

정책수단

17.36 우리나라가 1991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북서태평양 해양오염방지계획(NOWPAP)에 적극 참여하여 동 해역에 있어서의 선박유류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한·중·러·일·북한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17.37 한·중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하여 황해연구, 황해생태계 조사, 자료와 정보교환 및 인력교류 등 공동의 이익을 기초로한 협력체제 구축

17.38 우리나라 국민이 남극에서 수행하는 탐사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남극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

17.39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해양오염 등 인접국간

현안해결을 위한 정부간 협력체제 확립

## 第18章 淡水資源의 質과 供給 保護

### 序 文

- 18.1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가로지른 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이며 농경지는 대부분 침식평야로 이루어져 있고 산지가 약 65%를 차지함
- 18.2 총 강수량의 2/3 정도가 하절기 3개월에 집중되어 수자원이 계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임. 약 3,900여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강, 낙동강,금강, 섬진강, 영산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강 임
- 18.3 연간 수자원 총량은 1,267억톤이며, 570억톤은 손실되고 427억톤은 홍수시 유출되어 수자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자원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어, 연간 총 이용량 290억톤의 36.6%는 댐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음. 분야별 용수수요는 생활용수 18%, 농업용수 53%, 공업용수 9%, 유지용수 20%등임. 총인구 45,512천명중 37,351천명이 공공상수도 혜택을 받고있어 상수도보급율은 82.1%수준이며, 하루 1인당 급수량은 408ℓ 임('94년 현재)
- 18.4 한강의 수질은 중하류지역까지 BOD 1-2ppm수준의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낙동강은 중류지역의 공업개발로 중하류지역이 BOD 3-4ppm수준을 보이고 있고,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는 중상류지역에 대전, 광주시등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하류지역은 BOD 3-4ppm수준을 보이고 있음('94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수도 취수원의 대부분을 하천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담수자원의 질적보호가 국가적 현안과제가 되어 있는 실정임

18.5 의제 21의 권고사항을 실천하기위한 계획으로는 수자원의 종합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구축(양/질 유기적관리), 지하수 자원의 조사·관리, 담수자원의 질적회복조치, 물질약대책등 4가지 실천분야를 선정하였음

## 計 劃 分 野

### A. 수자원 종합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구축

#### 배 경

18.6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빈곤국으로 장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수 수자원량의 확보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종합개발 및 수질관리가 필요함.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개발 또는 기존 수자원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풍부한 수자원 관리 및 질적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보완이 필요함

#### 목 표

18.7 장래 용수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댐 개발, 광역상수도확충, 지하수개발 및 함량증진, 하천수 및 복류수개발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수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18.8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A)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추진

18.9 2011년을 목표로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

18.10 수계별 다목적댐건설을 통한 용수의 절대량 확보 및 안정된 용수공급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a) 용수수급 예비율을 제고

(b) 지역 및 도개발계획등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 확충

18.11 수자원종합관리 기술개발

(a) 댐, 하천수, 지하수를 연계한 종합관리체계구축

(b) 물의 관리권을 국가로 일원화 추진

(c) 각종 물관리모형(유출예측모형, 용수수요예측모형, 물관리 의사결정모형, 물수지모형, 저수지운영모형등) 및 지하수 함량기법, 해수의 담수화 기법등을 연구개발

B) 수환경 5개년계획 수립

18.12 수자원의 개발과 배분에 관한 수자원계획과 이와 연계한 수자원의 보전 및 생태환경개선을 위한 수질계획을 통합한 수환경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수자원의 개발·보전·배분등의 국가정책을 유기적으로 수행

C) 수자원관리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18.13 수자원 관련정보 관측·수집망의 실시간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함

(a) 수위 관측소와 수질측정망의 정보교환을 가능케 함.

(b) 수자원 관련정보-지하수, 지표수, 기상, 수질, 유역특성 등-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종합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유역 물관리체제를 확립함

B. 지하수의 조사·개발 및 관리

배 경
-----

18.14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하는 경우 수원고갈, 수질오염, 지반침하등 지하수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18.15 지하수는 보전을 원칙으로하되 지표수 공급이 곤란한 지역이나 가뭄에 대비한 비상 상수원으로 개발추진

## 목 표

18.16 지하수자원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연구와 행정적 준비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

## 정책수단

18.17 지하수이용현황을 조사 분석함 : 유형별 지하수이용실태,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분석, 지하수원의 오염실태등을 조사함

18.18 지하수관리망을 구축·운영함 : 지역 또는 유역단위로 대표지점을 선정, 지하수위 수질등의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18.19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 : 지하수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C. 담수자원의 질적 회복조치

## 배 경

18.20 우리나라는 인구 및 경제개발 밀도가 높고,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투자가 초기단계에 있어 주요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용수의 대부분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적 회복조치가 필요

## 목 표

18.21 5대강의 수질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도시등의 소하천은 사람들이 접근하여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킴

## 정책수단

18.22 배출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오염자 스스로 억제토록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함

(a)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기준을 한단계 강화하여 적용함

(b)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 부과하는 불이행부과금제도를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로 전환하여 오염 억제 유도

18.23 수질오염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를 집중정비하고, 산업폐수의 경제적 처리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함

18.24 주요 호소에 대하여 수역의 상태, 영양염류배출원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함. 대규모 영양염류배출원에 대한 질소·인 직접규제를 실시함

18.25 이미 수질악화등으로 국민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하천은 물고기가

살수 있고, 사람들을 친수접근을 유도할수 있는수준으로 개선함 :  
하상퇴적물 준설과, 재퇴적 방지를 위해 하천변 오수관정비를 추진하며,  
하천에 대해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천공원을 조성함

#### D. 물 절약대책의 정책적 추진

##### 배 경

18.26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용수수  
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으  
로는 물부족으로 큰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절약조치가 정  
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목 표

18.27 총 수요량의 일정부분을 절약을 통해 감당함으로써 총공급량 증가율을  
둔화시켜 나감

##### 정책수단

18.28 물 절약형 급수장치를 개발하고, 건축물 신증축시 절약형 자재를 사용  
토록 권고 또는 의무화

- 18.29 수돗물을 사용한 후 재이용하는 중수도제를 물다량 소비업소 및 신도시지역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산업폐수의 재이용을 정책적으로 유도함
- 18.30 수도요금을 사용량에 비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강화, 경제적 유인을 통한 물절약을 도모
- 18.31 국민들의 물 과소비행태를 국가적 차원의 계도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감 : 양치물, 청소수, 설거짓물등 소비유형별로 절약 방법을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보급, 계도함

## 第19章 有害化學物質의 環境安全管理

### 序 文

- 19.1 20세기의 전 인류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를 주도해 온 과학기술 및 산업의 눈부신 발달로 인류는 전례없는 풍요로움과 안락함, 편리함 등 많은 혜택을 누리오고 있으나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낸 어떤 물질들이 예기치 못하게 인간의 생활 및 건강을 위협하는 등 화학물질에 의한 생활환경의 오염과 의약품, 농약 등에 의한 건강피해가 날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우리 인간 및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환경보전 뿐 아니라 인간 생존차원의 중요성을 갖는 문제임
- 19.2 우리는 금세기에 들어와 화학물질로 인해 인간에게 피해를 준 커다란 사건들을 잇을 수 없는 바, 인도에서 미국 Union Carbide사의 유독가스 누출에 의한 사건, 또 사용후 한참 후에서야 알려진 고엽제 Agent Orange의 피해사건들이 그 중요한 예라 할 수 있음. 이와같이 인간이 인간을 위해 창조해 낸 화학물질들이 때로 인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요청됨
- 19.3 그러므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사용 등은 '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모두 예외없이 인류공동체의식으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규제를 실천하여 '97 UN총회에 각국이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그 방법은 국제화학물질 안전성프로그램(IPCS)에 따르기로 되어 있음. 한편 '94. 9 대한민국 보건사회부는 IPCS와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은 IPCS와 긴밀한 협조하에 선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상태임. 앞으로 세계각국은 자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개발과 보전에 같은 비중을 두어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에 힘쓸 것으로 판단됨

- 19.4 선진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EPA 등을 통해 자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화학물질들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유럽공동체간의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또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화학물질의심사및제조등의규제에 관한법률』에 의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 사전에 엄격한 조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음
- 19.5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우리주변 생활환경의 보전 뿐만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어 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며, 나아가 유해화학물질의 범람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19.6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평가 확대 및 강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일치,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위험성 감소계획수립,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 및 시설강화, 위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국제거래방지 등 6개분야를 실천계획 분야로 선정하였음

## 計 劃 分 野

### A.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대 및 강화

배 경
-----

- 19.7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800만종이상이며, 이중 10만여종이 시판 되고 있고 매년 선진국에서 1,0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유기화합물로서 사용시 환경 및 인

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직업병은 물론 각종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질환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만성적이고 치료 곤란한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의 안전성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목 표

19.8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의 평가방법과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결정기법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함

(a)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완료

(b)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안전성 평가 실시

(c) 화학물질의 폭로제한에 관한 지침 및 원칙 통일

## 정책수단

19.9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화학적 위해성 평가에 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전성 재평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연차적으로 기업, 국가, 민간단체간의 협력 증대 체계를 개발

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일치

## 배 경

19.10 국내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및 농약관리법에 의거 각각 건강 및 환경유해성, 작업자 안전성,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잔류성에 바탕을 두고 유독물, 특정화학물질, 위험물, 맹독성 농약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국가공동체(EU)의 물리화학적성질, 건강유해성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분류개념과 일치됨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각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통일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임

## 목 표

19.11 IPCS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국제화(안)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에서 협약 및 권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관련법의 통일된 표시(안)을 제정하고 위험성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수립함

## 정책수단

19.12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제도를 조사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일치된 분류와 조화된 구분체계를 정립하고 노동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제화에 따른 국내화학물질의 표시 통일(안)을 각 개별법에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 작업자 및 국민에게 적극 홍보함

C.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 배 경

19.13 화학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생산된 다종·다량의 화학물질이 각종 산업의 제조·원료물질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등의 위험성을 갖는 화학물질에 의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앞으로 우리나라도 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정부 관련기관과 관련사업장이 협력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19.14 국가, 국가간 조직 및 비국가조직간의 정보교환망 구축을 강화함

- (a) CD/ROM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자료정리
- (b) 화학물질로 인한 긴급사고에 대한 대응방책 즉각 수립
- (c) 사전통고승인(PIC :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참여 당국 지정
- (d) PIC절차에 부합하는 필요조치 완료
- (e) 런던지침 및 PIC 절차의 수행을 위한 물품 운송훈련 실시

## 정책수단

19.15 세계각국의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자료를 통한 규제품목 입수, 화학물질 안전사고 및 걱정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례조사, 화학물질의 생산·사용·폐기및 독성에 관한 정보획득체계 구축,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적네트워크 확보

## D. 위해성 감소계획 수립

### 배 경

19.16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및 위해성 감소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처분까지의 위해성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등, 전체화학물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적 또는 비규제적 방안을 포함한 위험성 감소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목 표

19.17 다음과 같은 위해성감소계획을 수립함

- (a) 국가 위험성 감소계획 추진 경험에 관한 보고서 작성
- (b) "오염물 제거 및 이동등록" 규정의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c) 화학물질 정화기술의 이용 및 개발 증진
- (d)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하는 농약의 안전성 대책 검토 및 진행 보고서 작성
- (e) '93 ILO Convention(No 174)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실행 체제 구축
- (f) 국가체계의 긴급사고 예방 및 대응대책(훈련 및 교육 포함)을 APELL계획에 따라 수립
- (g) 임상 및 분석설비를 포함하는 중독관리센터 설립
- (h) UN의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권고가 수행될 수 있는 적절한 법

## 적조치

### 정책수단

19.18 화학물질관리 관련부처,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체계 확립,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공급.수송.보관.처리에 대한 조사, 긴급사고예방과 대응대책의 강구 및 감독 강화,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홍보

### E.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능력 및 시설 강화

### 배 경

19.19 현재 사용중인 화학물질은 많은 양의 사용과 부적절한 관리등으로 인하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우기 잔류성이 크고 난분해성인 물질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 치명적 임

### 목 표

19.20 화학물질 안전성에 관한 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을 연결하는 기능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확립 및 포괄적 법제화를 추진함

## 정책수단

19.21 화학물질 자료센터 설립추진,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제도 강화, 유해성 평가를 위한 시험기관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시설의 조기 확충(Good Laboratory Practice(GLP), 외국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자사제품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물질안전자료의 확보 권고 및 사고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술의 개발

## F.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국제거래 방지

## 배 경

19.22 현재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거래에 대하여 UNEP주관으로 런던 가이드라인에 의한 PIC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이 수출금지 혹은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권고하는 등 선진국 주도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들의 국가간 불법적 움직임을 예방하는 추세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내외로 거래되는 수출·입 화학물질의 불법거래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목 표

19.23 PIC절차의 강화를 포함한 독성 및 위험물품의 불법적 교역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기구의 설립 및 강력한 단속 활동

정책수단

19.24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제한 및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세청 산하 일선 세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UNEP의 국제유해화학물질 등록기구(IRPTC)와 정부차원의 화학프로그램 협력을 추진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 정보교환 협의회를 활성화 함

## 第20章 有害廢棄物의 不法交易防止와 環境安全管理

### 序 文

- 20.1 유해폐기물 발생,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는 인류보건, 환경보호, 적법한 자원관리 및 궁극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관건임
- 20.2 또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와 유해폐기물로 인하여 이미 오염된 지역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재원, 기술 및 과학적 대처능력이 필요함
- 20.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상 전세계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악화되고 일반 대중의 보건안전이 심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20.4 이에따라 '86.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과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데 있어 지역차원의 평가를 실시하고, 독성유해물질과 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을 방지하는데 각 지역위원회가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5 또한 유엔총회에서는 독성·위험물질 및 폐기물의 불법이동에 관한 효율적인 조정, 감시, 평가의 일환으로 지역위원회와 유엔환경계획 (UNEP) 및 각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20.6 우리나라는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불법교역 방지와 국제환경협력증진 차원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가입('94.2.28)하였음
- 20.7 아울러 바젤협약의 국내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92.12.8 및 '94.5.28)하였으며, 동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118개 품목을 지정고시('94.12.5)하였음
- 20.8 유해폐기물의 관리에 있어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목표는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가능한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최소화 하는 것임
- 20.9 이를 위해 생산공정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 및 최소화, 환경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사례의 근본적 제거와 방지등을 통해 가능한 한 발생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해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20.10 본문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량 감량을 위한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배출자부담원칙의 확대,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유해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관리강화, 바젤협약 가입과 국제협력증진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음

## 計 劃 分 野

### A. 발생량 감량을 위한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 배 경

20.11 유해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오염방지와 청정생산전략을 통해 산업공정과 소비형태를 바꾸려는 보다 폭넓은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화에 두어야 함. 그러므로 새로운 청정기술의 도입, 신기술의 개발은 현재 유해폐기물 발생억제와 감량화의 중심적인 과제임

## 목 표

20.12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산계획 단계에서부터 유해폐기물 발생감소 방안이 감안된 제품생산계획의 수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수단

20.13 정부에서 추진중인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에 폐기물자원화 기술을 포함시켜 유해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0.14 청정생산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해폐기물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으로 부터 새로운 생산공정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등 청정생산기술 개발

이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아갈 것임

## B.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대

### 배 경

20.15 인류의 보건과 환경의 질은 유해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폐기물의 발생,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사회 및 시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 그러므로 동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투자비를 개발사업에서의 경제적인 유인책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방안 마련등이 필요함

### 목 표

20.17 유해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생산계획단계에서부터 유해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여 배출자가 유해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

### 정책수단

20.18 생산계획단계에서부터 유해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제품생산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폐기물예치금제('92.1.1 시행) 및 폐기물부담금제('93.7.1 시행)를 실시중에 있음

20.19 배출된 유해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회수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폐기물예치금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폐기물예치비용을 조정하는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아감

### C.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 배 경

20.20 발생된 유해폐기물은 토양이나 주위환경에 대한 아무런 피해없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폐기물의 성상도 악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는 유해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

#### 목 표

20.21 유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해 유해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함과 동시에 민간업소에서 처리시설 설치시 자금융자등을 통해 자신

이 발생시킨 유해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정책수단

20.22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권역별로 건설하여 민간부문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유해폐기물을 국가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0.23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별 필수기반시설로 설치되도록 도시기본 계획등에 의무적으로 그 입지를 반영하고, 대규모개발 사업시에는 처리시설의 확보를 의무화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95.1.5, 및 '95.6.30) 시행하고 있음

20.24 또한 민간업소에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금 융자, 세제지원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설치요건, 신청서류 간소화등을 통해 처리시설 확보가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체발생 유해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D. 유해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관리강화

배 경

20.25 현재 우리나라는 유해폐기물의 취급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처리시설,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한 홍보부족등에서 기인됨. 그 외에도 폐기물의 성상과 환경영향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들 수 있음

20.26 특히,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유해폐기물의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유해폐기물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안전한 취급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20.27 환경적으로 안전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유해폐기물관리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생산단계에서 최종처리까지 유해폐기물의 유통과정을 단계별로 구획·감시하게 함으로서 유해폐기물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

## 정책수단

20.28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일정량 이상의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자체처리 하거나, 특정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규정된 특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기준 및 방법과 특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20.29 또한 폐산, 폐알카리, 폐유등 특정폐기물에 대하여는 동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시 전표를 발행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전산입력하여 관리

하므로써 특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30 아울러 사회전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위해성, 유해폐기물 관리제도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등을 개발하고 학생, 가정주부, 기업체등 계층별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E. 바젤협약 가입과 국제협력 증진

##### 배 경

20.31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방지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공공의 건강에 유익하며, 바젤협약의 제4조에는 특별히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문제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20.32 특히 유해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국가로 유해폐기물이 이동할 경우 환경적으로 위대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며, 그러한 국가들로의 유해폐기물 이동 방지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가 가능한 국가들간의 재활용을 위한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음

##### 목 표

20.33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이동방지와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바젤

협약에 가입하고 폐기물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며 유해폐기물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함과 아울러 다른나라와의 유해폐기물 관련 정보교환을 적극 추진함

정책수단

- 20.34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이동을 금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바젤협약에 가입('94.2.28)하였으며, 바젤협약의 국내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92.12.8 및 '94.5.28)하였음
- 20.35 또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을 지정고시('95.12.5)하여 수출입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118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입 통관시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등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이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20.36 아울러 유해폐기물 관련 각종 회의등에 참여하여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규제등에 관한 선진국의 관리제도, 처리방법등을 파악하고, 바젤협약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설립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수출입이 빈번한 국가와는 필요시 쌍무 또는 다자협정 체결등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임

## 第21章 固形 및 下水廢棄物의 環境淸淨管理

### 序 文

- 21.1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외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음식쓰레기의 배출량이 쓰레기발생량중 31%로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생활의 편리성 추구로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쓰레기발생량중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이 약 27%를 차지함
- 21.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대부분을 광재, 연소재, 분진류, 오니등이 차지하고 있음.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재등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21.3 폐기물의 재활용측면에 있어서는 재활용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재활용제품의 수요가 저조하고, 국내 재활용산업이 영세하여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음
- 21.4 국가적 차원에서 폐기물관리정책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3. 12월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 중장기적인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대책수단을 제시하였음
- 21.5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94. 4월부터 '94년말까지의 시범실시를 거쳐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쓰레기배출량은 약 30%이상 감소되고 재활용품은 약 40%정도 늘어나는등

의 효과와 함께 그동안 쓰레기줄이기에 무관심하였던 일반국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음

21.6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를 통한 「자원재  
순환형 사회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감량화추진
- 재활용제품 시장수요확대 및 시설확충등 재활용촉진기반 조성
- 위생적인 소각 및 매립시설 확충을 통한 적정처리정책을 추진

## 計 劃 分 野

### A. 폐기물감량화

배 경
-----

21.7 2001년에는 현재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늘어나고 생활쓰레  
기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폐기물 총발생량은 '94년에 비하여  
약 70%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1.8 따라서 생산·유통·소비등 경제활동과정에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감량화의 유도, 발생억제를 위한 비용부담원칙등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  
여 폐기물발생원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여야 함

목 표
-----

## 21.9 국민 1인당 1일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감량화정책의 추진

### 정책수단

- 21.10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가구당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를 '95. 1. 1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함
- 21.11 전국 일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량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시행방안등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쓰레기봉투의 제작·관리등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전국적인 실시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함
- 21.12 종량제 전국실시로 급증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적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와 연계하여 분리대상품목, 정기수거일 지정등 지역실정에 맞는 분리수거제도를 확립하고 집하선별장등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보토록 함
- 21.13 생활의 편리성 추구로 증가되고 있는 1회용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 「제품의포장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강화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 및 규제대상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다한 포장과 스티로폼 같은 난분해성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함
- 21.14 전체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집단급식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등 감량화의무를 부과함

21.15 사용후 폐기물을 다량발생시키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예치금·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율 및 품목의 조정등을 통하여 기업의 회수·처리에 대한 경제적 동기 부여를 강화함

## B. 재활용촉진

### 배 경

21.16 쓰레기종량제 실시등으로 재활용품은 증가되는 반면에 소득수준의 향상, 과소비풍조,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재활용제품의 수요는 저조함

21.17 또한 재활용업체의 영세성으로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투자가 미흡하여 단순가공 또는 재이용정도에 불과하는등 재활용관련 산업여건이 취약한 실정임

21.18 재활용제품 시장수요확대 및 시설확충등 재활용촉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품목별 재활용목표설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목 표

21.19 생활쓰레기 재활용율을 2001년에는 20%로 증가시키며, 특히 재활용율이

낮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30-50%로 증가시킴

정책수단

- 21.20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배출형태를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게 단순화하는등 재활용품 수거체계 및 수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
- 21.21 일정비율이상의 폐지, 폐유리, 폐프라스틱, 고철(폐철캔) 사용을 의무화하는 폐자원 원료사용제도를 확대하며 액체·분말세제 및 화장품용기 재사용촉진을 위하여 재사용용기 사용의무율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함
- 21.22 합성수지용기, 캔류(알루미늄 및 철제)에 대하여 재질 및 분리수거 안내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재질별 분리·회수촉진을 위한 표시제를 실시하며,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활용마크제도 도입 및 환경마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21.23 자동차·TV·세탁기등 가전제품에 대하여 조립·해체 및 재질별 분리·회수가 용이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등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함
- 21.24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사용 대상기관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까지 확대하는등 재활용제품 수요기반을 확대함
- 21.25 재활용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기관의 공해방지시설자금지원 및 정부재정자금에 의한 융자확대등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재생산업을 육성함

21.26 재활용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급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비축시설을 설치하여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군·구단위의 선별집하장을 확보토록 함

21.27 준농림지역에 대한 재활용 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재활용종합단지의 조성을 위한 입지확보방안을 마련함

21.28 민간부문의 재활용설비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사업성이 없는 품목은 한국자원재생공사등 공공부문에서 설치·운영토록 함

### C. 적정처리정책

배 경

21.29 발생한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위생적인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대부분 단순투기형식으로 매립처리하고 있음

21.30 폐기물처리시설은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 이와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시설설치를 추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목 표

21.31 시설설치 및 관리주체의 안전처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의 인식을 정착하여 위생적인 소각처리 및 매립시설을 확충토록 추진함

21.32 현재의 단순매립 처리방식에서 소각처리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전량 위생매립으로 처리함

정책수단

21.33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별 필수기반시설로 설치되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조성사업시 사업시행전에 처리시설을 확보토록 의무화함. 또한 처리시설의 입지조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불만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

21.34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소각처리율을 높이고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수도권, 동해권, 중부권, 경남권, 경북권, 호남권등 6개권역에 설치하는등 처리시설을 확충함

21.35 도서지역과 같이 쓰레기의 수집·운반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소각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내 적정처리기반을 마련함

21.3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여 설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의 대규모 자본과 창의적인 경영기  
법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민자유치대상시설에 포  
함하고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사업모델과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함

## 第22章 放射性廢棄物의 環境安全管理

### 序 文

- 22.1 정부는 국내산업 발달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을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원자력시설의 해체시에는 보다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될 것임
- 22.2 현재 원자력발전소내 임시저장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음
- 22.3 따라서 정부는 1984년 10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소요비용의 폐기물발생자 부담원칙등을 골자로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국가정책을 수립하였음
- 22.4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의제21』 제22장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지침에서 요구하듯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방사성물질이 시설외부, 즉 지하수, 대기 등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건설·운영 되어야 함
- 22.5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건설에 필요한 관련기술은 이미 입증된 선진국 기술 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지침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동시에 방사성폐기물 중장기계획에 따라 수행된 관련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할 것임
- 22.6 특히 건설부지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일 처

분시설내에 가능한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용 기술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고화체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고화체의 건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22.7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확인은 처분장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프로그램을 작성 이행하며,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함

22.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처분을 위한 신중한 처분방안을 강구토록 함

22.9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실천계획으로서는 다음과 같음

(a) 방사성폐기물 관리

(b) 사용후핵연료 관리

## 計 劃 分 野

### A. 방사성폐기물 관리

배 경
-----

22.10 원자력발전에 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내 저장소에 보관 관리중이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보관중임

22.11 정부는 처분안전성과 주민동의(Public Acceptance)측면을 고려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목 표

22.12 현재 원자력발전소 및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앞으로 건설될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시설해체와 산업발달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으로부터 발생될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의 처분시설을 목표로 함

정책수단

A) 관리측면

22.13 방사성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을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권고한 “개인 방사선피폭 제한치 연간 0.01 mSv 및 예탁선량 제한치 연간 1 man·Sv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함

22.14 IAEA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원자력법에 따른 처분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그 결과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및 환경안전성 평가에 활용

22.15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관련 기술개발과 국가간에 미칠 수 있는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간 또는 지역간 협력에 적극 참여

함

22.16 IAEA 및 원자력에너지위원회(NEA)의 관련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관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B) 기술적측면

22.17 처분시설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설계개념, 설계조건, 취급장비, 수송시스템 등 선진국의 실증사례를 분석하고 IAEA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관련기술기준 및 지침을 참고로 국내 처분시설건설 및 운영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개발하여 활용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2.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중처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제반 유출가능 시나리오에 대하여 그 영향평가는 물론 구체적인 억제방안을 제안하여 신뢰성이 높은 처분단위 기술을 확보함

22.19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처리·처분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 (b)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시설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관리 유지
- (c)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수송을 위한 수송기술의 개발

(d)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및 기술연구개발 인력 양성

(e)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관리프로그램 작성이행

## B. 사용후핵연료 관리

### 배 경

22.20 우리나라는 70년대말 첫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후 '95년말 현재 10기가 가동중이며 국내 산업발달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임

22.21 정부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을 계획중임

### 목 표

22.22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적정규모의 중간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함

A) 관리측면

- 22.23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인 안전 저장관리를 위한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되 장기 원자력발전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규모의 조정과 선정된 부지의 특성, 최근의 개발기술 등을 고려하여 최적 중간저장시설을 건설 및 운영함
- 22.24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므로 중간저장시설에서 관리하는 동안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방사능 사고를 포함한 중대사고를 방지하고, 운전 및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는 설계개념을 추구함
- 22.25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구조물의 장기 안전성에 관한 BEFAST(Behavior of Spent Fuel and Storage Facility Component During Long Term Storage)에 참여하고 있음. 이와 같이 IAEA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공동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기술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경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수립함

B) 기술적측면

- 22.26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필요한 관련기술은 자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할 계획임

22.27 사용후핵연료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수행할 내용은

- (a)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 (b)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운영
- (c)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수송수단 확보
- (d)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 관련 기술연구개발

## 第23章 前 文

- 23.1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의제 21」의 이행을 위하여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요그룹 즉 여성, 청소년 및 아동, 원주민, 민간 단체,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기업, 과학자, 농민 등 각종 그룹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임. 이는 구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과정 및 환경관련 의사결정의 투명화와 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그리고 환경관련 정보에의 접근 등을 위한 것임
- 23.2 환경관련 정보의 접근을 증대하기 위하여 간담회, 토론회, 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3.3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향후 주요 환경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 등 각종 그룹의 의견수렴과정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추후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과정이 정착될 것임

## 第24章 持續的 均衡發展을 향한 女性活動

### 序 文

- 24.1 본 장에서는 『의제 21』 제24장의 배경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고 제24장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환경과 개발분야의 여성참여 증대,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 증대, 여성발전의 기반구축, 환경과 여성보건, 평화문화정착·통일과정에의 여성참여, 여성환경활동 지원체제 등 총 6개 활동분야로 나누어 기술함
- 24.2 국제적으로 여성과 환경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75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여성의 해” 회의에서 시작되었음. 그후 유엔여성십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미래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to Review & Appraise the Achievement of the UN Decade for Women : Equality, Development & Peace)”에서는 환경과 개발에서의 여성의 근본적인 역할을 재조명하였음. 이때까지 여성을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환경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을 환경과 개발의 기여자로 보아야한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음. 앞으로 환경보전에의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여 개발프로젝트에 여성을 참여시킬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 회의의 산물인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에는 환경과 에너지, 식량 및 식수, 농업분야 등에서 여성 참여의 당위성과 역할을 명시하였음
- 24.3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결과인 『의제21』 중 제24장은 환경과 개발 분야에서 여성을 통합시킬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동의 기본방향, 국가와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목표와

그에 따르는 행동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행동의 기본방향에서는 생태계의 관리와 환경침해에 대한 통제에 여성의 참여를 강조함과 동시에, 결국 『의제 21』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정치 및 경제분야의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임을 분명히 함. 정책목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내는데 나이로비미래전략을 반영시킬 것, 환경정책결정에의 여성의 참여와 사회전부문에 걸친 평등실현 보장, 여성에 관한 개발과 환경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구 설치, 평등교육 및 훈련,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조함

24.4 한편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도 『의제21』 제24장에 근거를 두고 환경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여, 각종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여성적 관심사와 시각 통합, 개발과 환경정책의 여성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이 중심 방향으로 설정되고, 그에 따른 행동지침들이 행동강령에 포함됨

24.5 환경보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결국 오늘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파괴가 만연하는 현대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질서를 재정립해야만 한다는 명백한 깨달음에서 비롯됨. 즉, 의·식·주와 관련되는 자원의 관리자로서 여성이 축적해 온 지식과 기술, 출산과 양육을 통해 획득된 감성, 유기적 협동능력을 인정하여 여성을 환경과 개발정책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임

24.6 한국의 여성들은 빈약한 부존자원과 자본속에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산업화 열기아래 환경문제가 대다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1960년대부터 소비자단체활동을 선두로 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해왔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환경을 본격적인 활동의 주제로 택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여성환경전문모임들도 생기고 있음

24.7 그러나 여성의 환경적 역할에 대한 이제까지의 국내 인식은 나이로비미래전략이나 『의제21』 제24장의 근본취지와 차이가 있음. 즉, 여성의 환경활동은 결국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인식되지 못한 채 환경오염을 일상생활의 관리자인 여성의 탓으로 돌려 여성들이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만 잘 치우면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잘못된 인식된 경향이 있었음. 이는 환경문제가 사회의 정치 및 경제구조, 사회구성원의 생활철학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보지 못한 탓임.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 여성이 갖고있는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여성을 소비자로 한정지우는 전통적 사고로 인해 생산자, 교육자, 정치적 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서 여성이 환경과 개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과하고 관련 정책과정에서 여성을 소외시켰으며, 여성에 대한 환경정보의 제공 및 환경기술 교육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였음

24.8 따라서 앞으로 『의제 21』의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 세가지의 근본적인 방향정립이 필요함

첫째, 여성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갖고있는 상품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흠어져 있고 힘없는 개별소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가진 녹색소비자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둘째, 생산자, 직업인으로서 모든 생산활동을 청정생산으로 변화시키고 기업내 환경윤리와 환경을 염두에 두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셋째, 여성은 생명의 재생산자로서, 후손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개념인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누구보다도 민감함. 여성은 미래세대의 환경욕구를 대변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능력은 환경교육의 구심점으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함

넷째, 이상과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여성 환경전문가를 훈련·양성할 기회를 높이며,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높여야 함

## 計 劃 分 野

### A. 환경과 개발분야의 여성참여 증대

#### 배 경

24.9 여성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자로 보는 인식이 요구됨. 환경문제는 자연과 환경의 개발과정에서 여성을 제외시킨 거시적 차원의 의사결정자들이 양육보다는 지배를, 지속성보다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을 우선한 결과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도 좋다는 인간중심의 자연관, 경제성장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사치와 낭비, 편의주의 때문에 위기에 처해있는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고의 개혁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함. 동시에, 환경과 개발 분야에서 여성들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적극 통합시키고, 정보 및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의 생명력과 조화능력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목 표

24.10 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정부의 환경·개발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확대함
- (b) 식품 및 식수오염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관리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킴

- (c) 에너지소비의 합리화, 관련정책 수립, 대중교통관련 정책결정에 여성참여를 증진함
- (d)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여성참여를 증진함
- (e) 기술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참여를 보장함
- (f)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을 구성함
- (g) 여성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기회를 확대함

정책수단
------

- 24.11 199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2005년까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30%로 확대하도록 의결하였음. 이에따라 환경과 개발 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일 것임
- 24.12 최근들어 각종 농약의 남용과 방사선 조사로 인한 식품오염과 수돗물 오염으로 가족의 식생활을 관리하는 여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정부는 식품과 식수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관리·통제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증대할 것임
- 24.13 산업 및 생활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은 물론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보장하며,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통제를 위해 대중교통관련 정책결정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킬 것임

- 24.14 환경과 개발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다 객관적으로 실시되고, 환경오염과 개발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적용과정에 여성참여를 보장함
- 24.15 광범위하게 개발·확산되고 있는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등 신기술이 여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관련 정책수립 및 실시과정에 대표성 있는 여성참여를 보장함
- 24.16 『의제 21』 24장에서는 여성과 환경에 관한 개발과 환경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구를 1995년까지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정부 각 부처 의사결정직의 여성들, 여성과학자 및 환경전문가, 민간여성환경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을 구성하여 『의제 21』 제24장의 이행을 촉구·감시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연결망을 구축하도록 할 것임
- 24.17 각종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여성환경전문가(활동가, 연구자, 의사결정자 등)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공고히 함

#### B.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 확대

배 경

- 24.18 1995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 수는 전체 국회의원의 2.0%에 불과하며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수는 기초의회 약 1.6%, 광역의회 약 5.7%임. 여성각료는 국무위원 24명 중 2명(8.3%)에 불과함. 여

성공무원은 1994년 현재 전체공무원의 26.5%이지만 일반직의 경우는 17.5%에 불과하고,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약 1.8%뿐임. 정부 각부처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현재 약 7.2%임

24.19 그동안 한국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정부와 민간여성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와 사실상의 평등 간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정치와 정책결정 분야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8%에 가깝다는 사실, 한국여성의 높은 교육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 불평등성은 더욱 심각함

24.20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의 평등참여를 1990년대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우선과제로 삼으면서 공동전략을 모색하는 중임.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 7조에 근거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나이로비 미래전략과 관련하여 1990년 제34차회의에서 평등분야의 우선과제로 정치참여 및 정책결정에의 평등을 주제로 한 바 있음

24.21 정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평등참여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되어 여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능케 하므로 중요함. 여성의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의 평등참여는 『의제 21』의 성공적인 이행의 관건임

목 표
-----

24.22 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여성정치지도자,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 고 훈련기회를 확대함

- (b)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의식과 제도를 개선함
- (c) 정부 각부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증진시킴
- (d)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차별로 인한 영향을 상쇄할 잠재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함

### 정책수단

- 24.23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보아서 여성에게는 정치참여를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각종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여성정치지도자,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기회를 확대하도록 촉구할 것임
- 24.24 여성후보를 기피하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권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개선할 것임
- 24.25 199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 각부처의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2005년까지 여성비율을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에따라 정부는 각부처에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 24.26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차별로

인한 영향을 상쇄할 잠재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로 할당제 등을 마련할 것이 요구됨

### C. 여성발전의 기반구축

배 경
-----

24.27 한국정부는 1980년대부터 사회 각 부문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들을 설립하고 행정부내에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였음. 1983년에는 국가적 차원의 여성문제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였으며,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음. 아울러 1990년에는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로 성격을 재규정함으로써 여성정책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정장치를 마련하였음

24.28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범 여성계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법, 모자복지법 등 주요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음

24.29 노동관계법을 보면 198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강화하였으며,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이 1989, 1995년에 개정되었음.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기회 및 대우에서의 평등보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사용자와의 분쟁발생시 해결절차의 마련, 여성직업지도 및 훈련 조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수립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24.30 1958년에 성문화된 가족법이 1989년에 대폭 개정되어 헌법상의 양성 평등에 반하던 성차별적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보완되었음. 한편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복지법이 1989년에 제정되었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보육시설의 확대 등 탁아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반 여건마련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1990년에 제정되었음. 아울러 공무원 임용시행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각각 1989년과 1991년에 개정하여 남녀구분 모집에 의한 여성공무원 채용기회의 제한 가능성이 철폐되었음. 또한 1995년에는 여성이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녀평등 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음

24.31 이상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사회의 평등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조치로서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국가계획(1987-1991)에 여성발전계획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여 제7차계획(1992-1996)에는 여성개발부문의 발전계획을 독립된 장으로 채택하였고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을 수립하였음

24.32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상과 같은 시도와 더불어 1994년 현재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7.9%에 달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을 위한 지원체제가 미흡하여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중부담이 큼. 전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비공식부문의 여성노동과 여성의 가정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경제개념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

24.33 여성의 교육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어 1980년에 여성 평균교육연수가 6.63년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8.58년이 되었으나 이는 남성의 10.55년의 81%에 해당하는 수준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에는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1995년 현재 여성의 대학 취학률(38.6%)은 아직도 남성(69.7%)의 55%에 불과함. 또한 교육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요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사회화는 여성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24.34 사회 구성원의 의식은 표면적으로는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관행에서는 여성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잔존하며 이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학교에서의 사회화,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음. 여성의 사회활동을 이상화하면서도 여성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생활습관은 변하지 않아 여성의 가정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등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목 표
-----

24.35 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가정에서의 성차별적 관습을 철폐함
- (b) 매스미디어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
- (c) 국가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여성노동 전반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함
- (d) 교육 및 훈련에서의 평등을 구축함

(e)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지원체제를 구축함

정책수단

24.36 가정에서의 출산과 자녀양육 과정에서 성차별적 관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사회전반에서 딸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고 우선시하는 의식과 제도는 부부의 출산동기와 행위에 영향을 미쳐 출생성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성차별적인 사회의식을 개선하고 가정내 성차별적인 관습과 전통적 성역할 분리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됨

24.37 대중매체는 즉각적이며 광역적인 대량정보전달능력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는 아직도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며 여성을 대상화, 성적 상품화하고 있음.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매스컴 관련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며, 대중매체 모니터링 교육을 강화할 것임

24.38 국가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함. 특히 도시비공식부문과 농업부문의 여성노동자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

24.39 외형적으로는 여성교육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각종 교육기관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은 잔존하고 있음. 학교교육의 양성평등화를 위해 교과과정의 개정, 교사의 평등의식 고취, 교직의 상위직급에의 여성참여

확대는 물론 사회교육과정에서의 평등기반을 구축할 것임

24.40 증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고정적인 성역할의식을 개선할 것과 동시에 가사노동의 사회화, 육아의 사회적 책임 확대, 노인부양부담의 사회화 등 제반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임

#### D. 환경과 여성보건

배 경
-----

24.41 유해성 폐기물 및 화학제품 등 환경오염원에 의한 생태학적 질병이 빈발하고 있고 이는 자연환경과 관련있는 각종 활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여성에게 보다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와같이 급속한 환경파괴와 오염은 생활의 관리자인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통해 사회성원, 나아가 인류의 재생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또한 환경문제를 인구성장의 탓으로 못박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여성에게 강제적이며 비인간적인 출산통제가 가해지고 있기도 하는 등 환경문제는 여성의 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 이와 관련해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UN 인구 및 발전회의가 ‘여성·환경·건강’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음

24.42 여성보건과 관련된 정책으로 한국정부는 1986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을 토대로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관련 여성보건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고 개인의 문제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하고 삶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개발을 위해서 환경문제와 여성보건의 관련성에 대한 심도있고 체계적

인 접근이 필요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며 나아가 여성발전  
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및 개발정책이 요구됨

## 목 표

24.43 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각종 환경문제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b) 자연환경의 파손으로 인한 문제 뿐 아니라 여성의 삶을 둘러싼  
경제·사회·정치환경까지 포괄하여 여성보전에 접근함으로써 여성  
보건체계 증진을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향상과 연계함
- (c) 여성의 생산적, 재생산적 역할과 복지를 충분히 지원하는 안전하  
고 효율적이며 인간적인 보건체계를 마련함
- (d) 인구정책의 주역으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신  
체 및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결정권을 확보함

## 정책수단

24.44 정부의 보건 및 복지정책에서 여성의 이중역할 및 가사노동 부담, 여  
성이 집중된 취업현장의 근로환경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

- 24.45 환경오염이 여성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차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함.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성보건지표를 개발하고 모든 보건관련 정보에 대한 성별 분류를 체계화함
- 24.46 환경개발사업의 수립 및 승인단계에서 해당 사업과 여성보건과의 관계를 고려함
- 24.47 재생산과 관련된 선택과 건강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제 문화로 여성의 재생산기능이 왜곡되어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불안정한 피임·낙태가 주요한 보건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여성은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성적 접촉이나 그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 또한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를 외부압력을 배제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24.48 여성의 재생산기능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도록 제도와 인식을 전환하고 이상의 제반문제에 대해 여성의 요구와 경험에 충실한 내용을 교육·홍보함
- 24.49 여성의 관심, 신체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의료제도를 비롯한 보건 서비스체계를 확립함. 특히, 비인간화되어 있는 출산의료과정을 시급히 개선함
- 24.50 여성보건에 대해 문해력과 정보, 환경, 성역할, 모자보건을 포함한 총

## 괄적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함

### E. 평화문화정착·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 배 경

24.51 환경문제는 자연환경오염과 그 유발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회문화환경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함. 즉, 상호배타적이고 경쟁적인 문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태도 등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원인임. 이러한 문화는 세계 각지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폭력과 무기경쟁,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력문제도 시급한 조치를 필요로 함

24.52 이에 『의제 21』 24장 2조(h)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환경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법률의 채택 및 강화,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행정·사회·교육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24.53 폭력문화로 야기되는 인류의 생존문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상황과 무기경쟁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 UNCED기간 동안에 채택된 NGO여성협약에서는 환경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세계평화와 군사주의의 종식을 강조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 분단현실로 인해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으므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함

목 표

24.54 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행위와 이를 배태하는 문화적 요인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함
- (b) 여성들이 분단상황 극복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 (c) 세계평화와 폭력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d) 사회전반에 평화와 공존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 노력을 기울임

정책수단

24.55 정부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폭력문화를 개선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 199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정비·보완 함

- 24.56 가족내 폭력을 포함한 각종 사회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응급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가해자교정서비스,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
- 24.57 한반도통일 및 세계평화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보장되도록 함
- 24.58 통일의 실천주체로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의식고취 및 통일대비 프로그램을 실시함. 특히, 분단이후 기본적인 가치관과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남북한 여성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24.59 전쟁, 핵무기 등에 의한 여성피해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국내적, 국제적 공동연대를 지원함
- 24.60 폭력, 성차별 등의 내용을 담은 매스컴이나 각종 미디어, 장난감 등은 어린이, 미성년자의 인성과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가 각종문화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채널을 마련함
- 24.61 각종 사회범죄, 불평등, 전쟁,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자기중심주의, 인명경시풍조,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주의 등을 현사회가 극복해야 할 주요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반영함. 다원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평등의식 확산,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각계각층의 자기중심주의 극복 및 시민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노력함

24.62 인간집단간, 인간-자연간에 조화와 균형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이 이러한 시민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지원체제를 갖추

## F. 여성의 환경활동 지원체제

### 배 경

24.63 80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문적인 환경단체가 조직되고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음. 여성들은 여기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여성단체들도 환경문제를 본격적인 활동주제로 채택하고 있음. 그동안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환경활동을 요약하면,

첫째, 종전의 여성소비자단체나 여성단체들의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 장바구니 사용 등을 위한 캠페인과 운동이 있음

둘째,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과 일부언론사의 지속적인 캠페인의 영향으로 활성화되어 온,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작업이 있음

셋째, 시민운동차원에서 지역환경을 지키기위한 활동이 있음. 이들은 거주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무공해비누만들기 강좌나 알뜰시장 운영, 재활용품 전시 등의 환경이벤트를 개최함

넷째, 환경전문단체는 아니지만 각종 여성단체에서 하는 여성대상 환경교양교육과 세미나가 있음

다섯째, 농촌의 생산자와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면서 농촌을 살리고 오염된 땅을 살리며, 식품오염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생활전반에 ‘살림과 생명’의 문화를 재창조하려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있음

24.64 이 가운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실천 및 홍보활동이 대표적이며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함. 그러나, 여성들의 환경활동은 주로 개별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시도는 미비함

24.65 환경문제는 단지 각 개인 차원에서 사후에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사회의 정치·경제구조와 관련되며 따라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정치적인 활동이 요구됨.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목 표

24.66 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여성의 주체적인 환경관련 제반능력을 배양함
- (b) 여성환경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활동을 중심으로 여성의 세력화방안을 모색함
- (c) 여성환경활동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함

## 정책수단

24.67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환경활동의 내용, 과정, 구체적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뱅크화하여 공식적 정보교류채널을 확립함

- 24.68 여성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자발적인 모임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회의 및 연대활동을 위해 정보,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함
- 24.69 지역환경활동, 생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 시민운동차원에서의 여성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함
- 24.70 『의제 21』 제28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정책의 의사결정, 계획, 집행과정에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계획분야를 수행·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 이행을 위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개발모델을 고안·발전시킴
- 24.71 여성과 환경의 관계, 여성의 환경활동, 여성의 환경정치력 등을 주제로 한 여성환경교육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이를 위해 다양하고 실제적인 여성환경활동·교육모델 및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그 실시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함
- 24.72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여성과 환경지표」를 개발·보급하고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여성과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행함
- (a) 자연자원 관리와 보존에 관한 여성입장에서의 지식과 경험
  - (b) 구조조정계획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 (c) 환경파괴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 (d) 여성과 환경개발간의 구조적 관계

(e)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획과 정책을 개발, 감시하는데 긴급한 조치 및 대안을 마련

## 第25章 持續 가능한 開發을 위한 兒童과 靑少年의 役割

### 序 文

25.1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아울러 이의 원활한 실현을 위한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을 주요한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왔음. 특히 1977년이후에는 청소년육성 정책과 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업무 추진부서의 분산, 총괄조정 기능의 미흡 등을 보완하였음. 또한 1988년에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기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청소년업무의 총괄적인 조정 및 추진체계를 완비하였음

25.2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육성 관련부처의 추진과제를 수렴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매년도별로 종합적인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여 청소년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등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 고용기회의 증진은 물론 생활수준의 향상을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수행하여 왔음

25.3 특히 근년에 들어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환경보전을 어린 시기에서부터 생활화할 수 있는 각종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주력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하에서 가능한한 모든 사회적·국

가적 자원을 동원하여 청소년의 환경보전 의식과 생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25.4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차원에서 제6차 교육과정개정 시기와 맞춰 1992년도에는 국민학교에서부터 환경관련 교과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고시하였으며, 아울러 “환경탐구시리즈”라는 환경관련 교과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음. 또한 중·고등학생에서는 “환경”과 “환경과학”이라는 교과를 선택교과로 개설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199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1996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특히 국민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실정에 맞춰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사회 하천과 오염환경에 대한 실태관찰이나 환경보전 실천활동을 다방면으로 실천하고 있음. 아울러 사회의 각종 언론매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환경감시운동 즉, 셋강살리기 운동과 환경스카우트운동에 청소년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을 비롯한 9개 청소년단체에서는 ‘지구살리기’등 23종 이상의 각종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음

25.5 아울러 정부에서는 청소년이 덕·체·지·예를 고루 갖춘 전인적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주체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5.6 고도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고용기회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향상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또한 괄목할만한 진전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병리적 현상으로 국가의 복지적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교육이나 취업기회를 상

실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계층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며, 스스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부족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적·지역적 토론회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의식과 참여의 결여라는 부분적인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수준을 보다 향상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나아가 국제공동체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확대하는 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5.6 아울러 우리나라는 1980년대이후 청소년육성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과 시행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5.7 위와 같이 청소년의 보다 밝고 건전한 미래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모든 수준에서의 청소년과의 대화확대와 정보제공,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 취업기회의 확대, 청소년 참여기회의 창출·촉진 및 법적 보호, 기술·기회·지원제공 등을 확대하고 지구환경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강화와 증대를 위해 이 장에서의 계획분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a) 건전한 아동 및 청소년활동과 환경생활화의 기회보장과참여확대

(b)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환경관련 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c)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환경보전 정보교환 통로 개설

(d) 청소년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

## 計 劃 分 野

### A. 건전한 아동 및 청소년활동과 환경생활화의 기회보장 및 참여확대

배 경
-----

- 25.8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생활수준을 증진하고, 교육과 청소년 고용기회 확대 및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의 역할 증대를 위해 주요한 국가적 과제임. 특히 그들의 조화로운 심신발달과 각종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스스로 체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5.9 현재 대한 YWCA연합회를 비롯한 청소년 유관단체 등에서는 “환경기사모임전”, “환경교육(녹색여행)”, “자연사랑기행”, “생명의 물 운반하기”, “지구를 살리자”, “잔존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우리 농토의 건강진단” 등 24종의 각종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기회는 물론 환경보전 인식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25.10 또한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청소년의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활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인식, 이해,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그렇지만 아직까지 환경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보급 및 운영자간의 정보교환 부족 등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수준이 담보 상태에 있음. 또한 청소년관련 단체의

재정부족과 아이디어 빈곤, 프로그램개발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시대 변화와 환경살리기 운동과 같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의 확보가 미진한 상태임

## 목 표

25.11 환경보호와 경제사회적 개발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고 청소년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보전 프로그램, 각종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 아동과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활동참여를 유도·지원함으로써 아동기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하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수단

25.12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가정에서부터 물 사용량과 합성세제 이용줄이기, 음식물 오염줄이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각종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적인 가정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함.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가정의 환경과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규 학교교육과 특별활동 및 각종 단체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

25.13 특히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개발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보전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각급학교나 청소년단체등에 보급함. 아울러

현재 각종 언론매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스카우트 운동과 셋강살리기 운동 등에 청소년단체와 관련 기관 및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물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환경관련 운동정보를 제공함

25.14 청소년의 능동적인 활동을 확대·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전문지식을 구비하여 효과적인 지도와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자의 국가자격제의 실시를 계기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한 청소년지도자의 재교육에 주력함

25.15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단위 중심의 청소년단체 조직을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중심, 직능중심으로 전환을 유도·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의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감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서울 YMCA등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환경감시운동’등의 환경관련 민간운동에 청소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보 홍보물이나 청소년단체 간행물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코너를 개설·유도·지원함

25.16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공공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등 관련시설의 개방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새로운 청소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여 각종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환경관련 행사(환경전시회, 환경살리기 아이디어 올림픽 등)를 적극 유치·전개할 수 있도록 함

B.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환경관련 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 25.17 고도경제성장과 산업화 추진 결과 일반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정부의 강력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전 청소년육성 계획의 집행으로 상당부문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여건과 환경이 개선되어 왔음
- 25.18 그러나 우리사회가 산업화, 민주화되어감에 따라 사회계층간의 생활 환경과 여건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임. 특히 일부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서의 참여나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등에서 아직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일부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에 의한 문제행동 유발이나 비행우려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 25.19 특히 농어촌 청소년들은 이농현상으로 수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적·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취업과 학습기회를 놓친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은 사회적 무관심과 열등감으로 탈선의 소지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학력·무기능으로 인해 취업기회를 갖기 어렵거나 잦은 이직등으로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실제 정부의 복지지원에 요망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가정의 빈곤과 진학기회의 상실 등으로 근로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근로 청소년들은 상대적 열등감과 의욕의 상실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며 각종 문화복지 혜택도 부족한 현실임. 또한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과 소년소년가장 등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지원을 요하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25.20 따라서 사회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보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등 보다 나은 사회참여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목 표

25.21 농어촌 청소년, 근로청소년, 무직미진학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여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활여건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육과 직업훈련 및 각종 문화, 체육 및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관련 기술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함

정책수단

25.22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에게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여건과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파악하여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수립·시행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관련 정보통’을 현재 설치·구상하고 있는 청소년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반영 추진함

25.23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무직미진학 청소년에게 발생하기 쉬운 소

극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양식의 내면화현상에 대한 심리치료와 해결을 위해 각종 상담관련기관의 접근통로를 개방·확대하는 상담사업을 강화함

25.24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산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엄격한 근로시간 준수와 실질적인 소득증대 등의 기초복지를 보장하는 법제적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그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상담등의 통로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한 각종 정서함양 활동을 적극 지원함

25.25 농어촌 청소년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향토의식의 함양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고 도농간의 교환봉사활동이나 문화탐방활동 등의 기회를 확대함

25.26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소년소녀가장과 같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생활지원 방안을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의 측면에서 확대 시행함

### C.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환경보전 정보교환 통로 개설

배 경
-----

25.27 개발 및 환경문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문제에 대한 현재적 관점과 대처 뿐만 아니라 향후 파생될 문제까지 고려하는 인식과 활동이 필요함

25.28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현재의 개발에 따른 문제는 물론 향후 발생할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 또한 청소년

들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식과 활동은 미래사회의 개발과 환경문제 해결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25.29 청소년들이 개발 및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과 그에 따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향후 활동의 주역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음

## 목 표

25.30 청소년들의 생활 및 활동단위별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및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활화에 대한 개인의 의견표출 기회를 정례화하여 그들의 의견을 정부나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의사 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수단

25.31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는 일환으로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른 청소년육성운동’의 실천을 위하여 중앙연합회와 지방단위의 지부 및 청소년단체들의 협의기구인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단체나 학교단위의 청소년대표기구를 통해 청소년의 환경관련 의견을 토의 수렴하는 절차를 확립함

25.32 지역사회나 학교단위에서 환경보전의 생활화에 대한 글짓기대회나 수기발표대회 등을 학교나 청소년단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소년 직업훈련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환경관련 기술이나 지식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유도함

25.33 청소년들의 환경운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단체는 물론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성한 단체나 조직에서 의견을 집약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과 단체에 ‘청소년 환경보전 이야기통’을 비치함. 또한 현재 청소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환경관련 코너를 개설·운용함으로써 그들의 환경보전 관련의견을 언제나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그 의견을 지역사회나 정부의 의견수렴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후에는 전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스스로의 의사를 출판·보급함으로써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통로로 활용함

#### D. 청소년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

배 경
-----

25.34 각종 개발은 일반적으로 시행 국가의 지역적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자국의 환경은 물론 인접국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25.35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역적 차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함

25.36 이러한 개발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세계각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환경보전 활동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정보와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활동이 촉진될 때 향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범세계적인 공감대와 연대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임

목 표
-----

25.37 각종 국제교류활동 특히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에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적인 환경보호 및 개발 활동에 기여하도록 함

정책수단
------

25.38 청소년 국제기구 및 환경관련 각종 회의 및 학술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참여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함

25.39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의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간 이해와 국제감각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함

25.40 국가간 청소년 교류협정을 확대 체결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지구환경 살리기 운동과 생활화를 관찰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第26章 原住民과 原住民 共同體 役割의 認識強化

### 序 文

- 26.1 세계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는 세계인구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들의 환경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되어 왔음. 자연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의 상호작용 및 원주민의 문화, 사회, 경제, 물질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및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 강화가 필요 함
- 26.2 이와 같은 취지는 이미 ILO 원주민 협약(ILO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과 원주민에 관한 UN 실무작업반에 의해 준비된 “원주민에 관한 선언” 초안에 포함되어 있음. UN총회 결의에 의해 1993년이 “세계 원주민의 해”로 선포되는 등 관련주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 26.3 「의제 21」에서 의미하는 원주민은 우리나라에 실재하지 않으므로 국내적으로 관련분야의 실천계획 수립은 불필요하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차원에서 원주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참여하고자 함

### 計 劃 分 野

## A. 원주민 보호관련 국제규범 제정에 참여

### 배경 및 목표

26.4 현재로서는 원주민 보호관련 국제협약은 ILO의 “원주민 및 부족에 관한 협약 및 권고” (1957)와 “독립국가내의 원주민 협약” (1989)등 소수에 불과하나, 향후 「의제 21」의 이행차원에서 관련규범 제정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정책수단

26.5 관련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적·지역적 논의에 참여하며, 특히 UN의 관련동향을 주시함

## B. 원주민 보호를 위한 지역사업에 참여

### 배경 및 목표

26.6 동아시아에는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해당 지역내 원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지역적 노력에 우리능력의 범위내에서 동참함

정책수단

26.7 관련사업에 관한 논의와 실질적인 사업이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 차원에서 개시될 경우 이에 참가함

C. 원주민의 지적재산권 및 문화재산권 보호 문제

배경 및 목표

26.8 원주민의 가치, 전통적 지식 및 관습을 존중하며 이들의 지적, 문화적 특성과 관습을 유지할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정책 및 법률장치의 채택 및 강화에 노력

정책수단

26.9 UNESC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 관계기구에서 관련 국제규범 제정 및 정책채택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이에 참여함.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Farmer's Right 논의동향에도 유의함

D. 원주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형성에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배경 및 목표

26.10 원주민의 재생가능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이며 직접적인 접근이 원주민에게 여전히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생계방식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전환 또는 대체될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재정과 기술이 지원되도록 협조함

정책수단

26.11 UNDP, UNEP, UNESCO등 관련기구에서의 원주민의 능력형성을 위한 재정, 기술지원에 관한 논의가 개시될 경우 이에 초기부터 참여하고, 양자간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추진 및 기술훈련, 전문가 파견등 원조사업을 추진함

E. 개도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의식 제고 및 원주민 존중

배경 및 목표

26.12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진출시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예를 들어, 산림벌채) 등으로 인하여 원주민과 갈등, 마찰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대개도국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의 환경인식 고양과 원주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

26.13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원주민과의 예상되는 갈등, 마찰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갈등 및 마찰소지가 있는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함

## 第27章 民間團體의 役割強化

### 序 文

- 27.1 사회가 산업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분야가 더욱 증대하고 있지만 자원과 능력의 한계를 안고 있는 정부로서 그러한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 27.2 특히 민간단체는 정부와 주민을 연결시키는 중간조직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그러므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음. 따라서 우리정부는 1992년에 선포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 27.3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현재 200여개의 민간단체가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정부에 허가 또는 신고단체가 131개, 환경관련 임의단체 25개, 기타 환경관련단체 4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에 환경 이외의 목적으로 활동하던 민간단체들도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임
- 27.4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은 그동안 개발논리에 맞서 꾸준히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활동을 전개하여 오늘날 환경보전이 우리나라의 주요정책과제로 되게 하는데 기여하여 왔음
- 27.5 따라서 정부는 환경보전에 있어서 이러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하여 환경정책 수립·시행에 민간단체의 참여확대,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을 실천계획으로 설정하였음

## 計 劃 分 野

### A. 환경정책 수립·시행에 민간단체의 참여확대

#### 배 경

27.6 민간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자율적 활동과정에서 축적된 현장의 의견과 연구성파로 환경보전 수립·시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를 환경정책 수립·시행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단체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목 표

27.7 민간단체가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환경정책의 신뢰성 및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함

#### 정책수단

- 27.8 민간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매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하여 주요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27.9 기타 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련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여 민간단체의 정책대안 제시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함
- 27.10 각종 환경정책에 대한 집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민간단체를 통한 민간교육 및 홍보,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등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

## B.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지원

배 경

- 27.11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환경보전 활동에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 활동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단체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현재 민간단체의 각종 환경보전행사 및 교육·홍보활동 등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

목 표

27.12 환경보전활동에 민간단체와 정부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간활동의 성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정책수단

27.13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환경보전행사에 정부가 후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시키도록 함

27.14 민간단체 회원들이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 및 명예환경감시원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감시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함

27.15 민간단체에 환경백서, 환경연감 등과 같은 정부 발간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각종 정책자료집 등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능력을 향상시킴

27.16 민간단체지도자, 주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민간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경보전활동 모델을 개발해 나감

27.17 은행의 환경신탁예금 및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민간단체의 각종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감

C.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 배 경

27.18 환경문제는 이제 오존층 파괴, 산성비, 지구의 온난화 현상 등과 같은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환경보전은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27.19 이러한 시점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노력은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각지역별로 민간단체 상호간에 서로 연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글로벌 포럼” 과 같은 전 세계적인 모임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목 표

27.20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이 국제적인 민간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세계의 민간단체들과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수단

27.21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활동역량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

27.22 각종 국내외 환경정보를 국내 민간단체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단체들의 국제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킴

27.33 국제적인 환경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보 네트워크(SDN)를 구축하여 민간단체들이 전산망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第28章 地方政府的 役割

### 序 文

- 28.1 지구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색이 범인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이며 이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지방수준에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환경보전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28.2 199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5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환경관리기능도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구환경문제의 많은 부분이 지방의 국지적 활동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으므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 조치의 우선순위 및 시행방법을 서로 협력하여 지구환경보전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함
- 28.3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를 자율과 책임을 갖고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환경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 책임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 28.4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지역특성 및 개발수준에 맞는 환경보전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수준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a)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정책의 수립, 집행

- (b) 구체적인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작성
- (c)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 (d)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강화를 위한 환경행정체제의 정비
- (e) 관련 집단간 협력체제의 구축
- (f)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환경관리재원의 확보

## 計 劃 分 野

### A. 자연친화적 지역개발정책수립

배      경
----------

28.5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환경부하를 가중시키고, 발생된 오염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자원과 토지 및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는 도시 및 지역구조를 형성하지 못했음

목      표
----------

28.6 도시계획을 포함한 모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환경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전과정을 관리해야 함

- 28.7 자원의 이용은 지역환경의 물리적 구조 및 토지이용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28.8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교통, 공급처리 등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정책수단
------

- 28.9 지역의 환경용량에 대한 개념과 모델을 정립하고 적절한 평가를 시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리정보체계(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을 구축하여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경용량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부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Mixed Land-Use)으로의 전환을 시도함
- 28.10 도시지역에서는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도시내 외곽순환도로, 도심고속화도로, 도로의 입체화등 도로관련시설의 정비 및 확충계획을 각 자치단체별로 수립하고, 교통수요의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서비스향상, 버스전용차선의 확대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근무시차제 및 장기적으로는 재택근무의 정착을 유도함
- 28.11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분야투자율을 제고하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처리시설의 확충계획을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함

28.12 발생한 쓰레기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쓰레기 관로수거 체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수립시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지역내에 상설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쓰레기중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거를 원활히 하며,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환경공생주택 건설계획의 수립과 지역내 미이용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B. 『지방의제 21』의 채택

배 경
-----

28.13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참여가 『의제 21』의 목적달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제 21』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행동계획으로서 지방이 지속가능한 개발노력을 위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28.14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지방수준에서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연합하여 『지방의제 21』의 채택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함

## 목 표

28.15 『지방의제 21』은 지방수준에서 무엇이 지속가능한 개발인지를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발과정속에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조체제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임

28.16 『지방의제 21』의 작성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 및 과제를 제시함
- (b)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각 집단의 역할, 전략, 일정을 명시함
- (c) 주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각 집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함
- (d)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관련집단간 협력(정보교환 등)을 지원함

## 정책수단

28.17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수준에서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8.18 『지방의제 21』의 작성을 위해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합의절차가 필

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연합)는 지역사회의 각 집 단들이 참여하는 지방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의 여건 및 능력에 맞는 『지방의제 21』을 수립함

28.19 중앙정부는 『지방의제 21』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립 지침과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국제협력 등을 지원함

### C.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 배 경

28.20 지역내의 제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예측, 관리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 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산업활동등에서 발생하는 오염현황에 대한 측정, 분석,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

28.21 지속적인 환경정보의 수집, 분류 및 공개를 통하여 적절한 분석과 평 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의 환경관리기준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부합하는 지역환경관리목표의 정립과 이에 따른 구체적 인 행동계획(Action Plan)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

#### 목 표

28.22 지역내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현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조

정,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식을 개발함

28.23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용량을 감안한 분야별 환경관리목표를 설정함과 더불어 지역환경기준을 정하고 환경관리기술의 개발과 기업·시민의 참여를 유도함

#### 정책수단

28.24 합리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의 측정망보다 세분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도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관리인력과 재원의 확충을 도모함

28.25 민간 환경운동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의 환경감시기구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환경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28.26 환경감시센터를 통해 얻어낸 각종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환경감시센터내에 환경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환경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하도록 함

28.27 민간기업의 분야에서 스스로 환경법규준수상황이나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체계적으로 체크·심사하는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등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감사적 수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8.28 민간부문의 환경관리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과 우수한 친환경관리 기술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추천제의 실시를 통해 친환경기술개발을 유도함

#### D. 지방 환경행정체제의 정비

배 경

28.29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대,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 지역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요구의 증대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방환경행정체제에 대한 정비가 요청되고 있음

목 표

28.30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지방 환경행정체제를 새롭게 정비

28.31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환경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방 환경행정체제로 정비

28.32 국제적인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협조할 수 있는 지방 환경행정체제로 정비

정책수단

- 28.33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이념의 공표와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
- 28.34 환경이념의 실현을 위한 환경시책의 계획적, 종합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함
- 28.35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환경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기본조례·환경기본계획 작성시 의견수렴, 환경현장의 작성, 각종 시민활동의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함
- 28.3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환경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예측기법 개발, 주민의견수렴과정의 다양화, 평가대상규모의 탄력적 적용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28.37 환경관리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강화하여 시·도환경정책심의회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내 환경관련부서간의 환경조정회의, 환경연차보고서의 작성·공표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함

#### E. 환경교육의 제공

배 경
--------

- 28.38 환경관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합의에 기초한 지방환경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주민이나 관련집단에 대한 환경교육기회의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목 표

28.39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지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보급 및 도덕성 확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임

## 정책수단

28.40 환경교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담당기관을 지원하거나 직접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환경정보지의 발간과 함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주민과의 대화 또는 관련행사를 수시로 개최토록 함

28.41 일반시민, 여성, 청소년, 지방기업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공사례의 소개와 함께 참여의식을 제고함

## F. 환경협력체제의 구축

## 배 경

28.42 지구환경보전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동노력이 필요하므로 효과적인 수직적, 수평적 환경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28.4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동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의 시행경 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모색하고 지

역사회 각 집단에 대한 정보, 교육, 기술지원을 담당해야 하므로 이미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 중앙정부, 민간단체와의 협력증진이 필요함

## 목 표

28.44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간에 환경정보 및 환경기술을 교류함으로써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중앙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임

28.45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책개발 및 문제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간환경단체등 자발적 환경운동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의 환경의식과 실천운동의 효과성을 제고함

## 정책수단

28.46 선진국 지방정부의 환경관리경험 및 기술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망을 구축함

(a)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IULA)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환 및 지원

(b)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감소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에 대한 경험과 정보교환을 위해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ICLEI)와 협력, 지원

(c)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통한 외국 지방정부와의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28.4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 및 조정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중앙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환경협의회의 설치를 추진함

28.48 민간환경단체등 자발적 환경운동조직에 대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공을 통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유기적인 연대망을 구축함

G. 자원조달

배 경
-----

28.49 환경관련 투자 및 시설운영비는 막대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투자범위도 환경보전 필요성의 증대와 환경관련 업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환경투자재원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이 미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으로는 환경관련재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목 표
-----

28.50 환경관련재원을 조달함과 동시에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감소와 환경 오염방지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문에 있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기타 환경관련 투자재원을 연차적이고도 획기적으로 확충하도록 함

정책수단

28.5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재원확충을 위하여 환경관련 세제의 도입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함

28.52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벌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원조달과 환경오염감소라는 두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수질오염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액수도 증액하도록 함

28.53 지방세중 개발과 관련된 목적세 징수액의 일부를 환경관련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第29章 勤勞者와 勞動組合의 役割強化

### 序 文

- 29.1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가장 책임있는 영역이 산업현장이며 근로자는 그 일차적인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환경과 개발 문제에 대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됨. 또한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환경과 개발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29.2 다만 환경과 개발문제에 있어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은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협조에 근거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이해 제고를 통해 환경과피의 가능성을 가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건전한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9.3 정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정부, 근로자,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사 양자 및 노·사·정 3자의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므로 각 구성원의 역할 강화와 동시에 3자의 협의 및 공동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29.4 이와함께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기준설정과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술 전문성의 확보 및 영세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計 劃 分 野

## A. 산업안전 및 환경에 관한 ILO 협약 등 국제기준 수용

### 배 경

29.5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관한 협약 채택 등을 통해 산업활동을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준설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적극적 협약 비준을 요청하고 있음

### 목 표

29.6 ILO 협약과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비교분석을 통해 선진적 환경기준을 수용함으로써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기준설정과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정책수단

29.7 필요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분야 ILO 협약비준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함

29.8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폭발 및 유해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

는 주요 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주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함

29.9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를 통한 작업자 건강관리를 위해 1) 화학물질의 정보를 기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도를 도입하고 2)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3) 신규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성 조사를 실시토록 함

#### B. 양자 및 3자기구의 역할 강화와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관련 단체협약 체결의 권장

배 경
-----

29.10 각 개별사업체에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연중 수시로 열리는 각 지역단위 노·사·정 간담회에서 작업환경 및 산업생산의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 지역 행정관청이 정책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있음. 전국단위에서는 노·사·정 3자구성의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단체협약 내용에 작업환경의 기준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음

29.11 다만 단체협약, 양자 및 3자기구의 논의는 산업현장의 미시적 작업환경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사회전체적 측면에서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지 못함

목 표

29.12 근로자와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건강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사 및 노·사·정의 조화된 공동노력을 목표로 함

정책수단

29.13 노사대표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과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시행토록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자 안정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29.14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및 사업의 개발과 시행, 재해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지도·감독,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무재해운동 추진,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함

29.15 노사협의회 및 지역단위 노·사·정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안전, 건강 및 환경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C. 업무상 재해, 부상 및 질병 예방

### 배경 및 목적

- 29.16 정부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91년부터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인 1%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9.17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생산설비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중대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빈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산업재해가 노사관계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임
- 29.18 정부는 90년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중독사건을 계기로 직업병의 근원적, 항구적 예방을 위해 91년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이 대책은 1)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 2) 작업환경관리의 전문성 제고 3) 산업보건전문연구기관 및 인력 확충 4) 직업병 판정 및 보상의 합리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9.19 또한 정부는 재해발생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92년에 산업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 대책은 1) 사망재해 감소대책 2) 건설재해예방 강화 3) 무재해 운동의 전국적 확산 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9.20 정부는 산업재해가 300인미만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저비용으로 공정과 작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높은 재해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산재예방기법(Low Cost Solution)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또한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업체에 대하여 95년부터 3년간에 걸쳐 3,00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음
- 29.21 업무상 재해, 부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구조 및 기술발달 정도에 맞게 개정함. 또한 이런 기준의 준수를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의 사업장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관 업무 수행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함
- 29.22 노동부 산하 재해예방 전문단체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능과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영세기업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재해예방기술 지도를 강화함

D. 직업상의 건강·안전 및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강화

## 목 표

29.23 생산활동중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재해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능동적 예방활동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을 목표로 함

## 정책수단

29.24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내실있게 시행 되도록 교육기법을 지도함. 또한 산업기술 및 작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대비하고 작업별로 안전작업기법 등을 보급하기 위해 위험요인별 및 작업내용별로 전문화된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함

29.25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선진국의 예방기법을 도입하여 사업장에 보급하기 위해

- (a)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기법 등의 연구 용역사업을 시행
- (b)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련단체 주관으로 주제별 세미나, 발표회 등 개최
- (c)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기법 등 교과과정 개설
- (d)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의 해외연수 및 국제노동기구의 준전문가제도 (Associate Expert) 운영 등을 시행함

## 第30章 産 業 界

### 序 文

- 30.1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은 우리사회 및 경제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과 산업은 교역, 고용 및 생계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체계의 변화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의제 21』과 관계되는 제반활동들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30.2 기업과 산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청정한 생산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자원의 활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나갈 수 있음. 기술혁신과 이의 적용 및 기업간 이전은 대부분 기업 및 산업이 수행해야 할 업무임
- 30.3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의 “환경선언”등을 통해 환경관리에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 및 산업계는 환경관리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결정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로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임
- 30.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과 산업의 역할은 우리경제 및 환경조건에 적합한 규제조치와 경제적 수단의 합리적 조화에 의해 점차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는 기본정신하에, 정부는 기업의 창의성과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촉진시키는 실천계획들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임

## 計 劃 分 野

### A. 청정생산의 촉진

#### 배 경

- 30.5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산, 기술 및 기업경영은 재이용될 수 없는 잔유물을 발생시키고, 인류건강 및 환경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폐기물을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들을 만들어 냄
- 30.6 지금까지 기업과 산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원료 조달에서부터 제품의 제조, 사용 및 사용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주기 전반에 걸쳐 폐기물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을 전환하여 기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높혀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목 표

- 30.7 정부와 기업은 생산단위당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축시킴과 아울러,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을 목표로 함

- 30.8 정부와 기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우선 합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
- 30.9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고, 환경법규의 실천과 그 합리성 제고에 정부, 기업 및 산업계가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함
- 30.10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환경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과 산업계는 학계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환경비용 내부화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시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30.11 기업의 환경목표선언과 이의 실천기록 및 평가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기업헌장”이 채택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촉구되고 있는 국제추세에 부응하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환경관리체계를 중견 및 중소기업에까지 보급확대토록 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반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추진함
- 30.12 정부와 산업계는 제지, 시멘트, 가전, 자동차등 개별산업에 있어 제품의 원료조달에서 제조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적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함과 아울러, 재생이용이 가능한 소재의 선택, 조립방법의 개

선, 재생이용가능자원의 회수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재생이용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 및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참여도 점차 확대해 나감

30.13 정부는 청정공정, 에너지저소비공정등 청정생산과 관련한 기술과 노하우의 평가,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해 기업간 협력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산·학·연 연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정부와 산업계는 또한 학계, 연구기관, 외국의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청정생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함

## B. 책임있는 기업가정신의 증진

### 배 경

30.14 환경에 책임이 있는 기업가정신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도전과 기회를 이용, 혁신을 창조하는 원동력임

30.15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임과 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을 극소화시키며 환경의 질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목 표

30.16 천연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기업가의 수를 늘려나감

정책수단

30.17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업활동의 환경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반제도 및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되, 경제적 유인제공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시행함과 아울러, 정보제공과 하부구조의 적절한 지원을 해 나감.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환경경영표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활동이 확산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30.18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자, 특히 창업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함

30.19 정부와 산업계는 국책 및 민간연구소,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업경영의 환경측면을 지속적으로 연구함과 아울러, 기업경영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과 일반국민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환경관리의 공개성을 높혀 나감

30.20 정부와 산업계는 환경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경험을 다른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전파시켜, 관리기술, 시장개척 및 기술적 노하우의 보급확대를 촉진시킴

## 第31章 科學技術界

### 序 文

- 31.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계는 정책입안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환경이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확보토록 하여 정책입안자와 일반국민사이의 교량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31.2 이를 위하여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속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과학기술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a)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학교밖 과학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 (b)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문화세미나 개최, TV등 홍보매체를 통한 과학기술홍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사회화를 추진하고 있고
- (c) 공무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습득기회 확충을 위하여 과학기술행정전문교육과정등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
- 31.3 그러나 최근 고도경제성장의 결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분배구조의 개선으로 인한 중산층의 증가, 정보화 사회의 진척으로 다양한 문화와

여가생활 및 건강한 자연환경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고조됨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31.4 또한 과학기술관련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들이 환경관련 정책건의, 환경보전운동, 환경의식개혁운동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환경과학기술특별위원회 및 대한환경공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한국수질보전학회, 한국대기보전학회 등 환경관련 다수 학회

(b) 환경과학연구협의회, 환경과 공해연구회, 한국자연보존협회,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환경운동연합등 환경관련 민간단체들

(c) 조선일보(셋강살리기운동), 동아일보(그린스카우트)등 언론기관

31.5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 할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장과 10인의 위촉자문위원으로 발족함

31.6 아울러 과학기술이 인간과 자연을 중시하고 문화적 전통과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구하는 대중의 욕구가 점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이의 실현을 위한 실천강령이 요구됨

31.7 이러한 배경하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지향해 나갈 계획분야는 다음과 같음

(a) 과학기술계, 정책결정자와 대중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강화

(b) 환경보전 실행규칙 및 지침의 장려

## 計 劃 分 野

A. 과학기술계, 정책결정자와 대중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강화

### 필요성 및 정책방향

- 31.8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책은 과학기술자와 정책결정자 그리고 일반대중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동참할 때 그 실효성이 보장되며, 이를 위하여는 환경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와 지식이 자유롭게 교환되어 정책결정자들과 일반대중에 의해 널리 알려져야 함
- 31.9 또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간참여 및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 대학등이 축적해 온 연구개발성과 및 경험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음

### 목 표

- 31.10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민간참여의 확대를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성을 높임
- 31.11 환경오염실상, 각종 환경시책 등 환경정보의 공개로 환경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과학기술계의 주도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확보함

### 31.12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민간참여 및 전문가 활용 확대

- (a)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등 국가 주요과학기술정책 심의·결정기구에의 민간전문가 참여폭을 확대함
- (b) 환경정책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환경보전자문회의와 13개 분과위원회에 민간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확대함
- (c) 민간환경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통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사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표를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함

### 31.1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의 활성화

자문회의는 국가의 장기발전 비전제시 및 이와 연계된 중·단기적 실천대안의 마련과 비과학기술계와 과학기술계의 연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인식확산 등을 통하여 대통령의 과학기술 철학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감

### 31.14 환경관련 기술정보 제공

- (a) 국립환경연구원의 국제환경 정보원 조회제도(INFOTERRA)를 통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상담자등 민원인, 관련 공무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함

- (b) 산업기술정보원(KINITI) 및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환경부문을 포함하고 문헌정보(환경기술정보, 환경정책정보, 환경인력 및 기관정보)와 수치정보(환경오염현황정보, 오염원 관련 정보, 사회경제 정보) 및 그래픽정보(지형도, 생태도, 토지이용도, 토양도, 도로도, 수리, 행정구역 등)를 망라한 『종합환경정보망개발사업』을 추진함

### 31.15 여론형성계층과의 대화기회 확대

- (a) 종교인, 학자, 기업인, 민간단체 대표자, 언론인 등 여론 형성층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DM(Direct Mail)망을 운영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과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환경시책의 홍보와 이해, 동참을 구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기회로 활용함
- (b) 환경문제에 대한 민·관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보전 캠페인을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국민의식의 확산에 노력함

### 31.16 정부출연(연), 대학등의 연구성과 확산 및 환경산업 육성

- (a) 정부출연(연), 대학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을 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동안 쌓아 온 출연(연), 대학의 연구개발성과 및 경험을 산업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산업계와의 기술협력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 무상양허사업, 산업계 기술혁신지원사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함

- (b) 환경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인 환경산업육성대책을 추진하며, 특히 폐기물처리업을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31.17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과학기술국민이해사업의 주요목표에 환경과 개발을 포함시키고 산업 및 사회의 수요와 과학기술자들의 창의성을 연계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처가 지원하고 있는 산학연 협동연구회(STUDY CIRCLE)중 환경오염정측정 및 정화기술 개발연구회, 환경오염사전예방연구회 및 환경과학기술정책연구회등 환경관련 연구회를 활성화시킴

### 31.18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취업기회 확대 및 활동강화

정부는 D/B구축과 인력은행의 설치를 통해 여성과학기술 인력수급과 동향을 파악하며, 기혼여성을 위한 육아시설 확대 및 재교육 시설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고, 학계에서는 전문교육과 더불어 여성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여성들도 끊임없는 능력 배양을 위해 진취적 도전적 사고와 능동적 참여의식 및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의식과 협동정신의 함양에 힘쓰도록 함

## B. 환경보전 실행규칙 및 지침의 장려

필요성 및 정책방향

- 31.19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물질소비와 인구성장과 관련된 정책의 포괄적인 수정,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길 뿐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량보다는 삶의 질, 형평성, 능률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생산성이나 기술보다는 지구 공동체의식, 공감대 형성 등과 같은 덕목의 확산이 중요하고 시급함
- 31.20 그러나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환경교육을 통해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환경교육은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임
- 31.21 한편,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 있어 과학자들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간성과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을 사용한 결과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므로서 연구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견지해야 함
- 31.22 1972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학회 및 단체의 집합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과학기술자 윤리요강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어 '80년 과학의 날(4. 21)에 인간의 존엄성이 숭상되고 그 가치가 보장되는 복지사회구현에 헌신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인의 신조를 채택한바 있음
- 31.23 또한 '92년 6월에는 정부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및 14개항의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공포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여, 환경가꾸기 실천의식을 배양하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동시에 환경 관계법령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음

## 목 표

- 31.24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구성하는 지역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동시에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며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가치관·태도 및 기능의 함양을 위한 학교 및 사회 교육을 확대·강화함
- 31.25 정책결정과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위해 과학기술계와 일반대중의 합의에 의한 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고 과학자의 전문 직업정신을 함양함

## 정책수단

### 31.26 환경교육훈련의 강화

- (a) 정규교육과정에 환경과 개발에 관련한 내용은 국민학교의 국어등 6과목, 중학교는 기술등 10과목, 고등학교는 생물등 22개 과목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과목간 연계성 및 전체적인 체계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독립 교과목을 신설토록 하고, 관련 교과목의 환경내용도 대폭 강화함. '95년부터 중학교에는 『환경』 과목의 선택교과 신설 및 '96년부터 고등학교에 『환경과학』 과목의 선택교과 채택
- (b) 환경사회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정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기술요원과정, 지구

환경관련 국제업무 연수반 및 주부환경강좌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함

### 31.27 환경마크제도의 운영 활성화

같은 종류의 상품중 다른 상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는 상품임을 인증해 주어 기업체로 하여금 저오염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환경보전운동에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 환경마크를 상품에 부착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장려·확대해 나감

### 31.28 환경관련 실행규칙 및 지침의 장려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및 14개 환경보전기본원칙을 기초로 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현행 『과학기술인의 신조』를 검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자율적인 공감대 형성과 실천의식을 유도해 나가고, 주부클럽, YMCA/YWCA, 종교단체 및 환경분야 NGO의 활동지원을 통한 환경윤리의 실천을 강화해 나감

### 31.29 환경관계 법령의 정비 및 국제 환경협력 강화

현재 운영중인 환경정책기본법 등 18개의 환경관련 법률의 국제적 동향에 부응하고 국내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계속 개정해 나가는 한편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및 양국간 협력, 다자간 협력을 계속 확충해 나감

## 第32章 農民의 役割強化

### 序 文

- 32.1 농어민의 농림수산업 활동은 국민에 대한 농산물 등 1차 산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연자원을 보존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 농림수산 자원의 지속개발 등 자원보존 및 관리 부문 『의제 21』 실천계획은 제11장(산림황폐방지), 제13장(지속가능한 산지개발), 제14장(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 및 제17장(해양 및 해양생물자원보호) 실천계획에 언급되어 있음
- 32.2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어가 인구, 경지면적, 농림어업 생산액의 국민 총생산액 비중이 하락하는등 농림수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 과정에 있음. 또한 농어민 생활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 교육.의료시설 등 제반 생활환경도 도시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어 청.장년층의 이농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농가주부의 노동시간 과중으로 여성의 농어촌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32.3 이와같은 우리 농림수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농어촌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94.6.14 『농어촌 종합대책 및 농정개혁추진 방안』을 수립한 바 있음. 이 농어촌대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 임산 및 수산 자원의 개발.이용 등 보존계획의 이행은 그 주체가 농어민이며 농어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성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농림수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농어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사전 정보의 제공과 관련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32.4 이러한 관점에서 본 32장 실천계획은 농어민의 농림수산 정책입안과

이행과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조조직의 육성을 통하여 자율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술과 관련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도,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計 劃 分 野

### 배 경

- 32.5 농어민의 농림수산업 활동은 한편으로는 자연자원의 보존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생산수단을 사용할 경우 부존자원과 생활환경의 파괴를 유발하기도 하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자원하에서 인구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개발 수단확보는 당면해 있는 중요한 과제임
- 32.6 특히, WTO체제하에서 농림수산물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농림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체제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등에 따라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농림수산 정책 수립과 시행체제가 개편될 예정임
- 32.7 농림수산업의 주체는 농어민 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림수산 지원정책방향은 농어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와 농어민,농어민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설정되도록 정책결정에 있어서 농어민의 참여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신속하고 내실있게 제공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32.8 농어민 스스로가 농림수산 자원을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농림수산물 공급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 정책수립과 시행에 농어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 관련정보가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어민단체의 대 농민교육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함

## 정책수단

### A. 농림수산 정책입안과 시행과정에 농어민의 참여확대

32.9 농어촌지원사업을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추진체계를 개편할 예정임. 즉, 중앙정부는 대상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이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고 집행하도록 체계화하고, 농어민 자율사업과 지방추진사업은 농어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임

32.10 특히, 정부가 농어촌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서 품목별 생산자조직, 작목반 또는 개별농가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농·수·축협 등 농어민단체의 장,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등 농어민대표, 농업공무원으로 구성된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공개결정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기해나갈 계획임. 또한 양곡유통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등 중앙 및 지역단위의 각종 의견 수렴체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 B. 농어민 자조조직의 육성

32.11 농·수·축·임협을 농어민의 실질적인 이익보호 단체로 육성해 나

갈 계획임. 이를 위하여 품목별, 업종별 전문조합의 설립, 전문 경영인제 도입, 지역조합 합병, 생산자단체 유통자회사 설립 등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농어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가 되도록 보완 개편해 나갈 계획임

32.1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농업법인 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규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가공 등을 복합 경영토록 하여 자원의 최적 활용을 도모토록 함

32.13 농어민이 생산 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쌀 작목반, 원예 생산자단체, 임업협업경영체 등 품목별 전문생산자 단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농어업의 복합생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각종 시설투자, 자금 확보 등과 관련된 생산단체의 자조노력에 상응한 자금과 경영지원 체제를 도입할 예정임

32.14 아울러 경종농업기준 1ha 미만의 중소농에 대하여는 벼 등 경종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작목별로 유기.자연농업 단지화를 추진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농민의 환경보전형 농업 실현을 도모 하고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생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중.소농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토록 함

32.15 지역 농어민, 농어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감시평가단을 구성 농경지, 농업용수, 연안어장 등 생산자원에 대한 오염원 유입, 농어촌 생활환경에 대한 오염원 유입 감시활동 체제를 구축하고 이의 해결책을 공동모색할 수 있도록 농어민의 환경평가역할을 강화토록 함

### C. 지속개발 기술 및 정보의 이전촉진

32.16 지속개발을 위한 분야별 기술개발 보급계획은 『의제 21 제14장』 실천계획에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음

32.17 이에 더하여 전문경영인을 포함한 전체 농어민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a)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화하여 조사.연구.분석.시험 상담 기능을 보강하고 기술.교육.정보.시책 등에 대한 농민 요구를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One 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관.연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현장애로 기술에 대한 신속한 기술개발 보급을 도모토록 함

(b) 농.수.축.임협 및 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관련 단체 기관은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지도계획, 교육훈련 과정에 농림수산업의 지속개발, 농어촌환경 등 『의제 21』 실천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등 농어민에 대한 지속개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第33章 財源 및 財政體系

### 序 文

- 33.1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33.2 각국의 지속개발을 위한 재원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공공 및 민간부  
문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임
- 33.3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대형 지속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  
기에 상당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 바 이를 위한 재원의 결핍으로  
인해 지속개발사업의 시작이 어려울 수 있다는데 공감함
- 33.4 이와 같은 개도국의 재원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재정지  
원이 필요한 바 공적개발원조(ODA), 다자간 개발은행 및 기금, 해외  
직접투자 등이 그 주요한 방안임
- 33.5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예  
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환경보전  
유인을 제공하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시행하  
고 이러한 재원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33.6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일원이나 국제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지원을 수행해  
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공급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진작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計 劃 分 野

### A.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 및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도입

#### 배 경

33.7 경제적 수단의 도입 및 조세체계의 개편은 경제주체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임. 우리나라는 직접규제 위주의 환경규제에서 점차 경제적 유인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임. 궁극적으로 국내 조세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경제의 환경친화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

#### 목 표

33.8 환경규제에 있어 직접규제와 함께 경제적 수단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양자를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원조달을 도모하며, 보다 넓게는 궁극적으로 국내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해 환경비용을 내부화하는 가격체계의 형성과 함께 환경재원의 주요 조달원으로 삼음

#### 정책수단

33.9 경제적 수단 및 환경친화적 조세를 개발하는 부처와 관련부처간에 각종 의견을 초기부터 수렴·협의·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33.10 경제주체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적응을 돕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B. 환경 재원의 통합적·효율적 관리

배 경

33.11 환경관련 재원의 분산관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함. 또한 환경관련 각종 제도의 도입은 그에 따라 적응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를 위해서는 환경관련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목 표

33.12 재원조달과 재원지출을 적절히 연계하고 재원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의 통합적·효율적 관리

정책수단

33.13 환경종합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발전시킴으로서 환경재원의 종합관리 메카니즘화함

### C. 재정분야 국제협력에의 참여

#### 배 경

33.14 개도국의 지속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재원결핍의 문제점에 공감함.  
특히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절실하며  
개도국에서의 이를 위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목 표

33.15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재정지원을 수행함

#### 정책수단

33.16 공적개발원조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원조방안을 마련함

33.17 각종 국제 및 지역 개발은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국제  
환경협약의 분담금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함

#### D. 민간부문에서의 국제적 재원이전 촉진

##### 배 경

33.18 공공부문에서의 국제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한 재원공급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함.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재원이전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때 촉진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유인제공 수단이 중요할 것임

##### 목 표

33.19 개도국의 지속개발 사업에 대한 재원공급의 한 방안으로서 민간부문으로 부터의 재원이전을 촉진함

##### 정책수단

33.20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유인제도를 활성화 함

33.21 민간부문의 재원이전 방안의 하나로서 개도국에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한 후 이전하는 방법(Build-Operate-Transfer)』의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第34章 技術 移轉・協力과 能力培養

### 序 文

34.1 본장의 목표는 기술정보를 포함한 환경기술시스템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의 내부능력 형성을 지원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a) 인적자원 개발

b) 연구개발과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제도상의 능력강화

c) 국제적 또는 지역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하여 환경기술이 원활히 이전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34.2 환경기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환경기술은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원료 물질의 개발, 공정개선, 에너지 효율 증가 등 사전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청정기술에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음.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은 개별기술 뿐만 아니라, 노우-하우, 공정, 재화와 용역, 설비 및 조직, 관리과정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시스템 (total system) 임

34.3 즉, 최근에 와서 환경기술의 개념은 단순히 오염발생후의 처리기술 수준을 넘어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에 적용되는 생산기술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공정 및 생산방식 (PPMs)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최근 PPMs의 대안 (보완책) 중의 하나로서 기술이전이 논의되고 있음

34.4 유엔환경개발회의, 유엔지속개발위원회 제1,2,3차 본회의 및 회기간 활동에서 환경기술이전에 대한 개도국 및 선진국의 입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a) 개도국들은 환경기술의 공익적 성격에 입각하여 비상업적·특혜적인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원칙과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계없이 특별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기술이전의 장애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의 부족, 재원조달 문제, 충분한 Know-How 의 전달 곤란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체계(Mechanism)와 관련 새로운 기술이전 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음

(b)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의 종합적인 성격 강조로 개도국의 능력형성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기술이전 조건의 상업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이미 많은 기술이전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 창설에 반대하고 민간기업 보유기술에 대해서는 특별예외 조건 인정도 불가능 함을 주장함

(c) NGO 는 기술이전 보다는 공유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기술이전을 통한 남·북간의 종속적 관계를 우려하고 있음. 또한 적절한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을 강조함으로써 기술이전에 따른 문화적, 생태적 악영향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34.5 우리나라는 환경기술 부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기술은 개도국에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여타 개도국들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음

34.6 즉, 우리나라는 조만간 기술도입국인 동시에 기술이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될 것이며, 따라서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체제 정비와 동시에 후발개도국들에게 기술이전을 위한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34.7 본 실천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환경기술 확보대책의 수립·시행, 환경기술정보망 구성, 환경기술인력개발, 환경기술 목록작성, 국제적 및 지역간의 정보교환 및 기술이전 활동강화를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자 함

## 計 劃 分 野

### A. 체계적인 환경기술 확보대책 수립·시행

배 경
-----

34.8 환경기술은 환경오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또 오염된 환경을 복원시키는 등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한 기술을 총칭함. 이러한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학기술장기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34.9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환경기술개발을 1992년부터 국가의 선도기술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기초목적 연구부터 환경오염 방지기술, 지구환경 감시기술 및 청정기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계획하여 연구중에 있음

34.10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분야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4.11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일부 기술분야의 경우는 연구경험이 축적된 연구자들이 국내 및 해외에 산재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CO<sub>2</sub> 제어 및 대체에너지 활용기술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4.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부처로는 환경주무부처인 환경부,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통상산업부, 그리고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음

(a) 환경부는 환경규제 기준의 강화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환경기술 수요를 조장하고 또한 환경기술개발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산업체의 등록·허가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산업체 관리 및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b) 통상산업부는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설비기술등 기반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를 통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생산공정기술, 청정에너지 등 청정생산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특히 관련연구소, 산업계와 공동으로 핵심기술의 국제공동개발등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c) 과학기술처는 해양, 지구적 차원의 대기환경 등 광역환경 문제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환경기술과 연관이 깊은 기초 및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국가과학기술 총괄 차원에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34.13 현재 우리나라는 범부처, 기업, 출연(연), 대학의 참여하에 정확한 미

래 환경기술수요를 판단하고 산·학·연·관 합동으로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목 표

34.14 환경과학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있는 첨단환경기술을 집중·선정 개발 및 기반기술의 조기 확보로

(a) 대기·수질 등 국내 환경기술의 자립을 조기에 달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b) 지구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며

(c) 개발된 핵심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을 2000년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감

## 정책수단

34.15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감. 특히 심각한 국내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저공해 소각기술, 청정기술 및 폐기물처리 재활용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함

34.16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환경기술투자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감

(a) 환경오염관련 대형투자사업비와 공해대책사업비의 일정율을 연구기금으로 적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에 중점 배분

(b) 환경기준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공해방지 산업을 육성

(c) 폐하수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 국가환경관리시설의 민간기업 위탁관리 추진

34.17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능력을 보강하고 특정분야별 대학부설연구소 설립을 지원하여 협동연구를 활성화 함

34.18 국제연구능력의 강화로 선진기술의 습득과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감

(a) 국제환경관계기구 및 선진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참여,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확대

(b)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와 생태계·순환계 영향 공동연구 추진

## B. 환경기술정보망 구성

### 배 경

- 34.19 환경기술의 이전 및 능력배양을 위한 첫째 단계로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중요함
- 34.20 현재 국내에서 정부부처, 연구소, 민간단체 등 환경과 개발관련 각종 기관이 환경 관련 정보를 생산·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을 상호연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 34.21 선진국은 선진국의 입장(공급자의 입장)에서 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입장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은 기술수준 및 운영체제의 미숙으로 기술이전이 현실화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를 위하여 국내의 환경기술정보망을 구성하여,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단계로 환경정보망 구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창구를 일원화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산업체, 연구소 및 학계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정보체제 구축이 시급함

### 목 표

- 34.22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의 습득이 환경기술정보망을 통하여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

34.23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환경기술정보를 종합, 분류할 수 있는 국내의 환경기술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여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최신의 환경기술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정책수단

34.24 재외공관, 상사, 기업연구소, 해외유학생 등 해외주재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OECD, EU, WTO, ISO 등 국제기구에 환경전담요원을 파견하여 환경관련 해외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 나감

34.25 국내 기존 정보통신망에 환경기술정보 기능을 추가 설치하고 정부, 출연(연), 종합상사, 기업연구소, 대학이 연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수집, 가공 및 배포 할 수 있는 체제구축 (정부가 계획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환경기술정보기능 추가)에 노력함

34.26 외국정보유통기관 (JICST, NTIS, TIB, BL,INIST 등) 및 해외정보유통망 (JOIS, Inter Net, Europa Net, STN 등) 과 국내정보망을 연결하여 국내의 환경기술 수요자가 적시에 환경기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C. 국내 환경기술인력 개발

배 경
-----

- 34.27 산업화로 황폐된 환경문제를 해결 및 복원하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당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력개발임
- 34.28 고급인력개발은 장시간의 교육을 요하는 문제로서, 국가주도 및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배양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34.29 이전대상 기술선택에 있어서 기술의 특이성과 더불어 인력개발 국가의 능력배양 (Capacity-Building)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고,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은 그 국가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우선 순위와 양립되어야 함
- 34.30 환경오염의 저감기술 뿐 아니라 예방기술 차원과 특히 오염된 환경의 복원기술은 신기술로써 인력개발이 각 나라마다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각국마다 상황이 상이하고 환경의 조건과 경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력개발계획이 필요함
- 34.31 우리나라 환경과학기술 인력은 양적으로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이나 질적으로 고급전문인력과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기능인력의 양성·보급이 적극 요청되고 있음

## 목 표

- 34.3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기술 전반에 걸친 자체 인력개발은 매우 중요함.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기업은 기업차원에서, 그리고 연구소는 연구개발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인력을 개발 해 나감
- 34.33 특히 환경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체제 구축을 통하여 환경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함

## 정책수단

- 34.34 고급 전문인력은 한국과학기술원, 환경대학원 등을 통하여 적극 양성 하고 전문기능인력의 양성은 국내 전문대학과 환경공무원교육원 등을 적극 활용
- 34.35 대학내에 환경공학, 환경경영 등에 관한 이론중심의 학과목 증설 및 현장과 직결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시급히 양성해 나감
- 34.36 국제표준 인증제도 (ISO) 가 매우 중요해 짐에 따라 각 기업 위주로 ISO 획득을 위하여 경영, 기술 및 다방면에 전문가 양성체제 및 자체능력 배양 체제를 형성해 나감

#### D. 환경기술목록 작성

##### 배 경

- 34.37 필요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국내개발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진국 및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임
- 34.38 우리나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센터에서 선진국 및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처리기술, 탈황기술, 대체에너지기술, 재활용기술 등 100여 가지의 환경기술이 포함된 목록은 작성한 바 있으나, 실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한 수요현황 파악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아직은 저조한 실정임
- 34.39 따라서 국내기업의 환경기술 수요를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환경기술 목록작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목 표

- 34.40 환경기술이전 및 협력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목록상의 기술분류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체계적으로 환경기술을 확보하는데 지침으로 활용함

34.41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중 타 개도국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은 이전해 주고,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중 우리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을 요구하는 등 CSD 기술이전활동 등에서 협력 및 협상 참고자료로 활용함

정책수단

34.42 과기처,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의 참여하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기술개발원등의 협조로 과기처 및 환경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과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 및 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을 파악하여 도표화 함

34.43 목록작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과기처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확보토록 노력함

E. 개발도상국을 위한 환경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배 경

34.44 선진개도국인 우리나라는 동남아의 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환경기술과 개발경험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수해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34.45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첨단 고급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제1단계로 개발도상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 요청되고 있음

34.46 동남아시아권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생활 및 풍습이 비슷한 우리나라가 이 지역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선두주자가 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특히 선진교육을 습득한 인적재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좋은 조건임

목 표

34.47 기술이전에 앞서 후발개도국들의 기술인력 배양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토록 지원하고 이전된 기술이 적절히 이용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사업 및 국가정책에 우리의 경험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4.48 선·후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우리의 기술과 개발경험을 솔선수범하여 타 개도국에 이전해 줌으로써 기술이전 분야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정책수단

34.49 환경교육을 통한 기술배양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환경공무원교육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94년부터 매년 동남아 및 개발도상국의 환경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환경보호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34.50 본 프로그램은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임

F. 국제적 및 지역간의 정보교환 및 기술이전활동 강화

배 경

34.51 지구환경 문제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어느 한 국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34.52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공동노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34.53 또한 선진 국가들의 환경기술개발 동향과 국제환경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국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교환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34.54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기술은 민간기업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기업을 통하여 환경기술 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유인제도를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목 표

34.55 환경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를 강화하고 선진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환경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내 정책에 적절히 반영토록 함

34.56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역내 환경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감

34.57 환경관련 각종 국제행사를 우리나라에 적극 유치하여 대외적으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 하여금 개도국의 능력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이전협력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34.58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실제적인 환경기술이전을 촉진함

정책수단

34.59 환경기술관련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동향을 조기에 파악함. 특히 국제행사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관련기관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나감

34.60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생활이 비슷한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 나감. 현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정부가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95년부터 공동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 국가들의 참여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감

- 34.61 우리나라도 환경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 나감. '94.11.30-12.2 서울에서 "환경청정기술 관련 정보에의 접근 및 전파의 촉진에 관한 워킹샵" 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동 워킹샵결과는 '95년 CSD 제3차 회의에 보고되어 관련 결정문에 반영되었음. 또한 UNEP 에서는 동 워킹샵결과에 따라 각국의 환경청정기술 정보체계 및 정보원 조사를 실시중에 있음.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여 환경기술관련 국제논의에 기여할 계획임
- 34.62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 하여금 Technomart, Techno Fair 등 기술이전 효과가 큰 국제행사를 적극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의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감
- 34.63 인근 국가들 및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관련 공동연구 강화 및 협력사업에 참여를 확대해 나감. 중국과는 황해 해양보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러시아 및 일본과도 환경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감. 또한 ESCAP,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와의 공동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나감
- 34.64 민간기업을 통해 환경기술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감. 선진국의 환경기술 보유 민간기업이 우리나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선진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감

## 第35章 持續 가능한 開發을 위한 科學

### 序 文

- 35.1 과학기술의 발달이 현대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그 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음
- 35.2 따라서 과학기술은 그 자체의 목표가치와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 및 지구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국가발전 기본구도의 성취를 선도하고, 경제·사회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구와 인류의 공존번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부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 35.3 동계획은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창출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초 과학연구의 진흥, 연구개발하부구조의 구축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그리고 공공복리부문의 기술개발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경제5개년계획('93~'97),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92~2001)등 기존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점검 보완하여 추진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임
- 35.4 향후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환경보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과 산업활동 증대 및 소비증가 등으로 인하여 오염요인은 계속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도 환경문제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임

35.5 또한 환경오염문제가 지구환경보호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존층 보호, 지구온난화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점차 구체화될 것이므로 국내 환경 개선을 통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35.6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기·수질오염과 생활쓰레기 처리 등 초기 단계의 국지적 환경문제 해결에 성공하고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로 시책을 옮겨가고 있음

35.7 국내 환경상황의 개선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유기적 협조체제하에 환경기술 개발의 적극 추진이 요구됨

35.8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공헌도를 높이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천계획 수립분야는 다음과 같음

(a)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강화

(b) 과학적 이해의 증대

(c) 환경영향 평가의 강화

(d) 과학적 수용력과 개발능력 구축

## 計 劃 分 野

### A.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강화

#### 배 경

35.9 환경과학기술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단시일내에 이를 고도화 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인 체계적 연구개발과 아울러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35.10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의 쾌적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적 신기술 질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

#### 목 표

35.11 국내환경 기술을 조속히 선진화 하기 위하여 환경과학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환경분야 인력양성, 정보체제 구축 등 연구개발의 기반을 강화함

#### 정책수단

### 35.12 환경과학기술 개발 추진

- (a) 국제 환경규범에 적합한 기술을 자체 확립하고 종합환경관리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산학연 및 국제공동으로 환경관리망기술, 지구환경보전기술, 폐기물재활용기술, 대기오염방지기술 및 맑은 물 지원기술 등 5개분야 19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무공해 및 환경보전기술을 개발함
- (b) 민간 부문의 환경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기금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비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를 실시하고, 개발된 우수환경 신기술에 대하여는 개발자에 대한 포상 실시, 특히 우선심사 추천 및 정부조달물품 구매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의 우수 신기술 장려방안을 마련함
- (c) 환경연구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환경과학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함
- (d) 전통기술로 현대산업으로의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

### 35.13 환경기술 인력의 양성 및 관리

- (a) 복잡화·다양화 해가는 국내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평가·검정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술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함
- (b) 환경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설비의 설계·제작 등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해 전문대·대학교의 환경관련

학과의 환경설비의 설계·제작을 위한 강좌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감

#### 35.14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산업기술정보원(KINITI) 및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환경부문을 총망라 하고 환경관련문헌정보(환경기술정보·환경정책정보·환경인력 및 기관정보), 수치정보(환경오염 현황정보, 오염원 관련 정보, 사회경제 정보)와 그래픽정보(지형도, 생태도, 토지이용도등)를 포함한 종합환경 정보망을 구축함

#### B. 과학적 이해의 증대

배 경
-----

35.15 고도 산업사회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의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 그 규모도 점차 광역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

35.16 이러한 환경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국내차원에서의 환경오염 및 오염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지구차원에서의 환경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수 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감

목 표
-----

35.17 지구 특히 동아시아권과 한반도의 자연계-생물 지질화학적 순환, 대

기권/수계권/지각권/빙권, 생물권과 생물다양성, 농업생태계, 그 밖의 육지 및 생태계에 의해 조절되는 상기 지역의 수용능력을 산출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정책수단

35.18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함

- (a) 현재 전국 도시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확대운영하기 위한 증설을 추진하고, 노후된 측정기는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측정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장비의 확보를 추진해 나감
- (b)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도를 설치할 경우 모든 측정자료를 대기오염 자동감시체제(Telemetry System)를 이용하여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35.19 하천수질 자동측정감시망을 운영함

하천·호수 등의 수질오염 감시를 자동연속 측정체제로 전환하여 상수원등의 수질실태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질오염 사고에 즉각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생물감지경보장치를 운영하고 시험용 물고기·물벼룩의 습성 및 생식, 사육조건 생육특성 등을 조사하여 국내산 어종개발 및 경험적 자료축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함

35.20 대기·수질·폐기물·토양·자동차공해분야 등에 대한 국가적인 환경측정 방법을 표준화 하고,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며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측정검사의 표준화 및 정도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감

- 35.21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95~2003까지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연구·교육 등에 적극 활용함
- 35.22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환경 감시 및 기후예측기술, 온실기체제어 및 이용기술, CFC대체물질 개발기술등의 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함
- 35.23 지구저궤도용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하여 한반도 관측, 과학실험, 이동통신실험 등을 통하여 한반도 주변 및 세계 각 지역의 환경보호에 일익을 담당함

### C. 환경영향 평가의 강화

배 경
-----

- 35.24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 및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정책입안등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관심사항과 경제적 관심사항을 조화시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35.25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평가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지만,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35.26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방향 등을 설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한 결과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이고 집행적인 사항까지 기본법에서 정해야 하는 등 법체계상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35.27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을 '93년 6월 11월 제정·공포하여 '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35.28 새로운 영향평가법은 사업승인기관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절차와 사업승인 절차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할 수 있지만 평가기법의 개발, 평가서 검토기능의 강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아울러 사업 시행자 및 국민의 협조와 인식의 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임

목 표
-----

35.29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 강화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장기적 영향을 예측·분석 할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함

정책수단
------

### 35.30 환경영향평가법을 기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을 강화

- (a)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을 감안한 중점평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함
- (b)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과정에 사업승인 기관을 참여시켜 평가내용이 사업승인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므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함
- (c) 평가대상 사업별 환경영향 예측기법을 표준화 하는 등 평가기법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함

### 35.31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일정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적극 유도함

- (a) 공단조성 등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주변지역에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등을 활용하여 차단녹지 설치등 일정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적극 유도함
- (b) 신도시 조성시 환경보전림의 조성을 통해 당해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정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94년에 환경보전림 조성을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 표준환경 보전림 조성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동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년차별 확대계획을 수립·추진함

### 35.32 환경 적합성 평가제도를 도입·운용함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행정 수행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ESSD)내용의 반영정도를 평가하여 상대 비교하는 환경적합성 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함

- (a) 환경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함

- (b) 본격적인 제도도입에 앞서, 개발된 평가모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시범적인 평가를 실시함
- (c) 평가모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후 제도화를 추진함

35.33 한국형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모델”의 개발을 추진함

- (a) 현행 환경보전 시범도시 운영사업 평가에 대한 성과분석을 기초로 하여 추가로 2-3개 시범도시를 선정·운영함
- (b) 시범도시 운영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한국형 ESSD모델 개발을 추진함

35.34 위와 같은 국내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통해 평가기술력을 축적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지구환경 장기 평가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

D. 과학적 수용력과 개발능력 구축

배 경
-----

35.35 과학기술발전은 장기적인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것이며, 거의 모든 형태의 오염예방과 폐기물의 경제적 재순환은 기술진보에 좌우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임

35.36 따라서 기술진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부문장 기발전계획을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 창조적인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국제협력연구의 강화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a) 연구개발인력은 과학기술 혁신의 주역이자 연구성과의 질을 결정짓는 주체이나 지금까지 정규교육 기관에서 양성·배출된 과학기술인력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는 부문간은 물론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절대수에 있어서도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질적수준 향상과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b) 21세기 고도정보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 수집·유통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지원체계가 취약하므로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연구개발자에게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 (c) 세계적 차원의 과학기술활용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여 연구개발 체제를 선진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연구의 강화가 필요함

목 표

35.37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기술개발능력의 구축을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 수집 유통체제 구축 및 국제공동연구 등을 강화함

정책수단

35.38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극대화함

- (a) 이공계 대학의 정원 증원, 대학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교육 및 연구여건의 개선등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기능을 확충함
- (b) 사내기술대학(원)의 육성, 출연(연)·대학 협동의 학·연 석박사 프로그램등을 확대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함
- (c) 선진과학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Brain Pool제도의 확충, 전략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위한 해외 박사의 연수과정 확대실시 등 국제교류를 통하여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정예화를 추진함

35.39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및 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a) 2000년까지 1천만건의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D/B)구축, 과학기술전문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역기술정보유통망 구축의 확대 등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정보자료를 획기적으로 확대함
- (b) 해외주재 과학관, 출연(연)해외사무소, 재외과학자협의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해외과학기술 정보수집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정보센터를 과학기술전문정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 중추기관으로 육성함
- (c) 과학기술정보유통망과 개별전산망, 공중정보통신망, 국민생활정보망, 해외정보유통망등 전산망간 상호연계를 통한 정보제공체계를 확충함

#### 35.40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추진함

- (a)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사업의 생산성제고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주체의 국제화, 개방화를 추진함
- (b) 선진 기술중심지로 직접 진출하여 최첨단 기술, 인력, 정보를 현지에서 직접 획득, 활용하며, 세계의 주요과학단지, 첨단기술보유원천지 등에 현지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지연구개발활동을 추진함
- (c) 선진국들의 대형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우리나라 연구개발주체의 참여를 확대함
- (d) 세계 각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창설함
- (e) 과학기술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대개도국 기술이전을 활성화함

#### 35.41 과학기술부문장기발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함

- (a) 신경세계획('93~'97), 선도기술개발사업계획 및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92~2001)등 기존 정책들과 시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보완하여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고 여타 경제·사회부문 정책과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함

- 범국가적인 추진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계획과 시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실천력을 확보함

## 第36章 教育, 弘報 및 訓練

### 序 文

- 36.1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36.2 환경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교육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교육으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학교교육은 유치원, 초·중등 학교급별 연관성 뿐만 아니라 교육성파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95년부터 중학교에 「환경」 과목이 독립되어 선택교과로 가르치고 있고, '96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독립된 「환경」 과목을 가르칠 계획임  
사회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부 및 공공훈련기관,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주부, 군인, 명예환경감시원, 단체회원 등 대상이 다양함
- 36.3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욕구의 증대로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TV, 신문 등 대중매체가 주도가 되어 「셋강살리기」 운동, 환경보전 캠페인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는 「물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지속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의 제정과 각종 리플렛, 홍보책자 및 시청각 교재 등을 제작 배포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환경관련 지식과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환경관련 실천의식을 함양하고 있음

36.4 환경공무원교육원 및 환경보전협회에서는 환경분야종사공무원 및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포함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농업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환경관련과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도 마찬가지임

36.5 위와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교육이 상호 연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計 劃 分 野

###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혁신

배 경
-----

36.6 오늘날 인류의 최우선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스스로 느껴 환경보전실천의식과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학생 및 일반사회인 등 대상별로 효율적인 교수방법등이 개발되어야 함

## 목 표

- 36.7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실천적 환경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참여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시행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간의 환경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여건 조성

## 정책수단

- 36.8 '95년부터 독립과목으로 신설된 「환경」 교과를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부족한 환경전담교사 확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동 교과의 선택을 촉진함
- 36.9 '8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동 운영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하는 한편 비시범학교 교사들의 교육참관을 주선하는 등 유치원, 초·중등학교 각 교과에 분산 수록된 환경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방안을 마련함
- 36.10 특별활동시간 및 수업없는 날을 활용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역하천오염도 조사」, 「환경정화수 가꾸기」,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의 현장참여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
- 36.11 학교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학을 이용한 교사연수를 실시하되, 환경전담교사에게는 실험·실습등 보다 심도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일반교사들은 소양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사의 교수과목별로 차등화하여 실시함

- 36.12 대학생들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환경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실험분석 및 환경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 과정 이수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
- 36.13 환경보전운동의 범국민적 추진분위기 조성과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환경오염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8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10,000여명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로 이들을 지역 사회의 홍보교육 요원화
- 36.14 각종 민간환경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과 정부가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돈독히 함

#### B. 공공인식의 증진

배 경
-----

- 36.15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는 교육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실행하기에는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방법 등에서도 새로운 분야들이 빠르게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환경보전실천 노력을 유도해 내고 새로운 국내외 환경동향에 적절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환경보전 홍보가 매우 중요함

## 정책방향

- 36.16 지구환경은 우리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므로 개혁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함
- 36.17 언론, 기업, 시민운동 단체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조직적인 홍보를 실시함

## 정책수단

- 36.18 정부관련 부처의 실무자 중심 홍보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홍보방향설정, 현안과제에 대한 홍보포인트 도출, 홍보기법 개발지원 등 정부의 지구환경관련 홍보를 강화함
- 36.19 지구환경관련 정책입안단계부터 홍보측면을 고려하는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투명성을 국민과 여론에 소상히 알리는데 주력하며, 필요시 지구환경관련 언론보도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유관부처에 제공하는 등 사전 기획 홍보를 강화함
- 36.20 최근의 국제동향과 우리의 대처상황,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각계의 역할, 개혁과의 상관관계 등을 집약한 책자, 영화, VTR 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되 대중용 및 여론형성층용으로 구분 제작하고 대표적인 수범사례가 중점 홍보되도록 함
- 36.21 『의제 21』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증진을 위해 대학연구소, 학

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심포지움 개최를 유도하고, 여론조사, 캐치프레이즈 공모 활용과 국민의 환경보전실천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친화적 시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보급함

36.22 지구환경관련 국제동향 및 정부대책, 법규·제도개선 상황등을 신속 정확히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의 환경보호캠페인을 유도함

36.23 방송사, CATV, 지역민방 등과 협조하여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TV 고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환경관련 해외취재물 등 국민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36.24 정부광고, 공익광고, 방송사 캠페인, 기업 PR 광고 등에 환경관련 주제가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를 일과성이 아닌 중·장기 홍보차원에서 추진함

36.25 환경·경제문제를 다루는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환경보호 수범현장을 언론인이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증진함

36.26 해외홍보강화를 위하여 국제환경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야생동식물 보호 등 외국인의 관심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주한 외신대상 브리핑을 수시로 실시함

36.27 해외공관에 환경관련자료를 적극 지원하여 주재국 정부, 언론, 환경단체에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노력을 알리는 등 해외공관의 환경홍보를 강화함

## C. 훈련의 증진

### 배 경

36.28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도의 「삶의 질」 추구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환경친화적 경영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환경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전문환경인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목 표

- 36.29 환경관련공무원 및 환경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게 효율적인 오염방지기술을 습득시키고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시킴
- 36.30 누구나 차별없이 훈련기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공공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제훈련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가적인 환경관리능력의 강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킴

- 36.31 환경관계공무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관인 환경공무원교육원과 환경보전협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36.32 환경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소규모영세업소의 적정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능사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환경관계 법령 제·개정시 적극 반영함
- 36.32.1 청각장애인을 위한 환경기능사자격취득반을 개설·운영하여 장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필요한 기능인력을 확보함
- 36.32.2 실업계 고등학교에 환경과목 개설을 유도하여 환경기능인력을 배출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함
- 36.33 각급 직업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및 대학등에서 실효성 있는 환경전문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
- 36.34 일반시민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단체등 민간부문에서 개설·운영하는 각종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第37章 持續 가능한 開發能力 擴充을 위한 國內 體系와 國際協力

### 序 文

- 37.1 『의제 21』의 이행을 위하여는 각국, 특히 개도국의 기본적인 능력 (capacity) 형성이 필요함
- 37.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이행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도국·지역사회 등의 자체능력 배양이 경시된 측면이 있었음. 능력형성의 목적은 각국이 환경적 잠재능력과 한계를 감안하여 개발에 관한 정책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임
- 37.3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의 지속가능개발능력의 형성을 위한 실천계획의 작성과 이행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의 능력형성에도 일조를 해야 할 것임

### 計 劃 分 野

#### A. 능력구축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감독

- 37.4 『의제 21』의 수행을 위한 국가적 합의와 능력구축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제 21』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평가·감독할 메카니즘을 설치함
- 37.5 지구환경대책기구가 담당해 오던 부처간 조정기능 및 평가기능을 환

경부를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함

37.6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여러 정책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곤란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각 프로젝트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B. 『의제 21』 추진에 관한 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능력의 개발

37.7 우리나라의 환경기술능력을 평가하자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은 주로 최종처리기술(end-of-pipe technology)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문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은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37.8 우리나라는 기술분야의 자체적 능력형성을 위하여 1992년에는 「환경 과학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정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할 것임

37.9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기술에 관한 목록을 작성중이며, 목록작성이 완료되면 환경기술 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第38章 地球環境 保全을 위한 國際制度와 裝置

### 序 文

- 38.1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하여는 유엔체제내의 제도적 장치의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하며 후속조치 이행과정에 있어서 지역단체, 과학단체, NGO 등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참여의 보장이 필요함
- 38.2 이러한 국제제도 장치의 목표는 국가, 지역 및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통합하는 것이며 세부적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의제21』의 이행을 조장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음
- (a) 환경과 개발분야에서의 유엔체제의 역할 및 기능제고
  - (b) 유엔체제내에서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협력 및 조정 강화
  - (c) 유엔체제와 NGO등 여타기구들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장려
  - (d) 환경과 개발분야에서의 국가적, 소지역적 및 지역적 차원의 능력과 활동 강화 및 조정지원 등임

### 38.3 UN의 제도적 구조는 다음과 같음

- (a) 유엔총회는 UNCED 후속조치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및 평가기구로서 『의제21』의 전반적 이행 평가를 위한 특별총회를 늦어도 1997년까지 개최함
- (b)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전반적인 유엔체제 차원의 『의제21』 이행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함
- (c) 지속개발위원회(CSD)는 『의제21』의 이행상황 평가 및 UNCED의 효과적 후속조치 보장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주요 기능은 각기구들의 『의제 21』의 이행관련 보고서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활동 진전사항을 감시하는 것이며 재원공여, 기술이전등 『의제 21』에 포함된 공약이행사항을 검토하는 것임
- (d) 유엔체제내의 UNCED 후속조치 이행기구로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및 유엔수다노 사헬사무소(UN Sudano-Sahelian Office)등이 있음

### 38.4 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협력과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 (a) UN지역경제위원회, 지역개발은행 및 지역경제·기술협력기구는 지역 및 소지역차원의 UNCED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함
- (b) 지원대상분야는 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능력형성 증진, 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개발정책에 환경 관심사항 반영 증진, 월경성(transboundary) 사안에 대한 협력증진 등임

38.5 국가차원의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 (a) 국가는 UNCED 후속조치 및 『의제21』 이행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 (b) 환경과 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이 일관성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
- (c) 각국가는 『의제 21』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와 『의제21』 이행을 위한 국가 실천계획을 작성
- (d) 각국은 『의제 21』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적 조정기구 설치를 검토
- (e) 기존의 원조 컨소시엄, 자문그룹 및 원탁회의등은 환경적 고려와 개발목표를 통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

38.6 비정부 기구(NGO)는 유엔체제내의 『의제 21』 이행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 효과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함

計 劃 分 野

배경 및 목표

38.7 배경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CED 후속조치 및 『의제 21』 이행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b) 동북아국가들간의 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노력

(c) 『의제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제도를 강화

정책수단

A. 대외적 사항

38.8 환경과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의제 21』의 이행을 평가, 감시하는 지속개발위원회(CSD) 본회의 및 회기간 그룹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제 21』의 각장별 이행구체화를 위한 분야별 실무회의에 참여

38.9 환경과 무역문제에 있어서는 WTO, OECD, UNCTAD, UNEP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전개되는 환경과 무역의 상호연계성 논의에 참여

38.10 국제환경협약에 있어서는 기 가입한 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38.11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함

(a)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NOWPAP)의 이행방안

- '96년 하반기 일본 동경 개최예정인 제2차 정부간 회의대비, 협력사업을 발굴함

(b)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제2차 고위급회의 후속조치 추진

- 3개 분야 5개 시범사업 조기실시 추진



- '96.3. 개최예정인 제3차 고위급 회의시에 동북아 환경협력계획 (NEAREP) 채택 노력

(c)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의 역할 및 기능강화 추진

(d) 일·중·러등 양자간 환경협력 협정 체결국들과의 협력사업 구체화

38.12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함

## B. 대내적 사항

38.13 『의제 21』의 이행을 위한 국가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함

38.14 『의제 21』이행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의 기능 조정과 역할을 강화함

## 第39章 國際法的 裝置 및 體制

### 序 文

- 39.1 범세계적으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제법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개도국의 입법 역량 증진을 위한 기술적 능력제고가 필요함
- 39.2 기존 국제법을 검토 및 평가하여 특정국가의 협약이행 장애요인을 파악·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입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국제협약의 효과적이고 완전하며, 신속한 이행보장 및 적절한 검토와 조정을 촉진함
- 39.3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국제협약의 효율성 증진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별능력 특히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국제적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규제 조치가 불필요한 교역규제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협약관리를 위한 제도, 체계 및 절차의 효과성을 제고함
- 39.4 국제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환경분야의 협약과 사회·경제분야 협약간의 충돌을 확인·방지 및 해결하며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의 각종 협약을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국제분쟁의 확인, 회피 및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함
- 39.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법의 검토·평가를 위하여 당사국은 기존협약의 운영실적,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장래 입법의 우선순위를 주기적으로 검토, 평가하며 무역충돌시 대규모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국제법상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안정되고 환경적으로 건

전한 원자력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핵안전 협정에 관한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함

39.6 당사국은 협약의 효과적이고 완전하며, 신속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절차와 장치를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 체도를 설치함.

39.7 새로운 국제법 형성과정에서의 효과적 참여를 위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효과적 참가보장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제공함

39.8 각국은 기존의 법제도 장치하에서 분쟁의 회피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여타 국가와의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에 관해 통고 및 협의함

## 計 劃 分 野

### 배경 및 목표

39.9 국제환경규범 형성 및 개편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기가입한 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의 및 새로운 국제환경 규범제정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 정책수단

#### A. 대외적 사항

39.10 새로운 환경규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교역, 산림,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분야 등에서의 국제규범 작성논의에

적극적 참여 및 대책을 강구하고 사막화방지협약등 기채택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을 추진함

39.1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런던협약”, “바젤협약” 등 각종 환경협약에 대한 효과적 이행방안을 수립·시행함

39.12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양자간 환경보호 협정체결 국가들과의 협정 이행 구체화 노력을 증대하고 미국, 몽고, 호주, 캐나다, EU 국가등 주요국가와의 환경협력체제 수립을 강구함

39.13 동북아 국가들간의 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기반조성 및 지역환경협정의 체결을 추진함. 특히 '94. 9월 서울개최 제1차 북서 태평양지역 해양보전계획 (NOWPAP) 정부간 회의시 채택된 실천계획에 의거한 후속이행 조치를 강화함

## B. 대내적 사항

39.14 국제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

(a) '94.10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수립, 생물자원의 보전확대 등 국내이행 대책을 수립함

(b)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관련 지침보완등 협약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c)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국

내 이행을 위해 관련 국내법을 제정·시행중이며, 규제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고시 (95.1.1)

(d) 몬트리올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 규정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법에 의거하여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함

(e) 기후변화협약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흡수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업 각 분야별로 청정연료사용, 에너지저감등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며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을 적게하는 산업구조로 전환을 추진함

39.15 국내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에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

39.16 정부의 국제화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국제관계 전문가 풀(POOL)의 효율적인 활용등을 통하여 국제환경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함

## 第40章 意思決定에 필요한 情報

### 序 文

- 40.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확보임. 따라서 지속가능개발에 적합한 지표의 개발 및 보급, 효율적이고 적절한 데이터의 수집 및 평가, 그리고 종합환경정보체계의 구축 등이 중요함. 무엇보다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여 지표화할 수 있는 회계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40.2 국가차원에서의 정보수집·활용은 UN을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환경감시시스템(GEMS, 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지구자원정보망(GRID, Global Resource Information Database), Earthwatch, 그리고 Development Watch 등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40.3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자원·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의 확보 및 제공이야말로 정부, 기업, 소비자, NGO와 같은 경제주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확신아래 녹색GNP 개념의 개발 및 활용, 종합환경정보은행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함

### 計 劃 分 野

## A. 녹색GNP 계정의 개발

- 40.4 UN에 의해 개발되어 각국에 보급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는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제사회발전 속에서의 지속가능개발의 정도를 추정하는 녹색GNP의 개념이 도입됨. 녹색GNP의 추정은 UN 통계국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에 의해 가능하며 이 방법에 의하면 녹색GNP는 환경조정국내순생산(EDI, Environmentally Adjusted Disposable Income)으로 표시될 수 있음
- 40.5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녹색GNP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녹색GNP 계정의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특히 녹색GNP의 올바른 추정을 위해서는 방대한 정보의 수집과 복잡한 추정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사업들은 그 자체로서 환경정책의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40.6 우리나라는 녹색GNP 모형의 구축 및 활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일차적으로는 환경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한 후 환경과 경제의 통합정보체계를 차례로 구축할 것임
- 40.7 녹색GNP 계정 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환경부, 통계청, 한국은행의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통합환경

경제계정체계(IEEA)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녹색GNP 계정의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B.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 40.8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정보의 수집, 분류, 보급, 활용 등의 제 과정이 원활히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환경정보망 기본계획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설립하여 정보의 체계화, 대중화를 이룩하고자 함
- 40.9 환경부의 주관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동 사업은 2005년을 달성목표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기·수질·폐기물·지구환경 등 각종 환경관련 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에 제공됨. 이렇게 되면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선 시도 및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각 가정에까지도 국내외의 다양한 환경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오염사고 발생정보 등이 행정기관에 곧바로 전파되고 인접 주민이나 경찰관서 등에도 경보발령이 내려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임
- 40.10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의 개발은 국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망(SD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ing)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환경정보망과 연계하여 국제간의 환경정보 공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